청라 아크원 푸르지오 오피스텔 분양광고

청약Home | 구글플레이스토어 | 애플앱스토어 |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본 오피스텔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2026.04.03.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오니, 본 분양광고를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자 '만 나이' 요건 기준일은 금회 분양광고일(2026.11.20.) 기준입니다.

■ 인터넷 청약접수 및 전산추첨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여 전산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서해구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 **청약자격** : 본 오피스텔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중복청약 유의사항** : 1인당 타입별 1실(건) 청약 가능하며(각 타입별 1건씩 '최대 8건'), 동일인이 동일한 타입에 2실(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처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오피스텔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접수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오피스텔은 비규제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 3규정을 따릅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6조의4에 따라 계약이 취소 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매 관련 내용은 관련 법규의 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을 집니다. 분양권 전매는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관계 법령에 제·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자는 사업관계자(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위반행위 관련 계약취소 및 벌칙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전매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잔여호실 분양** : 정당계약 소진 이후 미계약 잔여호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 시	2026년 12월 07일(월)	2026년 12월 11일(금) 16:00 이후	2026년 12월 12일(토)~2026년 12월 13일(일) 10:00 ~ 16:00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영업시간까지)	청약Home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분양사업장 방문계약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라 아크원 푸르지오 분양사업장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87-1)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오피스텔	O						

* 단, 정확한 본인인증을 위하여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청약신청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약통장 미가입자는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청약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24585(2026.11.18.) 분양신고 수리

■ 본 건축물은 동일 대지 내 공동주택과 복합적으로 건축되어 주택법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2024-도시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2024.08.23.)를 통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건축물이며, 사업계획 변경(2차) 승인(2026.08.06.)까지 완료되었습니다.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86-1번지(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M5BL)

■ 공급대상물

- 대지면적 : 사업부지 35,306.0000㎡
- 건축물 연면적 : 424,558.0758㎡(오피스텔 : 245,645.4826㎡)

• 건축물 층별 용도

구분	용도
지하 5층 ~지하 4층	지하주차장, 설비실, 세대창고 등
지하 3층	지하주차장, 설비실, 세대창고 등
지하 2층	지하주차장, 설비실, 세대창고 등
지하 1층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세대창고, 설비실, 로비 등
지상 1층~2층	주민공동시설(일부 별동 2층), 로비 등
지상 1층 ~ 지상 2층 (202동, 203동)	근린생활시설
301동, 302동, 303동 지상 2층 ~ 지상 19층	오피스텔
301동, 302동, 303동 지상 20층	피난안전층 (피난안전구역, 설비실 등)
301동, 302동, 303동 지상 21층 ~ 지상 49층	오피스텔

• 공급규모 : 지하 5층 ~ 지상 49층 6개동 중 오피스텔 총 987호실, 3개동
• 주차대수 : 총 3,124대 중 오피스텔 1,695대

■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
• 본 건축물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의2호 및 건축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내진성능을 확보한 시설입니다.
• 건축법 제48조의3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 : 내진 Ⅰ 등급

■ 입주예정일 : 2031년 08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정은 추후통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 중심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경제자유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 여부 해당 : 없음

■ 분양대금의 관리자와 분양사업자 간의 관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제7호)
- 본 사업은 시행자 겸 위탁자 ㈜청라스마트시티와 수탁자 신한자산신탁(주)간 체결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신한자산신탁(주)에서 공급(분양)대금을 관리합니다.

공급대상

(단위: ㎡, 호실)

타 입	공급호실(수)	동	라인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주차장 포함)	계약면적	대지지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계			
105OA	141	301동 302동 303동	3호	105.8507	40.7148	146.5655	75.1236	221.6891	18.3516
105OB	141		2호	105.9997	39.7470	145.7467	75.2293	220.9760	18.3774
105OC	94	302동/303동	1호	105.9992	40.9298	146.9290	75.2289	222.1579	18.3773
105OD	47	301동		105.9949	40.9800	146.9749	75.2259	222.2008	18.3766
121OA	141	301동 302동 303동	5호	121.9951	45.4781	167.4732	86.5814	254.0546	21.1505
121OB	141		7호	121.9796	46.5209	168.5005	86.5705	255.0710	21.1479
136OA	141		4호	136.8426	48.7334	185.5760	97.1189	282.6949	23.7247
136OB	141		6호	136.9776	51.3164	188.2940	97.2147	285.5087	23.7481
계	987	-							

- 상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 외벽의 내측선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실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건축설비실(기계실, 전기실 등), 관리실(MDF, 방재실 등), 피난안전구역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법정 표시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면적(㎡) × 0.3025 또는 면적(㎡) ÷ 3.3058)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원, VAT포함)

[단위 : 호실, 원, VAT포함]

구분				분양가격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1차	2차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타입	동호	층	공급호실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시	30일 이내	2027.07.15.	2028.04.14.	2029.01.15.	2029.09.14.	2030.05.15.	2030.12.16.	입주지정일
105OA	301,302,303동 3호	2	3	284,338,040	442,783,600	44,278,360	771,400,000	10,000,000	28,570,000	77,140,000	77,140,000	77,140,000	77,140,000	77,140,000	77,140,000	269,990,000
		3	3	294,769,420	459,027,800	45,902,780	799,700,000	10,000,000	29,985,000	79,970,000	79,970,000	79,970,000	79,970,000	79,970,000	79,970,000	279,895,000
		4	3	305,200,800	475,272,000	47,527,200	828,000,000	10,000,000	31,400,000	82,800,000	82,800,000	82,800,000	82,800,000	82,800,000	82,800,000	289,800,000
		5	3	315,632,180	491,516,200	49,151,620	856,300,000	10,000,000	32,815,000	85,630,000	85,630,000	85,630,000	85,630,000	85,630,000	85,630,000	299,705,000
		6	3	319,797,360	498,002,400	49,800,240	867,600,000	10,000,000	33,380,000	86,760,000	86,760,000	86,760,000	86,760,000	86,760,000	86,760,000	303,660,000
		7	3	323,962,540	504,488,600	50,448,860	878,900,000	10,000,000	33,945,000	87,890,000	87,890,000	87,890,000	87,890,000	87,890,000	87,890,000	307,615,000

105OA	301,302, 303동 3호	8	3	328,164,580	511,032,200	51,103,220	890,300,000	10,000,000	34,515,000	89,030,000	89,030,000	89,030,000	89,030,000	89,030,000	89,030,000	311,605,000
		9	3	332,329,760	517,518,400	51,751,840	901,600,000	10,000,000	35,080,000	90,160,000	90,160,000	90,160,000	90,160,000	90,160,000	90,160,000	315,560,000
		10	3	336,494,940	524,004,600	52,400,460	912,900,000	10,000,000	35,645,000	91,290,000	91,290,000	91,290,000	91,290,000	91,290,000	91,290,000	319,515,000
		11	3	338,227,360	526,702,400	52,670,240	917,600,000	10,000,000	35,880,000	91,760,000	91,760,000	91,760,000	91,760,000	91,760,000	91,760,000	321,160,000
		12	3	339,959,780	529,400,200	52,940,020	922,300,000	10,000,000	36,115,000	92,230,000	92,230,000	92,230,000	92,230,000	92,230,000	92,230,000	322,805,000
		13	3	341,729,060	532,155,400	53,215,540	927,100,000	10,000,000	36,355,000	92,710,000	92,710,000	92,710,000	92,710,000	92,710,000	92,710,000	324,485,000
		14	3	343,461,480	534,853,200	53,485,320	931,800,000	10,000,000	36,590,000	93,180,000	93,180,000	93,180,000	93,180,000	93,180,000	93,180,000	326,130,000
		15	3	345,193,900	537,551,000	53,755,100	936,500,000	10,000,000	36,825,000	93,650,000	93,650,000	93,650,000	93,650,000	93,650,000	93,650,000	327,775,000
		16	3	345,525,640	538,067,600	53,806,760	937,400,000	10,000,000	36,870,000	93,740,000	93,740,000	93,740,000	93,740,000	93,740,000	93,740,000	328,090,000
		17	3	345,894,240	538,641,600	53,864,160	938,400,000	10,000,000	36,920,000	93,840,000	93,840,000	93,840,000	93,840,000	93,840,000	93,840,000	328,440,000
		18	3	346,225,980	539,158,200	53,915,820	939,300,000	10,000,000	36,965,000	93,930,000	93,930,000	93,930,000	93,930,000	93,930,000	93,930,000	328,755,000
		19	3	346,594,580	539,732,200	53,973,220	940,300,000	10,000,000	37,015,000	94,030,000	94,030,000	94,030,000	94,030,000	94,030,000	94,030,000	329,105,000
		21	3	347,110,620	540,535,800	54,053,580	941,700,000	10,000,000	37,085,000	94,170,000	94,170,000	94,170,000	94,170,000	94,170,000	94,170,000	329,595,000
		22	3	347,294,920	540,822,800	54,082,280	942,200,000	10,000,000	37,110,000	94,220,000	94,220,000	94,220,000	94,220,000	94,220,000	94,220,000	329,770,000
		23	3	347,442,360	541,052,400	54,105,240	942,600,000	10,000,000	37,130,000	94,260,000	94,260,000	94,260,000	94,260,000	94,260,000	94,260,000	329,910,000
		24	3	347,626,660	541,339,400	54,133,940	943,100,000	10,000,000	37,155,000	94,310,000	94,310,000	94,310,000	94,310,000	94,310,000	94,310,000	330,085,000
		25	3	347,810,960	541,626,400	54,162,640	943,600,000	10,000,000	37,180,000	94,360,000	94,360,000	94,360,000	94,360,000	94,360,000	94,360,000	330,260,000
		26	3	348,511,300	542,717,000	54,271,700	945,500,000	10,000,000	37,275,000	94,550,000	94,550,000	94,550,000	94,550,000	94,550,000	94,550,000	330,925,000
		27	3	349,211,640	543,807,600	54,380,760	947,400,000	10,000,000	37,370,000	94,740,000	94,740,000	94,740,000	94,740,000	94,740,000	94,740,000	331,590,000
		28	3	349,875,120	544,840,800	54,484,080	949,200,000	10,000,000	37,460,000	94,920,000	94,920,000	94,920,000	94,920,000	94,920,000	94,920,000	332,220,000
		29	3	350,575,460	545,931,400	54,593,140	951,100,000	10,000,000	37,555,000	95,110,000	95,110,000	95,110,000	95,110,000	95,110,000	95,110,000	332,885,000
		30	3	351,275,800	547,022,000	54,702,200	953,000,000	10,000,000	37,650,000	95,300,000	95,300,000	95,300,000	95,300,000	95,300,000	95,300,000	333,550,000
		31	3	351,976,140	548,112,600	54,811,260	954,900,000	10,000,000	37,745,000	95,490,000	95,490,000	95,490,000	95,490,000	95,490,000	95,490,000	334,215,000
		32	3	352,676,480	549,203,200	54,920,320	956,800,000	10,000,000	37,840,000	95,680,000	95,680,000	95,680,000	95,680,000	95,680,000	95,680,000	334,880,000
		33	3	353,376,820	550,293,800	55,029,380	958,700,000	10,000,000	37,935,000	95,870,000	95,870,000	95,870,000	95,870,000	95,870,000	95,870,000	335,545,000
		34	3	354,077,160	551,384,400	55,138,440	960,600,000	10,000,000	38,030,000	96,060,000	96,060,000	96,060,000	96,060,000	96,060,000	96,060,000	336,210,000
		35	3	354,777,500	552,475,000	55,247,500	962,500,000	10,000,000	38,125,000	96,250,000	96,250,000	96,250,000	96,250,000	96,250,000	96,250,000	336,875,000
		36	3	355,440,980	553,508,200	55,350,820	964,300,000	10,000,000	38,215,000	96,430,000	96,430,000	96,430,000	96,430,000	96,430,000	96,430,000	337,505,000
		37	3	356,141,320	554,598,800	55,459,880	966,200,000	10,000,000	38,310,000	96,620,000	96,620,000	96,620,000	96,620,000	96,620,000	96,620,000	338,170,000
		38	3	356,841,660	555,689,400	55,568,940	968,100,000	10,000,000	38,405,000	96,810,000	96,810,000	96,810,000	96,810,000	96,810,000	96,810,000	338,835,000
		39	3	357,542,000	556,780,000	55,678,000	970,000,000	10,000,000	38,500,000	97,000,000	97,000,000	97,000,000	97,000,000	97,000,000	97,000,000	339,500,000

105OA	301,302, 303동 3호	40	3	358,242,340	557,870,600	55,787,060	971,900,000	10,000,000	38,595,000	97,190,000	97,190,000	97,190,000	97,190,000	97,190,000	97,190,000	340,165,000
		41	3	358,942,680	558,961,200	55,896,120	973,800,000	10,000,000	38,690,000	97,380,000	97,380,000	97,380,000	97,380,000	97,380,000	97,380,000	340,830,000
		42	3	359,643,020	560,051,800	56,005,180	975,700,000	10,000,000	38,785,000	97,570,000	97,570,000	97,570,000	97,570,000	97,570,000	97,570,000	341,495,000
		43	3	360,343,360	561,142,400	56,114,240	977,600,000	10,000,000	38,880,000	97,760,000	97,760,000	97,760,000	97,760,000	97,760,000	97,760,000	342,160,000
		44	3	361,006,840	562,175,600	56,217,560	979,400,000	10,000,000	38,970,000	97,940,000	97,940,000	97,940,000	97,940,000	97,940,000	97,940,000	342,790,000
		45	3	361,707,180	563,266,200	56,326,620	981,300,000	10,000,000	39,065,000	98,130,000	98,130,000	98,130,000	98,130,000	98,130,000	98,130,000	343,455,000
		46	3	362,407,520	564,356,800	56,435,680	983,200,000	10,000,000	39,160,000	98,320,000	98,320,000	98,320,000	98,320,000	98,320,000	98,320,000	344,120,000
		47	3	363,107,860	565,447,400	56,544,740	985,100,000	10,000,000	39,255,000	98,510,000	98,510,000	98,510,000	98,510,000	98,510,000	98,510,000	344,785,000
		48	3	363,808,200	566,538,000	56,653,800	987,000,000	10,000,000	39,350,000	98,700,000	98,700,000	98,700,000	98,700,000	98,700,000	98,700,000	345,450,000
		49	3	364,508,540	567,628,600	56,762,860	988,900,000	10,000,000	39,445,000	98,890,000	98,890,000	98,890,000	98,890,000	98,890,000	98,890,000	346,115,000
105OB	301동 2호	2	1	299,192,620	465,915,800	46,591,580	811,700,000	10,000,000	30,585,000	81,170,000	81,170,000	81,170,000	81,170,000	81,170,000	81,170,000	284,095,000
		3	1	310,176,900	483,021,000	48,302,100	841,500,000	10,000,000	32,075,000	84,150,000	84,150,000	84,150,000	84,150,000	84,150,000	84,150,000	294,525,000
		4	1	321,161,180	500,126,200	50,012,620	871,300,000	10,000,000	33,565,000	87,130,000	87,130,000	87,130,000	87,130,000	87,130,000	87,130,000	304,955,000
		5	1	332,145,460	517,231,400	51,723,140	901,100,000	10,000,000	35,055,000	90,110,000	90,110,000	90,110,000	90,110,000	90,110,000	90,110,000	315,385,000
		6	1	336,531,800	524,062,000	52,406,200	913,000,000	10,000,000	35,650,000	91,300,000	91,300,000	91,300,000	91,300,000	91,300,000	91,300,000	319,550,000
		7	1	340,918,140	530,892,600	53,089,260	924,900,000	10,000,000	36,245,000	92,490,000	92,490,000	92,490,000	92,490,000	92,490,000	92,490,000	323,715,000
		8	1	345,304,480	537,723,200	53,772,320	936,800,000	10,000,000	36,840,000	93,680,000	93,680,000	93,680,000	93,680,000	93,680,000	93,680,000	327,880,000
		9	1	349,727,680	544,611,200	54,461,120	948,800,000	10,000,000	37,440,000	94,880,000	94,880,000	94,880,000	94,880,000	94,880,000	94,880,000	332,080,000
		10	1	354,114,020	551,441,800	55,144,180	960,700,000	10,000,000	38,035,000	96,070,000	96,070,000	96,070,000	96,070,000	96,070,000	96,070,000	336,245,000
		11	1	355,920,160	554,254,400	55,425,440	965,600,000	10,000,000	38,280,000	96,560,000	96,560,000	96,560,000	96,560,000	96,560,000	96,560,000	337,960,000
		12	1	357,763,160	557,124,400	55,712,440	970,600,000	10,000,000	38,530,000	97,060,000	97,060,000	97,060,000	97,060,000	97,060,000	97,060,000	339,710,000
		13	1	359,606,160	559,994,400	55,999,440	975,600,000	10,000,000	38,780,000	97,560,000	97,560,000	97,560,000	97,560,000	97,560,000	97,560,000	341,460,000
		14	1	361,412,300	562,807,000	56,280,700	980,500,000	10,000,000	39,025,000	98,050,000	98,050,000	98,050,000	98,050,000	98,050,000	98,050,000	343,175,000
		15	1	363,255,300	565,677,000	56,567,700	985,500,000	10,000,000	39,275,000	98,550,000	98,550,000	98,550,000	98,550,000	98,550,000	98,550,000	344,925,000
		16	1	363,623,900	566,251,000	56,625,100	986,500,000	10,000,000	39,325,000	98,650,000	98,650,000	98,650,000	98,650,000	98,650,000	98,650,000	345,275,000
		17	1	363,992,500	566,825,000	56,682,500	987,500,000	10,000,000	39,375,000	98,750,000	98,750,000	98,750,000	98,750,000	98,750,000	98,750,000	345,625,000
		18	1	364,361,100	567,399,000	56,739,900	988,500,000	10,000,000	39,425,000	98,850,000	98,850,000	98,850,000	98,850,000	98,850,000	98,850,000	345,975,000
		19	1	364,729,700	567,973,000	56,797,300	989,500,000	10,000,000	39,475,000	98,950,000	98,950,000	98,950,000	98,950,000	98,950,000	98,950,000	346,325,000
		21	1	365,282,600	568,834,000	56,883,400	991,000,000	10,000,000	39,550,000	99,100,000	99,100,000	99,100,000	99,100,000	99,100,000	99,100,000	346,850,000
		22	1	365,466,900	569,121,000	56,912,100	991,500,000	10,000,000	39,575,000	99,150,000	99,150,000	99,150,000	99,150,000	99,150,000	99,150,000	347,025,000
		23	1	365,651,200	569,408,000	56,940,800	992,000,000	10,000,000	39,600,000	99,200,000	99,200,000	99,200,000	99,200,000	99,200,000	99,200,000	347,200,000

105OB	301동 2호	24	1	365,798,640	569,637,600	56,963,760	992,400,000	10,000,000	39,620,000	99,240,000	99,240,000	99,240,000	99,240,000	99,240,000	99,240,000	347,340,000
		25	1	365,982,940	569,924,600	56,992,460	992,900,000	10,000,000	39,645,000	99,290,000	99,290,000	99,290,000	99,290,000	99,290,000	99,290,000	347,515,000
		26	1	366,720,140	571,072,600	57,107,260	994,900,000	10,000,000	39,745,000	99,490,000	99,490,000	99,490,000	99,490,000	99,490,000	99,490,000	348,215,000
		27	1	367,457,340	572,220,600	57,222,060	996,900,000	10,000,000	39,845,000	99,690,000	99,690,000	99,690,000	99,690,000	99,690,000	99,690,000	348,915,000
		28	1	368,194,540	573,368,600	57,336,860	998,900,000	10,000,000	39,945,000	99,890,000	99,890,000	99,890,000	99,890,000	99,890,000	99,890,000	349,615,000
		29	1	368,931,740	574,516,600	57,451,660	1,000,900,000	10,000,000	40,045,000	100,090,000	100,090,000	100,090,000	100,090,000	100,090,000	100,090,000	350,315,000
		30	1	369,668,940	575,664,600	57,566,460	1,002,900,000	10,000,000	40,145,000	100,290,000	100,290,000	100,290,000	100,290,000	100,290,000	100,290,000	351,015,000
		31	1	370,406,140	576,812,600	57,681,260	1,004,900,000	10,000,000	40,245,000	100,490,000	100,490,000	100,490,000	100,490,000	100,490,000	100,490,000	351,715,000
		32	1	371,106,480	577,903,200	57,790,320	1,006,800,000	10,000,000	40,340,000	100,680,000	100,680,000	100,680,000	100,680,000	100,680,000	100,680,000	352,380,000
		33	1	371,843,680	579,051,200	57,905,120	1,008,800,000	10,000,000	40,440,000	100,880,000	100,880,000	100,880,000	100,880,000	100,880,000	100,880,000	353,080,000
		34	1	372,580,880	580,199,200	58,019,920	1,010,800,000	10,000,000	40,540,000	101,080,000	101,080,000	101,080,000	101,080,000	101,080,000	101,080,000	353,780,000
		35	1	373,318,080	581,347,200	58,134,720	1,012,800,000	10,000,000	40,640,000	101,280,000	101,280,000	101,280,000	101,280,000	101,280,000	101,280,000	354,480,000
		36	1	374,055,280	582,495,200	58,249,520	1,014,800,000	10,000,000	40,740,000	101,480,000	101,480,000	101,480,000	101,480,000	101,480,000	101,480,000	355,180,000
		37	1	374,792,480	583,643,200	58,364,320	1,016,800,000	10,000,000	40,840,000	101,680,000	101,680,000	101,680,000	101,680,000	101,680,000	101,680,000	355,880,000
		38	1	375,529,680	584,791,200	58,479,120	1,018,800,000	10,000,000	40,940,000	101,880,000	101,880,000	101,880,000	101,880,000	101,880,000	101,880,000	356,580,000
		39	1	376,266,880	585,939,200	58,593,920	1,020,800,000	10,000,000	41,040,000	102,080,000	102,080,000	102,080,000	102,080,000	102,080,000	102,080,000	357,280,000
		40	1	376,967,220	587,029,800	58,702,980	1,022,700,000	10,000,000	41,135,000	102,270,000	102,270,000	102,270,000	102,270,000	102,270,000	102,270,000	357,945,000
		41	1	377,704,420	588,177,800	58,817,780	1,024,700,000	10,000,000	41,235,000	102,470,000	102,470,000	102,470,000	102,470,000	102,470,000	102,470,000	358,645,000
		42	1	378,441,620	589,325,800	58,932,580	1,026,700,000	10,000,000	41,335,000	102,670,000	102,670,000	102,670,000	102,670,000	102,670,000	102,670,000	359,345,000
		43	1	379,178,820	590,473,800	59,047,380	1,028,700,000	10,000,000	41,435,000	102,870,000	102,870,000	102,870,000	102,870,000	102,870,000	102,870,000	360,045,000
		44	1	379,916,020	591,621,800	59,162,180	1,030,700,000	10,000,000	41,535,000	103,070,000	103,070,000	103,070,000	103,070,000	103,070,000	103,070,000	360,745,000
		45	1	380,653,220	592,769,800	59,276,980	1,032,700,000	10,000,000	41,635,000	103,270,000	103,270,000	103,270,000	103,270,000	103,270,000	103,270,000	361,445,000
		46	1	381,390,420	593,917,800	59,391,780	1,034,700,000	10,000,000	41,735,000	103,470,000	103,470,000	103,470,000	103,470,000	103,470,000	103,470,000	362,145,000
		47	1	382,090,760	595,008,400	59,500,840	1,036,600,000	10,000,000	41,830,000	103,660,000	103,660,000	103,660,000	103,660,000	103,660,000	103,660,000	362,810,000
		48	1	382,827,960	596,156,400	59,615,640	1,038,600,000	10,000,000	41,930,000	103,860,000	103,860,000	103,860,000	103,860,000	103,860,000	103,860,000	363,510,000
		49	1	383,565,160	597,304,400	59,730,440	1,040,600,000	10,000,000	42,030,000	104,060,000	104,060,000	104,060,000	104,060,000	104,060,000	104,060,000	364,210,000
105OB	302,303 동 2호	2	2	291,710,040	454,263,600	45,426,360	791,400,000	10,000,000	29,570,000	79,140,000	79,140,000	79,140,000	79,140,000	79,140,000	79,140,000	276,990,000
		3	2	302,436,300	470,967,000	47,096,700	820,500,000	10,000,000	31,025,000	82,050,000	82,050,000	82,050,000	82,050,000	82,050,000	82,050,000	287,175,000
		4	2	313,125,700	487,613,000	48,761,300	849,500,000	10,000,000	32,475,000	84,950,000	84,950,000	84,950,000	84,950,000	84,950,000	84,950,000	297,325,000
		5	2	323,815,100	504,259,000	50,425,900	878,500,000	10,000,000	33,925,000	87,850,000	87,850,000	87,850,000	87,850,000	87,850,000	87,850,000	307,475,000
		6	2	328,127,720	510,974,800	51,097,480	890,200,000	10,000,000	34,510,000	89,020,000	89,020,000	89,020,000	89,020,000	89,020,000	89,020,000	311,570,000

105OB	302,303 동 2호	7	2	332,403,480	517,633,200	51,763,320	901,800,000	10,000,000	35,090,000	90,180,000	90,180,000	90,180,000	90,180,000	90,180,000	90,180,000	315,630,000
		8	2	336,679,240	524,291,600	52,429,160	913,400,000	10,000,000	35,670,000	91,340,000	91,340,000	91,340,000	91,340,000	91,340,000	91,340,000	319,690,000
		9	2	340,955,000	530,950,000	53,095,000	925,000,000	10,000,000	36,250,000	92,500,000	92,500,000	92,500,000	92,500,000	92,500,000	92,500,000	323,750,000
		10	2	345,230,760	537,608,400	53,760,840	936,600,000	10,000,000	36,830,000	93,660,000	93,660,000	93,660,000	93,660,000	93,660,000	93,660,000	327,810,000
		11	2	347,036,900	540,421,000	54,042,100	941,500,000	10,000,000	37,075,000	94,150,000	94,150,000	94,150,000	94,150,000	94,150,000	94,150,000	329,525,000
		12	2	348,806,180	543,176,200	54,317,620	946,300,000	10,000,000	37,315,000	94,630,000	94,630,000	94,630,000	94,630,000	94,630,000	94,630,000	331,205,000
		13	2	350,612,320	545,988,800	54,598,880	951,200,000	10,000,000	37,560,000	95,120,000	95,120,000	95,120,000	95,120,000	95,120,000	95,120,000	332,920,000
		14	2	352,381,600	548,744,000	54,874,400	956,000,000	10,000,000	37,800,000	95,600,000	95,600,000	95,600,000	95,600,000	95,600,000	95,600,000	334,600,000
		15	2	354,150,880	551,499,200	55,149,920	960,800,000	10,000,000	38,040,000	96,080,000	96,080,000	96,080,000	96,080,000	96,080,000	96,080,000	336,280,000
		16	2	354,519,480	552,073,200	55,207,320	961,800,000	10,000,000	38,090,000	96,180,000	96,180,000	96,180,000	96,180,000	96,180,000	96,180,000	336,630,000
		17	2	354,888,080	552,647,200	55,264,720	962,800,000	10,000,000	38,140,000	96,280,000	96,280,000	96,280,000	96,280,000	96,280,000	96,280,000	336,980,000
		18	2	355,219,820	553,163,800	55,316,380	963,700,000	10,000,000	38,185,000	96,370,000	96,370,000	96,370,000	96,370,000	96,370,000	96,370,000	337,295,000
		19	2	355,588,420	553,737,800	55,373,780	964,700,000	10,000,000	38,235,000	96,470,000	96,470,000	96,470,000	96,470,000	96,470,000	96,470,000	337,645,000
		21	2	356,141,320	554,598,800	55,459,880	966,200,000	10,000,000	38,310,000	96,620,000	96,620,000	96,620,000	96,620,000	96,620,000	96,620,000	338,170,000
		22	2	356,288,760	554,828,400	55,482,840	966,600,000	10,000,000	38,330,000	96,660,000	96,660,000	96,660,000	96,660,000	96,660,000	96,660,000	338,310,000
		23	2	356,473,060	555,115,400	55,511,540	967,100,000	10,000,000	38,355,000	96,710,000	96,710,000	96,710,000	96,710,000	96,710,000	96,710,000	338,485,000
		24	2	356,657,360	555,402,400	55,540,240	967,600,000	10,000,000	38,380,000	96,760,000	96,760,000	96,760,000	96,760,000	96,760,000	96,760,000	338,660,000
		25	2	356,841,660	555,689,400	55,568,940	968,100,000	10,000,000	38,405,000	96,810,000	96,810,000	96,810,000	96,810,000	96,810,000	96,810,000	338,835,000
		26	2	357,542,000	556,780,000	55,678,000	970,000,000	10,000,000	38,500,000	97,000,000	97,000,000	97,000,000	97,000,000	97,000,000	97,000,000	339,500,000
		27	2	358,279,200	557,928,000	55,792,800	972,000,000	10,000,000	38,600,000	97,200,000	97,200,000	97,200,000	97,200,000	97,200,000	97,200,000	340,200,000
		28	2	358,979,540	559,018,600	55,901,860	973,900,000	10,000,000	38,695,000	97,390,000	97,390,000	97,390,000	97,390,000	97,390,000	97,390,000	340,865,000
		29	2	359,679,880	560,109,200	56,010,920	975,800,000	10,000,000	38,790,000	97,580,000	97,580,000	97,580,000	97,580,000	97,580,000	97,580,000	341,530,000
		30	2	360,417,080	561,257,200	56,125,720	977,800,000	10,000,000	38,890,000	97,780,000	97,780,000	97,780,000	97,780,000	97,780,000	97,780,000	342,230,000
		31	2	361,117,420	562,347,800	56,234,780	979,700,000	10,000,000	38,985,000	97,970,000	97,970,000	97,970,000	97,970,000	97,970,000	97,970,000	342,895,000
		32	2	361,854,620	563,495,800	56,349,580	981,700,000	10,000,000	39,085,000	98,170,000	98,170,000	98,170,000	98,170,000	98,170,000	98,170,000	343,595,000
		33	2	362,554,960	564,586,400	56,458,640	983,600,000	10,000,000	39,180,000	98,360,000	98,360,000	98,360,000	98,360,000	98,360,000	98,360,000	344,260,000
		34	2	363,255,300	565,677,000	56,567,700	985,500,000	10,000,000	39,275,000	98,550,000	98,550,000	98,550,000	98,550,000	98,550,000	98,550,000	344,925,000
		35	2	363,992,500	566,825,000	56,682,500	987,500,000	10,000,000	39,375,000	98,750,000	98,750,000	98,750,000	98,750,000	98,750,000	98,750,000	345,625,000
		36	2	364,692,840	567,915,600	56,791,560	989,400,000	10,000,000	39,470,000	98,940,000	98,940,000	98,940,000	98,940,000	98,940,000	98,940,000	346,290,000
		37	2	365,393,180	569,006,200	56,900,620	991,300,000	10,000,000	39,565,000	99,130,000	99,130,000	99,130,000	99,130,000	99,130,000	99,130,000	346,955,000
		38	2	366,130,380	570,154,200	57,015,420	993,300,000	10,000,000	39,665,000	99,330,000	99,330,000	99,330,000	99,330,000	99,330,000	99,330,000	347,655,000

105OB	302,303 동 2호	39	2	366,830,720	571,244,800	57,124,480	995,200,000	10,000,000	39,760,000	99,520,000	99,520,000	99,520,000	99,520,000	99,520,000	99,520,000	348,320,000
		40	2	367,531,060	572,335,400	57,233,540	997,100,000	10,000,000	39,855,000	99,710,000	99,710,000	99,710,000	99,710,000	99,710,000	99,710,000	348,985,000
		41	2	368,268,260	573,483,400	57,348,340	999,100,000	10,000,000	39,955,000	99,910,000	99,910,000	99,910,000	99,910,000	99,910,000	99,910,000	349,685,000
		42	2	368,968,600	574,574,000	57,457,400	1,001,000,000	10,000,000	40,050,000	100,100,000	100,100,000	100,100,000	100,100,000	100,100,000	100,100,000	350,350,000
		43	2	369,705,800	575,722,000	57,572,200	1,003,000,000	10,000,000	40,150,000	100,300,000	100,300,000	100,300,000	100,300,000	100,300,000	100,300,000	351,050,000
		44	2	370,406,140	576,812,600	57,681,260	1,004,900,000	10,000,000	40,245,000	100,490,000	100,490,000	100,490,000	100,490,000	100,490,000	100,490,000	351,715,000
		45	2	371,106,480	577,903,200	57,790,320	1,006,800,000	10,000,000	40,340,000	100,680,000	100,680,000	100,680,000	100,680,000	100,680,000	100,680,000	352,380,000
		46	2	371,843,680	579,051,200	57,905,120	1,008,800,000	10,000,000	40,440,000	100,880,000	100,880,000	100,880,000	100,880,000	100,880,000	100,880,000	353,080,000
		47	2	372,544,020	580,141,800	58,014,180	1,010,700,000	10,000,000	40,535,000	101,070,000	101,070,000	101,070,000	101,070,000	101,070,000	101,070,000	353,745,000
		48	2	373,244,360	581,232,400	58,123,240	1,012,600,000	10,000,000	40,630,000	101,260,000	101,260,000	101,260,000	101,260,000	101,260,000	101,260,000	354,410,000
		49	2	373,981,560	582,380,400	58,238,040	1,014,600,000	10,000,000	40,730,000	101,460,000	101,460,000	101,460,000	101,460,000	101,460,000	101,460,000	355,110,000
105OC	302,303 동 1호	2	2	285,296,400	444,276,000	44,427,600	774,000,000	10,000,000	28,700,000	77,400,000	77,400,000	77,400,000	77,400,000	77,400,000	77,400,000	270,900,000
		3	2	295,764,640	460,577,600	46,057,760	802,400,000	10,000,000	30,120,000	80,240,000	80,240,000	80,240,000	80,240,000	80,240,000	80,240,000	280,840,000
		4	2	306,232,880	476,879,200	47,687,920	830,800,000	10,000,000	31,540,000	83,080,000	83,080,000	83,080,000	83,080,000	83,080,000	83,080,000	290,780,000
		5	2	316,701,120	493,180,800	49,318,080	859,200,000	10,000,000	32,960,000	85,920,000	85,920,000	85,920,000	85,920,000	85,920,000	85,920,000	300,720,000
		6	2	320,903,160	499,724,400	49,972,440	870,600,000	10,000,000	33,530,000	87,060,000	87,060,000	87,060,000	87,060,000	87,060,000	87,060,000	304,710,000
		7	2	325,105,200	506,268,000	50,626,800	882,000,000	10,000,000	34,100,000	88,200,000	88,200,000	88,200,000	88,200,000	88,200,000	88,200,000	308,700,000
		8	2	329,270,380	512,754,200	51,275,420	893,300,000	10,000,000	34,665,000	89,330,000	89,330,000	89,330,000	89,330,000	89,330,000	89,330,000	312,655,000
		9	2	333,472,420	519,297,800	51,929,780	904,700,000	10,000,000	35,235,000	90,470,000	90,470,000	90,470,000	90,470,000	90,470,000	90,470,000	316,645,000
		10	2	337,674,460	525,841,400	52,584,140	916,100,000	10,000,000	35,805,000	91,610,000	91,610,000	91,610,000	91,610,000	91,610,000	91,610,000	320,635,000
		11	2	339,406,880	528,539,200	52,853,920	920,800,000	10,000,000	36,040,000	92,080,000	92,080,000	92,080,000	92,080,000	92,080,000	92,080,000	322,280,000
		12	2	341,139,300	531,237,000	53,123,700	925,500,000	10,000,000	36,275,000	92,550,000	92,550,000	92,550,000	92,550,000	92,550,000	92,550,000	323,925,000
		13	2	342,908,580	533,992,200	53,399,220	930,300,000	10,000,000	36,515,000	93,030,000	93,030,000	93,030,000	93,030,000	93,030,000	93,030,000	325,605,000
		14	2	344,641,000	536,690,000	53,669,000	935,000,000	10,000,000	36,750,000	93,500,000	93,500,000	93,500,000	93,500,000	93,500,000	93,500,000	327,250,000
		15	2	346,373,420	539,387,800	53,938,780	939,700,000	10,000,000	36,985,000	93,970,000	93,970,000	93,970,000	93,970,000	93,970,000	93,970,000	328,895,000
		16	2	346,742,020	539,961,800	53,996,180	940,700,000	10,000,000	37,035,000	94,070,000	94,070,000	94,070,000	94,070,000	94,070,000	94,070,000	329,245,000
		17	2	347,073,760	540,478,400	54,047,840	941,600,000	10,000,000	37,080,000	94,160,000	94,160,000	94,160,000	94,160,000	94,160,000	94,160,000	329,560,000
		18	2	347,442,360	541,052,400	54,105,240	942,600,000	10,000,000	37,130,000	94,260,000	94,260,000	94,260,000	94,260,000	94,260,000	94,260,000	329,910,000
		19	2	347,774,100	541,569,000	54,156,900	943,500,000	10,000,000	37,175,000	94,350,000	94,350,000	94,350,000	94,350,000	94,350,000	94,350,000	330,225,000
		21	2	348,290,140	542,372,600	54,237,260	944,900,000	10,000,000	37,245,000	94,490,000	94,490,000	94,490,000	94,490,000	94,490,000	94,490,000	330,715,000
		22	2	348,474,440	542,659,600	54,265,960	945,400,000	10,000,000	37,270,000	94,540,000	94,540,000	94,540,000	94,540,000	94,540,000	94,540,000	330,890,000

105OC	302,303 동 1호	23	2	348,658,740	542,946,600	54,294,660	945,900,000	10,000,000	37,295,000	94,590,000	94,590,000	94,590,000	94,590,000	94,590,000	94,590,000	331,065,000
		24	2	348,843,040	543,233,600	54,323,360	946,400,000	10,000,000	37,320,000	94,640,000	94,640,000	94,640,000	94,640,000	94,640,000	94,640,000	331,240,000
		25	2	348,990,480	543,463,200	54,346,320	946,800,000	10,000,000	37,340,000	94,680,000	94,680,000	94,680,000	94,680,000	94,680,000	94,680,000	331,380,000
		26	2	349,690,820	544,553,800	54,455,380	948,700,000	10,000,000	37,435,000	94,870,000	94,870,000	94,870,000	94,870,000	94,870,000	94,870,000	332,045,000
		27	2	350,391,160	545,644,400	54,564,440	950,600,000	10,000,000	37,530,000	95,060,000	95,060,000	95,060,000	95,060,000	95,060,000	95,060,000	332,710,000
		28	2	351,091,500	546,735,000	54,673,500	952,500,000	10,000,000	37,625,000	95,250,000	95,250,000	95,250,000	95,250,000	95,250,000	95,250,000	333,375,000
		29	2	351,791,840	547,825,600	54,782,560	954,400,000	10,000,000	37,720,000	95,440,000	95,440,000	95,440,000	95,440,000	95,440,000	95,440,000	334,040,000
		30	2	352,492,180	548,916,200	54,891,620	956,300,000	10,000,000	37,815,000	95,630,000	95,630,000	95,630,000	95,630,000	95,630,000	95,630,000	334,705,000
		31	2	353,192,520	550,006,800	55,000,680	958,200,000	10,000,000	37,910,000	95,820,000	95,820,000	95,820,000	95,820,000	95,820,000	95,820,000	335,370,000
		32	2	353,892,860	551,097,400	55,109,740	960,100,000	10,000,000	38,005,000	96,010,000	96,010,000	96,010,000	96,010,000	96,010,000	96,010,000	336,035,000
		33	2	354,593,200	552,188,000	55,218,800	962,000,000	10,000,000	38,100,000	96,200,000	96,200,000	96,200,000	96,200,000	96,200,000	96,200,000	336,700,000
		34	2	355,293,540	553,278,600	55,327,860	963,900,000	10,000,000	38,195,000	96,390,000	96,390,000	96,390,000	96,390,000	96,390,000	96,390,000	337,365,000
		35	2	355,993,880	554,369,200	55,436,920	965,800,000	10,000,000	38,290,000	96,580,000	96,580,000	96,580,000	96,580,000	96,580,000	96,580,000	338,030,000
		36	2	356,694,220	555,459,800	55,545,980	967,700,000	10,000,000	38,385,000	96,770,000	96,770,000	96,770,000	96,770,000	96,770,000	96,770,000	338,695,000
		37	2	357,394,560	556,550,400	55,655,040	969,600,000	10,000,000	38,480,000	96,960,000	96,960,000	96,960,000	96,960,000	96,960,000	96,960,000	339,360,000
		38	2	358,094,900	557,641,000	55,764,100	971,500,000	10,000,000	38,575,000	97,150,000	97,150,000	97,150,000	97,150,000	97,150,000	97,150,000	340,025,000
		39	2	358,758,380	558,674,200	55,867,420	973,300,000	10,000,000	38,665,000	97,330,000	97,330,000	97,330,000	97,330,000	97,330,000	97,330,000	340,655,000
		40	2	359,458,720	559,764,800	55,976,480	975,200,000	10,000,000	38,760,000	97,520,000	97,520,000	97,520,000	97,520,000	97,520,000	97,520,000	341,320,000
		41	2	360,159,060	560,855,400	56,085,540	977,100,000	10,000,000	38,855,000	97,710,000	97,710,000	97,710,000	97,710,000	97,710,000	97,710,000	341,985,000
		42	2	360,859,400	561,946,000	56,194,600	979,000,000	10,000,000	38,950,000	97,900,000	97,900,000	97,900,000	97,900,000	97,900,000	97,900,000	342,650,000
		43	2	361,559,740	563,036,600	56,303,660	980,900,000	10,000,000	39,045,000	98,090,000	98,090,000	98,090,000	98,090,000	98,090,000	98,090,000	343,315,000
		44	2	362,260,080	564,127,200	56,412,720	982,800,000	10,000,000	39,140,000	98,280,000	98,280,000	98,280,000	98,280,000	98,280,000	98,280,000	343,980,000
		45	2	362,960,420	565,217,800	56,521,780	984,700,000	10,000,000	39,235,000	98,470,000	98,470,000	98,470,000	98,470,000	98,470,000	98,470,000	344,645,000
		46	2	363,660,760	566,308,400	56,630,840	986,600,000	10,000,000	39,330,000	98,660,000	98,660,000	98,660,000	98,660,000	98,660,000	98,660,000	345,310,000
		47	2	364,361,100	567,399,000	56,739,900	988,500,000	10,000,000	39,425,000	98,850,000	98,850,000	98,850,000	98,850,000	98,850,000	98,850,000	345,975,000
		48	2	365,061,440	568,489,600	56,848,960	990,400,000	10,000,000	39,520,000	99,040,000	99,040,000	99,040,000	99,040,000	99,040,000	99,040,000	346,640,000
		49	2	365,761,780	569,580,200	56,958,020	992,300,000	10,000,000	39,615,000	99,230,000	99,230,000	99,230,000	99,230,000	99,230,000	99,230,000	347,305,000
105OD	301동 1호	2	1	300,040,400	467,236,000	46,723,600	814,000,000	10,000,000	30,700,000	81,400,000	81,400,000	81,400,000	81,400,000	81,400,000	81,400,000	284,900,000
		3	1	311,024,680	484,341,200	48,434,120	843,800,000	10,000,000	32,190,000	84,380,000	84,380,000	84,380,000	84,380,000	84,380,000	84,380,000	295,330,000
		4	1	322,045,820	501,503,800	50,150,380	873,700,000	10,000,000	33,685,000	87,370,000	87,370,000	87,370,000	87,370,000	87,370,000	87,370,000	305,795,000
		5	1	333,066,960	518,666,400	51,866,640	903,600,000	10,000,000	35,180,000	90,360,000	90,360,000	90,360,000	90,360,000	90,360,000	90,360,000	316,260,000

105OD	301동 1호	6	1	337,453,300	525,497,000	52,549,700	915,500,000	10,000,000	35,775,000	91,550,000	91,550,000	91,550,000	91,550,000	91,550,000	91,550,000	320,425,000
		7	1	341,876,500	532,385,000	53,238,500	927,500,000	10,000,000	36,375,000	92,750,000	92,750,000	92,750,000	92,750,000	92,750,000	92,750,000	324,625,000
		8	1	346,262,840	539,215,600	53,921,560	939,400,000	10,000,000	36,970,000	93,940,000	93,940,000	93,940,000	93,940,000	93,940,000	93,940,000	328,790,000
		9	1	350,686,040	546,103,600	54,610,360	951,400,000	10,000,000	37,570,000	95,140,000	95,140,000	95,140,000	95,140,000	95,140,000	95,140,000	332,990,000
		10	1	355,072,380	552,934,200	55,293,420	963,300,000	10,000,000	38,165,000	96,330,000	96,330,000	96,330,000	96,330,000	96,330,000	96,330,000	337,155,000
		11	1	356,915,380	555,804,200	55,580,420	968,300,000	10,000,000	38,415,000	96,830,000	96,830,000	96,830,000	96,830,000	96,830,000	96,830,000	338,905,000
		12	1	358,758,380	558,674,200	55,867,420	973,300,000	10,000,000	38,665,000	97,330,000	97,330,000	97,330,000	97,330,000	97,330,000	97,330,000	340,655,000
		13	1	360,601,380	561,544,200	56,154,420	978,300,000	10,000,000	38,915,000	97,830,000	97,830,000	97,830,000	97,830,000	97,830,000	97,830,000	342,405,000
		14	1	362,444,380	564,414,200	56,441,420	983,300,000	10,000,000	39,165,000	98,330,000	98,330,000	98,330,000	98,330,000	98,330,000	98,330,000	344,155,000
		15	1	364,250,520	567,226,800	56,722,680	988,200,000	10,000,000	39,410,000	98,820,000	98,820,000	98,820,000	98,820,000	98,820,000	98,820,000	345,870,000
		16	1	364,619,120	567,800,800	56,780,080	989,200,000	10,000,000	39,460,000	98,920,000	98,920,000	98,920,000	98,920,000	98,920,000	98,920,000	346,220,000
		17	1	364,987,720	568,374,800	56,837,480	990,200,000	10,000,000	39,510,000	99,020,000	99,020,000	99,020,000	99,020,000	99,020,000	99,020,000	346,570,000
		18	1	365,356,320	568,948,800	56,894,880	991,200,000	10,000,000	39,560,000	99,120,000	99,120,000	99,120,000	99,120,000	99,120,000	99,120,000	346,920,000
		19	1	365,724,920	569,522,800	56,952,280	992,200,000	10,000,000	39,610,000	99,220,000	99,220,000	99,220,000	99,220,000	99,220,000	99,220,000	347,270,000
		21	1	366,277,820	570,383,800	57,038,380	993,700,000	10,000,000	39,685,000	99,370,000	99,370,000	99,370,000	99,370,000	99,370,000	99,370,000	347,795,000
		22	1	366,462,120	570,670,800	57,067,080	994,200,000	10,000,000	39,710,000	99,420,000	99,420,000	99,420,000	99,420,000	99,420,000	99,420,000	347,970,000
		23	1	366,646,420	570,957,800	57,095,780	994,700,000	10,000,000	39,735,000	99,470,000	99,470,000	99,470,000	99,470,000	99,470,000	99,470,000	348,145,000
		24	1	366,830,720	571,244,800	57,124,480	995,200,000	10,000,000	39,760,000	99,520,000	99,520,000	99,520,000	99,520,000	99,520,000	99,520,000	348,320,000
		25	1	367,015,020	571,531,800	57,153,180	995,700,000	10,000,000	39,785,000	99,570,000	99,570,000	99,570,000	99,570,000	99,570,000	99,570,000	348,495,000
		26	1	367,752,220	572,679,800	57,267,980	997,700,000	10,000,000	39,885,000	99,770,000	99,770,000	99,770,000	99,770,000	99,770,000	99,770,000	349,195,000
		27	1	368,489,420	573,827,800	57,382,780	999,700,000	10,000,000	39,985,000	99,970,000	99,970,000	99,970,000	99,970,000	99,970,000	99,970,000	349,895,000
		28	1	369,226,620	574,975,800	57,497,580	1,001,700,000	10,000,000	40,085,000	100,170,000	100,170,000	100,170,000	100,170,000	100,170,000	100,170,000	350,595,000
		29	1	369,963,820	576,123,800	57,612,380	1,003,700,000	10,000,000	40,185,000	100,370,000	100,370,000	100,370,000	100,370,000	100,370,000	100,370,000	351,295,000
		30	1	370,701,020	577,271,800	57,727,180	1,005,700,000	10,000,000	40,285,000	100,570,000	100,570,000	100,570,000	100,570,000	100,570,000	100,570,000	351,995,000
		31	1	371,401,360	578,362,400	57,836,240	1,007,600,000	10,000,000	40,380,000	100,760,000	100,760,000	100,760,000	100,760,000	100,760,000	100,760,000	352,660,000
		32	1	372,138,560	579,510,400	57,951,040	1,009,600,000	10,000,000	40,480,000	100,960,000	100,960,000	100,960,000	100,960,000	100,960,000	100,960,000	353,360,000
		33	1	372,875,760	580,658,400	58,065,840	1,011,600,000	10,000,000	40,580,000	101,160,000	101,160,000	101,160,000	101,160,000	101,160,000	101,160,000	354,060,000
		34	1	373,612,960	581,806,400	58,180,640	1,013,600,000	10,000,000	40,680,000	101,360,000	101,360,000	101,360,000	101,360,000	101,360,000	101,360,000	354,760,000
		35	1	374,350,160	582,954,400	58,295,440	1,015,600,000	10,000,000	40,780,000	101,560,000	101,560,000	101,560,000	101,560,000	101,560,000	101,560,000	355,460,000
		36	1	375,087,360	584,102,400	58,410,240	1,017,600,000	10,000,000	40,880,000	101,760,000	101,760,000	101,760,000	101,760,000	101,760,000	101,760,000	356,160,000
		37	1	375,824,560	585,250,400	58,525,040	1,019,600,000	10,000,000	40,980,000	101,960,000	101,960,000	101,960,000	101,960,000	101,960,000	101,960,000	356,860,000

105OD	301동 1호	38	1	376,561,760	586,398,400	58,639,840	1,021,600,000	10,000,000	41,080,000	102,160,000	102,160,000	102,160,000	102,160,000	102,160,000	102,160,000	357,560,000
		39	1	377,298,960	587,546,400	58,754,640	1,023,600,000	10,000,000	41,180,000	102,360,000	102,360,000	102,360,000	102,360,000	102,360,000	102,360,000	358,260,000
		40	1	378,036,160	588,694,400	58,869,440	1,025,600,000	10,000,000	41,280,000	102,560,000	102,560,000	102,560,000	102,560,000	102,560,000	102,560,000	358,960,000
		41	1	378,773,360	589,842,400	58,984,240	1,027,600,000	10,000,000	41,380,000	102,760,000	102,760,000	102,760,000	102,760,000	102,760,000	102,760,000	359,660,000
		42	1	379,510,560	590,990,400	59,099,040	1,029,600,000	10,000,000	41,480,000	102,960,000	102,960,000	102,960,000	102,960,000	102,960,000	102,960,000	360,360,000
		43	1	380,210,900	592,081,000	59,208,100	1,031,500,000	10,000,000	41,575,000	103,150,000	103,150,000	103,150,000	103,150,000	103,150,000	103,150,000	361,025,000
		44	1	380,948,100	593,229,000	59,322,900	1,033,500,000	10,000,000	41,675,000	103,350,000	103,350,000	103,350,000	103,350,000	103,350,000	103,350,000	361,725,000
		45	1	381,685,300	594,377,000	59,437,700	1,035,500,000	10,000,000	41,775,000	103,550,000	103,550,000	103,550,000	103,550,000	103,550,000	103,550,000	362,425,000
		46	1	382,422,500	595,525,000	59,552,500	1,037,500,000	10,000,000	41,875,000	103,750,000	103,750,000	103,750,000	103,750,000	103,750,000	103,750,000	363,125,000
		47	1	383,159,700	596,673,000	59,667,300	1,039,500,000	10,000,000	41,975,000	103,950,000	103,950,000	103,950,000	103,950,000	103,950,000	103,950,000	363,825,000
		48	1	383,896,900	597,821,000	59,782,100	1,041,500,000	10,000,000	42,075,000	104,150,000	104,150,000	104,150,000	104,150,000	104,150,000	104,150,000	364,525,000
		49	1	384,634,100	598,969,000	59,896,900	1,043,500,000	10,000,000	42,175,000	104,350,000	104,350,000	104,350,000	104,350,000	104,350,000	104,350,000	365,225,000
121OA	301,302, 303동 5호	2	3	355,625,280	553,795,200	55,379,520	964,800,000	10,000,000	38,240,000	96,480,000	96,480,000	96,480,000	96,480,000	96,480,000	96,480,000	337,680,000
		3	3	368,673,720	574,114,800	57,411,480	1,000,200,000	10,000,000	40,010,000	100,020,000	100,020,000	100,020,000	100,020,000	100,020,000	100,020,000	350,070,000
		4	3	381,759,020	594,491,800	59,449,180	1,035,700,000	10,000,000	41,785,000	103,570,000	103,570,000	103,570,000	103,570,000	103,570,000	103,570,000	362,495,000
		5	3	394,807,460	614,811,400	61,481,140	1,071,100,000	10,000,000	43,555,000	107,110,000	107,110,000	107,110,000	107,110,000	107,110,000	107,110,000	374,885,000
		6	3	400,004,720	622,904,800	62,290,480	1,085,200,000	10,000,000	44,260,000	108,520,000	108,520,000	108,520,000	108,520,000	108,520,000	108,520,000	379,820,000
		7	3	405,238,840	631,055,600	63,105,560	1,099,400,000	10,000,000	44,970,000	109,940,000	109,940,000	109,940,000	109,940,000	109,940,000	109,940,000	384,790,000
		8	3	410,472,960	639,206,400	63,920,640	1,113,600,000	10,000,000	45,680,000	111,360,000	111,360,000	111,360,000	111,360,000	111,360,000	111,360,000	389,760,000
		9	3	415,670,220	647,299,800	64,729,980	1,127,700,000	10,000,000	46,385,000	112,770,000	112,770,000	112,770,000	112,770,000	112,770,000	112,770,000	394,695,000
		10	3	420,904,340	655,450,600	65,545,060	1,141,900,000	10,000,000	47,095,000	114,190,000	114,190,000	114,190,000	114,190,000	114,190,000	114,190,000	399,665,000
		11	3	423,079,080	658,837,200	65,883,720	1,147,800,000	10,000,000	47,390,000	114,780,000	114,780,000	114,780,000	114,780,000	114,780,000	114,780,000	401,730,000
		12	3	425,253,820	662,223,800	66,222,380	1,153,700,000	10,000,000	47,685,000	115,370,000	115,370,000	115,370,000	115,370,000	115,370,000	115,370,000	403,795,000
		13	3	427,428,560	665,610,400	66,561,040	1,159,600,000	10,000,000	47,980,000	115,960,000	115,960,000	115,960,000	115,960,000	115,960,000	115,960,000	405,860,000
		14	3	429,603,300	668,997,000	66,899,700	1,165,500,000	10,000,000	48,275,000	116,550,000	116,550,000	116,550,000	116,550,000	116,550,000	116,550,000	407,925,000
		15	3	431,778,040	672,383,600	67,238,360	1,171,400,000	10,000,000	48,570,000	117,140,000	117,140,000	117,140,000	117,140,000	117,140,000	117,140,000	409,990,000
		16	3	432,220,360	673,072,400	67,307,240	1,172,600,000	10,000,000	48,630,000	117,260,000	117,260,000	117,260,000	117,260,000	117,260,000	117,260,000	410,410,000
		17	3	432,625,820	673,703,800	67,370,380	1,173,700,000	10,000,000	48,685,000	117,370,000	117,370,000	117,370,000	117,370,000	117,370,000	117,370,000	410,795,000
		18	3	433,068,140	674,392,600	67,439,260	1,174,900,000	10,000,000	48,745,000	117,490,000	117,490,000	117,490,000	117,490,000	117,490,000	117,490,000	411,215,000
		19	3	433,510,460	675,081,400	67,508,140	1,176,100,000	10,000,000	48,805,000	117,610,000	117,610,000	117,610,000	117,610,000	117,610,000	117,610,000	411,635,000
		21	3	434,173,940	676,114,600	67,611,460	1,177,900,000	10,000,000	48,895,000	117,790,000	117,790,000	117,790,000	117,790,000	117,790,000	117,790,000	412,265,000

121OA	301,302, 303동 5호	22	3	434,395,100	676,459,000	67,645,900	1,178,500,000	10,000,000	48,925,000	117,850,000	117,850,000	117,850,000	117,850,000	117,850,000	117,850,000	412,475,000
		23	3	434,616,260	676,803,400	67,680,340	1,179,100,000	10,000,000	48,955,000	117,910,000	117,910,000	117,910,000	117,910,000	117,910,000	117,910,000	412,685,000
		24	3	434,800,560	677,090,400	67,709,040	1,179,600,000	10,000,000	48,980,000	117,960,000	117,960,000	117,960,000	117,960,000	117,960,000	117,960,000	412,860,000
		25	3	435,021,720	677,434,800	67,743,480	1,180,200,000	10,000,000	49,010,000	118,020,000	118,020,000	118,020,000	118,020,000	118,020,000	118,020,000	413,070,000
		26	3	435,906,360	678,812,400	67,881,240	1,182,600,000	10,000,000	49,130,000	118,260,000	118,260,000	118,260,000	118,260,000	118,260,000	118,260,000	413,910,000
		27	3	436,791,000	680,190,000	68,019,000	1,185,000,000	10,000,000	49,250,000	118,500,000	118,500,000	118,500,000	118,500,000	118,500,000	118,500,000	414,750,000
		28	3	437,638,780	681,510,200	68,151,020	1,187,300,000	10,000,000	49,365,000	118,730,000	118,730,000	118,730,000	118,730,000	118,730,000	118,730,000	415,555,000
		29	3	438,523,420	682,887,800	68,288,780	1,189,700,000	10,000,000	49,485,000	118,970,000	118,970,000	118,970,000	118,970,000	118,970,000	118,970,000	416,395,000
		30	3	439,371,200	684,208,000	68,420,800	1,192,000,000	10,000,000	49,600,000	119,200,000	119,200,000	119,200,000	119,200,000	119,200,000	119,200,000	417,200,000
		31	3	440,255,840	685,585,600	68,558,560	1,194,400,000	10,000,000	49,720,000	119,440,000	119,440,000	119,440,000	119,440,000	119,440,000	119,440,000	418,040,000
		32	3	441,140,480	686,963,200	68,696,320	1,196,800,000	10,000,000	49,840,000	119,680,000	119,680,000	119,680,000	119,680,000	119,680,000	119,680,000	418,880,000
		33	3	441,988,260	688,283,400	68,828,340	1,199,100,000	10,000,000	49,955,000	119,910,000	119,910,000	119,910,000	119,910,000	119,910,000	119,910,000	419,685,000
		34	3	442,872,900	689,661,000	68,966,100	1,201,500,000	10,000,000	50,075,000	120,150,000	120,150,000	120,150,000	120,150,000	120,150,000	120,150,000	420,525,000
		35	3	443,720,680	690,981,200	69,098,120	1,203,800,000	10,000,000	50,190,000	120,380,000	120,380,000	120,380,000	120,380,000	120,380,000	120,380,000	421,330,000
		36	3	444,605,320	692,358,800	69,235,880	1,206,200,000	10,000,000	50,310,000	120,620,000	120,620,000	120,620,000	120,620,000	120,620,000	120,620,000	422,170,000
		37	3	445,489,960	693,736,400	69,373,640	1,208,600,000	10,000,000	50,430,000	120,860,000	120,860,000	120,860,000	120,860,000	120,860,000	120,860,000	423,010,000
		38	3	446,337,740	695,056,600	69,505,660	1,210,900,000	10,000,000	50,545,000	121,090,000	121,090,000	121,090,000	121,090,000	121,090,000	121,090,000	423,815,000
		39	3	447,222,380	696,434,200	69,643,420	1,213,300,000	10,000,000	50,665,000	121,330,000	121,330,000	121,330,000	121,330,000	121,330,000	121,330,000	424,655,000
		40	3	448,070,160	697,754,400	69,775,440	1,215,600,000	10,000,000	50,780,000	121,560,000	121,560,000	121,560,000	121,560,000	121,560,000	121,560,000	425,460,000
		41	3	448,954,800	699,132,000	69,913,200	1,218,000,000	10,000,000	50,900,000	121,800,000	121,800,000	121,800,000	121,800,000	121,800,000	121,800,000	426,300,000
		42	3	449,839,440	700,509,600	70,050,960	1,220,400,000	10,000,000	51,020,000	122,040,000	122,040,000	122,040,000	122,040,000	122,040,000	122,040,000	427,140,000
		43	3	450,687,220	701,829,800	70,182,980	1,222,700,000	10,000,000	51,135,000	122,270,000	122,270,000	122,270,000	122,270,000	122,270,000	122,270,000	427,945,000
		44	3	451,571,860	703,207,400	70,320,740	1,225,100,000	10,000,000	51,255,000	122,510,000	122,510,000	122,510,000	122,510,000	122,510,000	122,510,000	428,785,000
		45	3	452,456,500	704,585,000	70,458,500	1,227,500,000	10,000,000	51,375,000	122,750,000	122,750,000	122,750,000	122,750,000	122,750,000	122,750,000	429,625,000
		46	3	453,304,280	705,905,200	70,590,520	1,229,800,000	10,000,000	51,490,000	122,980,000	122,980,000	122,980,000	122,980,000	122,980,000	122,980,000	430,430,000
		47	3	454,188,920	707,282,800	70,728,280	1,232,200,000	10,000,000	51,610,000	123,220,000	123,220,000	123,220,000	123,220,000	123,220,000	123,220,000	431,270,000
		48	3	455,036,700	708,603,000	70,860,300	1,234,500,000	10,000,000	51,725,000	123,450,000	123,450,000	123,450,000	123,450,000	123,450,000	123,450,000	432,075,000
		49	3	455,921,340	709,980,600	70,998,060	1,236,900,000	10,000,000	51,845,000	123,690,000	123,690,000	123,690,000	123,690,000	123,690,000	123,690,000	432,915,000
121OB	301동 7호	2	1	347,000,040	540,363,600	54,036,360	941,400,000	10,000,000	37,070,000	94,140,000	94,140,000	94,140,000	94,140,000	94,140,000	94,140,000	329,490,000
		3	1	359,753,600	560,224,000	56,022,400	976,000,000	10,000,000	38,800,000	97,600,000	97,600,000	97,600,000	97,600,000	97,600,000	97,600,000	341,600,000
		4	1	372,470,300	580,027,000	58,002,700	1,010,500,000	10,000,000	40,525,000	101,050,000	101,050,000	101,050,000	101,050,000	101,050,000	101,050,000	353,675,000

121OB	301동 7호	5	1	385,223,860	599,887,400	59,988,740	1,045,100,000	10,000,000	42,255,000	104,510,000	104,510,000	104,510,000	104,510,000	104,510,000	104,510,000	365,785,000
		6	1	390,310,540	607,808,600	60,780,860	1,058,900,000	10,000,000	42,945,000	105,890,000	105,890,000	105,890,000	105,890,000	105,890,000	105,890,000	370,615,000
		7	1	395,397,220	615,729,800	61,572,980	1,072,700,000	10,000,000	43,635,000	107,270,000	107,270,000	107,270,000	107,270,000	107,270,000	107,270,000	375,445,000
		8	1	400,483,900	623,651,000	62,365,100	1,086,500,000	10,000,000	44,325,000	108,650,000	108,650,000	108,650,000	108,650,000	108,650,000	108,650,000	380,275,000
		9	1	405,570,580	631,572,200	63,157,220	1,100,300,000	10,000,000	45,015,000	110,030,000	110,030,000	110,030,000	110,030,000	110,030,000	110,030,000	385,105,000
		10	1	410,694,120	639,550,800	63,955,080	1,114,200,000	10,000,000	45,710,000	111,420,000	111,420,000	111,420,000	111,420,000	111,420,000	111,420,000	389,970,000
		11	1	412,795,140	642,822,600	64,282,260	1,119,900,000	10,000,000	45,995,000	111,990,000	111,990,000	111,990,000	111,990,000	111,990,000	111,990,000	391,965,000
		12	1	414,933,020	646,151,800	64,615,180	1,125,700,000	10,000,000	46,285,000	112,570,000	112,570,000	112,570,000	112,570,000	112,570,000	112,570,000	393,995,000
		13	1	417,034,040	649,423,600	64,942,360	1,131,400,000	10,000,000	46,570,000	113,140,000	113,140,000	113,140,000	113,140,000	113,140,000	113,140,000	395,990,000
		14	1	419,171,920	652,752,800	65,275,280	1,137,200,000	10,000,000	46,860,000	113,720,000	113,720,000	113,720,000	113,720,000	113,720,000	113,720,000	398,020,000
		15	1	421,309,800	656,082,000	65,608,200	1,143,000,000	10,000,000	47,150,000	114,300,000	114,300,000	114,300,000	114,300,000	114,300,000	114,300,000	400,050,000
		16	1	421,715,260	656,713,400	65,671,340	1,144,100,000	10,000,000	47,205,000	114,410,000	114,410,000	114,410,000	114,410,000	114,410,000	114,410,000	400,435,000
		17	1	422,157,580	657,402,200	65,740,220	1,145,300,000	10,000,000	47,265,000	114,530,000	114,530,000	114,530,000	114,530,000	114,530,000	114,530,000	400,855,000
		18	1	422,563,040	658,033,600	65,803,360	1,146,400,000	10,000,000	47,320,000	114,640,000	114,640,000	114,640,000	114,640,000	114,640,000	114,640,000	401,240,000
		19	1	423,005,360	658,722,400	65,872,240	1,147,600,000	10,000,000	47,380,000	114,760,000	114,760,000	114,760,000	114,760,000	114,760,000	114,760,000	401,660,000
		21	1	423,631,980	659,698,200	65,969,820	1,149,300,000	10,000,000	47,465,000	114,930,000	114,930,000	114,930,000	114,930,000	114,930,000	114,930,000	402,255,000
		22	1	423,853,140	660,042,600	66,004,260	1,149,900,000	10,000,000	47,495,000	114,990,000	114,990,000	114,990,000	114,990,000	114,990,000	114,990,000	402,465,000
		23	1	424,037,440	660,329,600	66,032,960	1,150,400,000	10,000,000	47,520,000	115,040,000	115,040,000	115,040,000	115,040,000	115,040,000	115,040,000	402,640,000
		24	1	424,258,600	660,674,000	66,067,400	1,151,000,000	10,000,000	47,550,000	115,100,000	115,100,000	115,100,000	115,100,000	115,100,000	115,100,000	402,850,000
		25	1	424,479,760	661,018,400	66,101,840	1,151,600,000	10,000,000	47,580,000	115,160,000	115,160,000	115,160,000	115,160,000	115,160,000	115,160,000	403,060,000
		26	1	425,327,540	662,338,600	66,233,860	1,153,900,000	10,000,000	47,695,000	115,390,000	115,390,000	115,390,000	115,390,000	115,390,000	115,390,000	403,865,000
		27	1	426,175,320	663,658,800	66,365,880	1,156,200,000	10,000,000	47,810,000	115,620,000	115,620,000	115,620,000	115,620,000	115,620,000	115,620,000	404,670,000
		28	1	427,023,100	664,979,000	66,497,900	1,158,500,000	10,000,000	47,925,000	115,850,000	115,850,000	115,850,000	115,850,000	115,850,000	115,850,000	405,475,000
		29	1	427,870,880	666,299,200	66,629,920	1,160,800,000	10,000,000	48,040,000	116,080,000	116,080,000	116,080,000	116,080,000	116,080,000	116,080,000	406,280,000
		30	1	428,718,660	667,619,400	66,761,940	1,163,100,000	10,000,000	48,155,000	116,310,000	116,310,000	116,310,000	116,310,000	116,310,000	116,310,000	407,085,000
		31	1	429,566,440	668,939,600	66,893,960	1,165,400,000	10,000,000	48,270,000	116,540,000	116,540,000	116,540,000	116,540,000	116,540,000	116,540,000	407,890,000
		32	1	430,414,220	670,259,800	67,025,980	1,167,700,000	10,000,000	48,385,000	116,770,000	116,770,000	116,770,000	116,770,000	116,770,000	116,770,000	408,695,000
		33	1	431,262,000	671,580,000	67,158,000	1,170,000,000	10,000,000	48,500,000	117,000,000	117,000,000	117,000,000	117,000,000	117,000,000	117,000,000	409,500,000
		34	1	432,109,780	672,900,200	67,290,020	1,172,300,000	10,000,000	48,615,000	117,230,000	117,230,000	117,230,000	117,230,000	117,230,000	117,230,000	410,305,000
		35	1	432,957,560	674,220,400	67,422,040	1,174,600,000	10,000,000	48,730,000	117,460,000	117,460,000	117,460,000	117,460,000	117,460,000	117,460,000	411,110,000
		36	1	433,805,340	675,540,600	67,554,060	1,176,900,000	10,000,000	48,845,000	117,690,000	117,690,000	117,690,000	117,690,000	117,690,000	117,690,000	411,915,000

121OB	301동 7호	37	1	434,653,120	676,860,800	67,686,080	1,179,200,000	10,000,000	48,960,000	117,920,000	117,920,000	117,920,000	117,920,000	117,920,000	117,920,000	412,720,000
		38	1	435,500,900	678,181,000	67,818,100	1,181,500,000	10,000,000	49,075,000	118,150,000	118,150,000	118,150,000	118,150,000	118,150,000	118,150,000	413,525,000
		39	1	436,348,680	679,501,200	67,950,120	1,183,800,000	10,000,000	49,190,000	118,380,000	118,380,000	118,380,000	118,380,000	118,380,000	118,380,000	414,330,000
		40	1	437,196,460	680,821,400	68,082,140	1,186,100,000	10,000,000	49,305,000	118,610,000	118,610,000	118,610,000	118,610,000	118,610,000	118,610,000	415,135,000
		41	1	438,044,240	682,141,600	68,214,160	1,188,400,000	10,000,000	49,420,000	118,840,000	118,840,000	118,840,000	118,840,000	118,840,000	118,840,000	415,940,000
		42	1	438,892,020	683,461,800	68,346,180	1,190,700,000	10,000,000	49,535,000	119,070,000	119,070,000	119,070,000	119,070,000	119,070,000	119,070,000	416,745,000
		43	1	439,776,660	684,839,400	68,483,940	1,193,100,000	10,000,000	49,655,000	119,310,000	119,310,000	119,310,000	119,310,000	119,310,000	119,310,000	417,585,000
		44	1	440,624,440	686,159,600	68,615,960	1,195,400,000	10,000,000	49,770,000	119,540,000	119,540,000	119,540,000	119,540,000	119,540,000	119,540,000	418,390,000
		45	1	441,472,220	687,479,800	68,747,980	1,197,700,000	10,000,000	49,885,000	119,770,000	119,770,000	119,770,000	119,770,000	119,770,000	119,770,000	419,195,000
		46	1	442,320,000	688,800,000	68,880,000	1,200,000,000	10,000,000	50,000,000	120,000,000	120,000,000	120,000,000	120,000,000	120,000,000	120,000,000	420,000,000
		47	1	443,167,780	690,120,200	69,012,020	1,202,300,000	10,000,000	50,115,000	120,230,000	120,230,000	120,230,000	120,230,000	120,230,000	120,230,000	420,805,000
		48	1	444,015,560	691,440,400	69,144,040	1,204,600,000	10,000,000	50,230,000	120,460,000	120,460,000	120,460,000	120,460,000	120,460,000	120,460,000	421,610,000
		49	1	444,863,340	692,760,600	69,276,060	1,206,900,000	10,000,000	50,345,000	120,690,000	120,690,000	120,690,000	120,690,000	120,690,000	120,690,000	422,415,000
121OB	302,303 동 7호	2	2	340,144,080	529,687,200	52,968,720	922,800,000	10,000,000	36,140,000	92,280,000	92,280,000	92,280,000	92,280,000	92,280,000	92,280,000	322,980,000
		3	2	352,602,760	549,088,400	54,908,840	956,600,000	10,000,000	37,830,000	95,660,000	95,660,000	95,660,000	95,660,000	95,660,000	95,660,000	334,810,000
		4	2	365,098,300	568,547,000	56,854,700	990,500,000	10,000,000	39,525,000	99,050,000	99,050,000	99,050,000	99,050,000	99,050,000	99,050,000	346,675,000
		5	2	377,593,840	588,005,600	58,800,560	1,024,400,000	10,000,000	41,220,000	102,440,000	102,440,000	102,440,000	102,440,000	102,440,000	102,440,000	358,540,000
		6	2	382,569,940	595,754,600	59,575,460	1,037,900,000	10,000,000	41,895,000	103,790,000	103,790,000	103,790,000	103,790,000	103,790,000	103,790,000	363,265,000
		7	2	387,582,900	603,561,000	60,356,100	1,051,500,000	10,000,000	42,575,000	105,150,000	105,150,000	105,150,000	105,150,000	105,150,000	105,150,000	368,025,000
		8	2	392,559,000	611,310,000	61,131,000	1,065,000,000	10,000,000	43,250,000	106,500,000	106,500,000	106,500,000	106,500,000	106,500,000	106,500,000	372,750,000
		9	2	397,571,960	619,116,400	61,911,640	1,078,600,000	10,000,000	43,930,000	107,860,000	107,860,000	107,860,000	107,860,000	107,860,000	107,860,000	377,510,000
		10	2	402,548,060	626,865,400	62,686,540	1,092,100,000	10,000,000	44,605,000	109,210,000	109,210,000	109,210,000	109,210,000	109,210,000	109,210,000	382,235,000
		11	2	404,612,220	630,079,800	63,007,980	1,097,700,000	10,000,000	44,885,000	109,770,000	109,770,000	109,770,000	109,770,000	109,770,000	109,770,000	384,195,000
		12	2	406,713,240	633,351,600	63,335,160	1,103,400,000	10,000,000	45,170,000	110,340,000	110,340,000	110,340,000	110,340,000	110,340,000	110,340,000	386,190,000
		13	2	408,777,400	636,566,000	63,656,600	1,109,000,000	10,000,000	45,450,000	110,900,000	110,900,000	110,900,000	110,900,000	110,900,000	110,900,000	388,150,000
		14	2	410,878,420	639,837,800	63,983,780	1,114,700,000	10,000,000	45,735,000	111,470,000	111,470,000	111,470,000	111,470,000	111,470,000	111,470,000	390,145,000
		15	2	412,942,580	643,052,200	64,305,220	1,120,300,000	10,000,000	46,015,000	112,030,000	112,030,000	112,030,000	112,030,000	112,030,000	112,030,000	392,105,000
		16	2	413,384,900	643,741,000	64,374,100	1,121,500,000	10,000,000	46,075,000	112,150,000	112,150,000	112,150,000	112,150,000	112,150,000	112,150,000	392,525,000
		17	2	413,790,360	644,372,400	64,437,240	1,122,600,000	10,000,000	46,130,000	112,260,000	112,260,000	112,260,000	112,260,000	112,260,000	112,260,000	392,910,000
		18	2	414,195,820	645,003,800	64,500,380	1,123,700,000	10,000,000	46,185,000	112,370,000	112,370,000	112,370,000	112,370,000	112,370,000	112,370,000	393,295,000
		19	2	414,601,280	645,635,200	64,563,520	1,124,800,000	10,000,000	46,240,000	112,480,000	112,480,000	112,480,000	112,480,000	112,480,000	112,480,000	393,680,000

121OB	302,303동 7호	21	2	415,227,900	646,611,000	64,661,100	1,126,500,000	10,000,000	46,325,000	112,650,000	112,650,000	112,650,000	112,650,000	112,650,000	112,650,000	394,275,000
		22	2	415,449,060	646,955,400	64,695,540	1,127,100,000	10,000,000	46,355,000	112,710,000	112,710,000	112,710,000	112,710,000	112,710,000	112,710,000	394,485,000
		23	2	415,670,220	647,299,800	64,729,980	1,127,700,000	10,000,000	46,385,000	112,770,000	112,770,000	112,770,000	112,770,000	112,770,000	112,770,000	394,695,000
		24	2	415,854,520	647,586,800	64,758,680	1,128,200,000	10,000,000	46,410,000	112,820,000	112,820,000	112,820,000	112,820,000	112,820,000	112,820,000	394,870,000
		25	2	416,075,680	647,931,200	64,793,120	1,128,800,000	10,000,000	46,440,000	112,880,000	112,880,000	112,880,000	112,880,000	112,880,000	112,880,000	395,080,000
		26	2	416,886,600	649,194,000	64,919,400	1,131,000,000	10,000,000	46,550,000	113,100,000	113,100,000	113,100,000	113,100,000	113,100,000	113,100,000	395,850,000
		27	2	417,734,380	650,514,200	65,051,420	1,133,300,000	10,000,000	46,665,000	113,330,000	113,330,000	113,330,000	113,330,000	113,330,000	113,330,000	396,655,000
		28	2	418,582,160	651,834,400	65,183,440	1,135,600,000	10,000,000	46,780,000	113,560,000	113,560,000	113,560,000	113,560,000	113,560,000	113,560,000	397,460,000
		29	2	419,393,080	653,097,200	65,309,720	1,137,800,000	10,000,000	46,890,000	113,780,000	113,780,000	113,780,000	113,780,000	113,780,000	113,780,000	398,230,000
		30	2	420,240,860	654,417,400	65,441,740	1,140,100,000	10,000,000	47,005,000	114,010,000	114,010,000	114,010,000	114,010,000	114,010,000	114,010,000	399,035,000
		31	2	421,051,780	655,680,200	65,568,020	1,142,300,000	10,000,000	47,115,000	114,230,000	114,230,000	114,230,000	114,230,000	114,230,000	114,230,000	399,805,000
		32	2	421,899,560	657,000,400	65,700,040	1,144,600,000	10,000,000	47,230,000	114,460,000	114,460,000	114,460,000	114,460,000	114,460,000	114,460,000	400,610,000
		33	2	422,710,480	658,263,200	65,826,320	1,146,800,000	10,000,000	47,340,000	114,680,000	114,680,000	114,680,000	114,680,000	114,680,000	114,680,000	401,380,000
		34	2	423,558,260	659,583,400	65,958,340	1,149,100,000	10,000,000	47,455,000	114,910,000	114,910,000	114,910,000	114,910,000	114,910,000	114,910,000	402,185,000
		35	2	424,406,040	660,903,600	66,090,360	1,151,400,000	10,000,000	47,570,000	115,140,000	115,140,000	115,140,000	115,140,000	115,140,000	115,140,000	402,990,000
		36	2	425,216,960	662,166,400	66,216,640	1,153,600,000	10,000,000	47,680,000	115,360,000	115,360,000	115,360,000	115,360,000	115,360,000	115,360,000	403,760,000
		37	2	426,064,740	663,486,600	66,348,660	1,155,900,000	10,000,000	47,795,000	115,590,000	115,590,000	115,590,000	115,590,000	115,590,000	115,590,000	404,565,000
		38	2	426,875,660	664,749,400	66,474,940	1,158,100,000	10,000,000	47,905,000	115,810,000	115,810,000	115,810,000	115,810,000	115,810,000	115,810,000	405,335,000
		39	2	427,723,440	666,069,600	66,606,960	1,160,400,000	10,000,000	48,020,000	116,040,000	116,040,000	116,040,000	116,040,000	116,040,000	116,040,000	406,140,000
		40	2	428,571,220	667,389,800	66,738,980	1,162,700,000	10,000,000	48,135,000	116,270,000	116,270,000	116,270,000	116,270,000	116,270,000	116,270,000	406,945,000
		41	2	429,382,140	668,652,600	66,865,260	1,164,900,000	10,000,000	48,245,000	116,490,000	116,490,000	116,490,000	116,490,000	116,490,000	116,490,000	407,715,000
		42	2	430,229,920	669,972,800	66,997,280	1,167,200,000	10,000,000	48,360,000	116,720,000	116,720,000	116,720,000	116,720,000	116,720,000	116,720,000	408,520,000
		43	2	431,040,840	671,235,600	67,123,560	1,169,400,000	10,000,000	48,470,000	116,940,000	116,940,000	116,940,000	116,940,000	116,940,000	116,940,000	409,290,000
		44	2	431,888,620	672,555,800	67,255,580	1,171,700,000	10,000,000	48,585,000	117,170,000	117,170,000	117,170,000	117,170,000	117,170,000	117,170,000	410,095,000
		45	2	432,699,540	673,818,600	67,381,860	1,173,900,000	10,000,000	48,695,000	117,390,000	117,390,000	117,390,000	117,390,000	117,390,000	117,390,000	410,865,000
		46	2	433,547,320	675,138,800	67,513,880	1,176,200,000	10,000,000	48,810,000	117,620,000	117,620,000	117,620,000	117,620,000	117,620,000	117,620,000	411,670,000
		47	2	434,395,100	676,459,000	67,645,900	1,178,500,000	10,000,000	48,925,000	117,850,000	117,850,000	117,850,000	117,850,000	117,850,000	117,850,000	412,475,000
		48	2	435,206,020	677,721,800	67,772,180	1,180,700,000	10,000,000	49,035,000	118,070,000	118,070,000	118,070,000	118,070,000	118,070,000	118,070,000	413,245,000
		49	2	436,053,800	679,042,000	67,904,200	1,183,000,000	10,000,000	49,150,000	118,300,000	118,300,000	118,300,000	118,300,000	118,300,000	118,300,000	414,050,000
136OA	301,302, 303동 4호	2	3	403,948,740	629,046,600	62,904,660	1,095,900,000	10,000,000	44,795,000	109,590,000	109,590,000	109,590,000	109,590,000	109,590,000	109,590,000	383,565,000
		3	3	418,803,320	652,178,800	65,217,880	1,136,200,000	10,000,000	46,810,000	113,620,000	113,620,000	113,620,000	113,620,000	113,620,000	113,620,000	397,670,000

136OA	301,302, 303동 4호	4	3	433,621,040	675,253,600	67,525,360	1,176,400,000	10,000,000	48,820,000	117,640,000	117,640,000	117,640,000	117,640,000	117,640,000	117,640,000	411,740,000
		5	3	448,438,760	698,328,400	69,832,840	1,216,600,000	10,000,000	50,830,000	121,660,000	121,660,000	121,660,000	121,660,000	121,660,000	121,660,000	425,810,000
		6	3	454,373,220	707,569,800	70,756,980	1,232,700,000	10,000,000	51,635,000	123,270,000	123,270,000	123,270,000	123,270,000	123,270,000	123,270,000	431,445,000
		7	3	460,307,680	716,811,200	71,681,120	1,248,800,000	10,000,000	52,440,000	124,880,000	124,880,000	124,880,000	124,880,000	124,880,000	124,880,000	437,080,000
		8	3	466,242,140	726,052,600	72,605,260	1,264,900,000	10,000,000	53,245,000	126,490,000	126,490,000	126,490,000	126,490,000	126,490,000	126,490,000	442,715,000
		9	3	472,176,600	735,294,000	73,529,400	1,281,000,000	10,000,000	54,050,000	128,100,000	128,100,000	128,100,000	128,100,000	128,100,000	128,100,000	448,350,000
		10	3	478,074,200	744,478,000	74,447,800	1,297,000,000	10,000,000	54,850,000	129,700,000	129,700,000	129,700,000	129,700,000	129,700,000	129,700,000	453,950,000
		11	3	480,543,820	748,323,800	74,832,380	1,303,700,000	10,000,000	55,185,000	130,370,000	130,370,000	130,370,000	130,370,000	130,370,000	130,370,000	456,295,000
		12	3	483,050,300	752,227,000	75,222,700	1,310,500,000	10,000,000	55,525,000	131,050,000	131,050,000	131,050,000	131,050,000	131,050,000	131,050,000	458,675,000
		13	3	485,519,920	756,072,800	75,607,280	1,317,200,000	10,000,000	55,860,000	131,720,000	131,720,000	131,720,000	131,720,000	131,720,000	131,720,000	461,020,000
		14	3	487,989,540	759,918,600	75,991,860	1,323,900,000	10,000,000	56,195,000	132,390,000	132,390,000	132,390,000	132,390,000	132,390,000	132,390,000	463,365,000
		15	3	490,459,160	763,764,400	76,376,440	1,330,600,000	10,000,000	56,530,000	133,060,000	133,060,000	133,060,000	133,060,000	133,060,000	133,060,000	465,710,000
		16	3	490,938,340	764,510,600	76,451,060	1,331,900,000	10,000,000	56,595,000	133,190,000	133,190,000	133,190,000	133,190,000	133,190,000	133,190,000	466,165,000
		17	3	491,417,520	765,256,800	76,525,680	1,333,200,000	10,000,000	56,660,000	133,320,000	133,320,000	133,320,000	133,320,000	133,320,000	133,320,000	466,620,000
		18	3	491,933,560	766,060,400	76,606,040	1,334,600,000	10,000,000	56,730,000	133,460,000	133,460,000	133,460,000	133,460,000	133,460,000	133,460,000	467,110,000
		19	3	492,412,740	766,806,600	76,680,660	1,335,900,000	10,000,000	56,795,000	133,590,000	133,590,000	133,590,000	133,590,000	133,590,000	133,590,000	467,565,000
		21	3	493,149,940	767,954,600	76,795,460	1,337,900,000	10,000,000	56,895,000	133,790,000	133,790,000	133,790,000	133,790,000	133,790,000	133,790,000	468,265,000
		22	3	493,407,960	768,356,400	76,835,640	1,338,600,000	10,000,000	56,930,000	133,860,000	133,860,000	133,860,000	133,860,000	133,860,000	133,860,000	468,510,000
		23	3	493,665,980	768,758,200	76,875,820	1,339,300,000	10,000,000	56,965,000	133,930,000	133,930,000	133,930,000	133,930,000	133,930,000	133,930,000	468,755,000
		24	3	493,887,140	769,102,600	76,910,260	1,339,900,000	10,000,000	56,995,000	133,990,000	133,990,000	133,990,000	133,990,000	133,990,000	133,990,000	468,965,000
		25	3	494,145,160	769,504,400	76,950,440	1,340,600,000	10,000,000	57,030,000	134,060,000	134,060,000	134,060,000	134,060,000	134,060,000	134,060,000	469,210,000
		26	3	495,140,380	771,054,200	77,105,420	1,343,300,000	10,000,000	57,165,000	134,330,000	134,330,000	134,330,000	134,330,000	134,330,000	134,330,000	470,155,000
		27	3	496,135,600	772,604,000	77,260,400	1,346,000,000	10,000,000	57,300,000	134,600,000	134,600,000	134,600,000	134,600,000	134,600,000	134,600,000	471,100,000
		28	3	497,130,820	774,153,800	77,415,380	1,348,700,000	10,000,000	57,435,000	134,870,000	134,870,000	134,870,000	134,870,000	134,870,000	134,870,000	472,045,000
		29	3	498,089,180	775,646,200	77,564,620	1,351,300,000	10,000,000	57,565,000	135,130,000	135,130,000	135,130,000	135,130,000	135,130,000	135,130,000	472,955,000
		30	3	499,084,400	777,196,000	77,719,600	1,354,000,000	10,000,000	57,700,000	135,400,000	135,400,000	135,400,000	135,400,000	135,400,000	135,400,000	473,900,000
		31	3	500,079,620	778,745,800	77,874,580	1,356,700,000	10,000,000	57,835,000	135,670,000	135,670,000	135,670,000	135,670,000	135,670,000	135,670,000	474,845,000
		32	3	501,074,840	780,295,600	78,029,560	1,359,400,000	10,000,000	57,970,000	135,940,000	135,940,000	135,940,000	135,940,000	135,940,000	135,940,000	475,790,000
		33	3	502,070,060	781,845,400	78,184,540	1,362,100,000	10,000,000	58,105,000	136,210,000	136,210,000	136,210,000	136,210,000	136,210,000	136,210,000	476,735,000
		34	3	503,028,420	783,337,800	78,333,780	1,364,700,000	10,000,000	58,235,000	136,470,000	136,470,000	136,470,000	136,470,000	136,470,000	136,470,000	477,645,000
		35	3	504,023,640	784,887,600	78,488,760	1,367,400,000	10,000,000	58,370,000	136,740,000	136,740,000	136,740,000	136,740,000	136,740,000	136,740,000	478,590,000

136OA	301,302, 303동 4호	36	3	505,018,860	786,437,400	78,643,740	1,370,100,000	10,000,000	58,505,000	137,010,000	137,010,000	137,010,000	137,010,000	137,010,000	137,010,000	479,535,000
		37	3	506,014,080	787,987,200	78,798,720	1,372,800,000	10,000,000	58,640,000	137,280,000	137,280,000	137,280,000	137,280,000	137,280,000	137,280,000	480,480,000
		38	3	507,009,300	789,537,000	78,953,700	1,375,500,000	10,000,000	58,775,000	137,550,000	137,550,000	137,550,000	137,550,000	137,550,000	137,550,000	481,425,000
		39	3	508,004,520	791,086,800	79,108,680	1,378,200,000	10,000,000	58,910,000	137,820,000	137,820,000	137,820,000	137,820,000	137,820,000	137,820,000	482,370,000
		40	3	508,962,880	792,579,200	79,257,920	1,380,800,000	10,000,000	59,040,000	138,080,000	138,080,000	138,080,000	138,080,000	138,080,000	138,080,000	483,280,000
		41	3	509,958,100	794,129,000	79,412,900	1,383,500,000	10,000,000	59,175,000	138,350,000	138,350,000	138,350,000	138,350,000	138,350,000	138,350,000	484,225,000
		42	3	510,953,320	795,678,800	79,567,880	1,386,200,000	10,000,000	59,310,000	138,620,000	138,620,000	138,620,000	138,620,000	138,620,000	138,620,000	485,170,000
		43	3	511,948,540	797,228,600	79,722,860	1,388,900,000	10,000,000	59,445,000	138,890,000	138,890,000	138,890,000	138,890,000	138,890,000	138,890,000	486,115,000
		44	3	512,943,760	798,778,400	79,877,840	1,391,600,000	10,000,000	59,580,000	139,160,000	139,160,000	139,160,000	139,160,000	139,160,000	139,160,000	487,060,000
		45	3	513,902,120	800,270,800	80,027,080	1,394,200,000	10,000,000	59,710,000	139,420,000	139,420,000	139,420,000	139,420,000	139,420,000	139,420,000	487,970,000
		46	3	514,897,340	801,820,600	80,182,060	1,396,900,000	10,000,000	59,845,000	139,690,000	139,690,000	139,690,000	139,690,000	139,690,000	139,690,000	488,915,000
		47	3	515,892,560	803,370,400	80,337,040	1,399,600,000	10,000,000	59,980,000	139,960,000	139,960,000	139,960,000	139,960,000	139,960,000	139,960,000	489,860,000
		48	3	516,887,780	804,920,200	80,492,020	1,402,300,000	10,000,000	60,115,000	140,230,000	140,230,000	140,230,000	140,230,000	140,230,000	140,230,000	490,805,000
		49	3	517,883,000	806,470,000	80,647,000	1,405,000,000	10,000,000	60,250,000	140,500,000	140,500,000	140,500,000	140,500,000	140,500,000	140,500,000	491,750,000
136OB	301,302, 303동 6호	2	3	400,299,600	623,364,000	62,336,400	1,086,000,000	10,000,000	44,300,000	108,600,000	108,600,000	108,600,000	108,600,000	108,600,000	108,600,000	380,100,000
		3	3	414,969,880	646,209,200	64,620,920	1,125,800,000	10,000,000	46,290,000	112,580,000	112,580,000	112,580,000	112,580,000	112,580,000	112,580,000	394,030,000
		4	3	429,677,020	669,111,800	66,911,180	1,165,700,000	10,000,000	48,285,000	116,570,000	116,570,000	116,570,000	116,570,000	116,570,000	116,570,000	407,995,000
		5	3	444,347,300	691,957,000	69,195,700	1,205,500,000	10,000,000	50,275,000	120,550,000	120,550,000	120,550,000	120,550,000	120,550,000	120,550,000	421,925,000
		6	3	450,244,900	701,141,000	70,114,100	1,221,500,000	10,000,000	51,075,000	122,150,000	122,150,000	122,150,000	122,150,000	122,150,000	122,150,000	427,525,000
		7	3	456,105,640	710,267,600	71,026,760	1,237,400,000	10,000,000	51,870,000	123,740,000	123,740,000	123,740,000	123,740,000	123,740,000	123,740,000	433,090,000
		8	3	461,966,380	719,394,200	71,939,420	1,253,300,000	10,000,000	52,665,000	125,330,000	125,330,000	125,330,000	125,330,000	125,330,000	125,330,000	438,655,000
		9	3	467,863,980	728,578,200	72,857,820	1,269,300,000	10,000,000	53,465,000	126,930,000	126,930,000	126,930,000	126,930,000	126,930,000	126,930,000	444,255,000
		10	3	473,724,720	737,704,800	73,770,480	1,285,200,000	10,000,000	54,260,000	128,520,000	128,520,000	128,520,000	128,520,000	128,520,000	128,520,000	449,820,000
		11	3	476,194,340	741,550,600	74,155,060	1,291,900,000	10,000,000	54,595,000	129,190,000	129,190,000	129,190,000	129,190,000	129,190,000	129,190,000	452,165,000
		12	3	478,627,100	745,339,000	74,533,900	1,298,500,000	10,000,000	54,925,000	129,850,000	129,850,000	129,850,000	129,850,000	129,850,000	129,850,000	454,475,000
		13	3	481,059,860	749,127,400	74,912,740	1,305,100,000	10,000,000	55,255,000	130,510,000	130,510,000	130,510,000	130,510,000	130,510,000	130,510,000	456,785,000
		14	3	483,529,480	752,973,200	75,297,320	1,311,800,000	10,000,000	55,590,000	131,180,000	131,180,000	131,180,000	131,180,000	131,180,000	131,180,000	459,130,000
		15	3	485,962,240	756,761,600	75,676,160	1,318,400,000	10,000,000	55,920,000	131,840,000	131,840,000	131,840,000	131,840,000	131,840,000	131,840,000	461,440,000
		16	3	486,478,280	757,565,200	75,756,520	1,319,800,000	10,000,000	55,990,000	131,980,000	131,980,000	131,980,000	131,980,000	131,980,000	131,980,000	461,930,000
		17	3	486,957,460	758,311,400	75,831,140	1,321,100,000	10,000,000	56,055,000	132,110,000	132,110,000	132,110,000	132,110,000	132,110,000	132,110,000	462,385,000
		18	3	487,436,640	759,057,600	75,905,760	1,322,400,000	10,000,000	56,120,000	132,240,000	132,240,000	132,240,000	132,240,000	132,240,000	132,240,000	462,840,000

136OB	301,302, 303동 6호	19	3	487,915,820	759,803,800	75,980,380	1,323,700,000	10,000,000	56,185,000	132,370,000	132,370,000	132,370,000	132,370,000	132,370,000	132,370,000	463,295,000
		21	3	488,653,020	760,951,800	76,095,180	1,325,700,000	10,000,000	56,285,000	132,570,000	132,570,000	132,570,000	132,570,000	132,570,000	132,570,000	463,995,000
		22	3	488,911,040	761,353,600	76,135,360	1,326,400,000	10,000,000	56,320,000	132,640,000	132,640,000	132,640,000	132,640,000	132,640,000	132,640,000	464,240,000
		23	3	489,169,060	761,755,400	76,175,540	1,327,100,000	10,000,000	56,355,000	132,710,000	132,710,000	132,710,000	132,710,000	132,710,000	132,710,000	464,485,000
		24	3	489,390,220	762,099,800	76,209,980	1,327,700,000	10,000,000	56,385,000	132,770,000	132,770,000	132,770,000	132,770,000	132,770,000	132,770,000	464,695,000
		25	3	489,648,240	762,501,600	76,250,160	1,328,400,000	10,000,000	56,420,000	132,840,000	132,840,000	132,840,000	132,840,000	132,840,000	132,840,000	464,940,000
		26	3	490,606,600	763,994,000	76,399,400	1,331,000,000	10,000,000	56,550,000	133,100,000	133,100,000	133,100,000	133,100,000	133,100,000	133,100,000	465,850,000
		27	3	491,601,820	765,543,800	76,554,380	1,333,700,000	10,000,000	56,685,000	133,370,000	133,370,000	133,370,000	133,370,000	133,370,000	133,370,000	466,795,000
		28	3	492,597,040	767,093,600	76,709,360	1,336,400,000	10,000,000	56,820,000	133,640,000	133,640,000	133,640,000	133,640,000	133,640,000	133,640,000	467,740,000
		29	3	493,555,400	768,586,000	76,858,600	1,339,000,000	10,000,000	56,950,000	133,900,000	133,900,000	133,900,000	133,900,000	133,900,000	133,900,000	468,650,000
		30	3	494,550,620	770,135,800	77,013,580	1,341,700,000	10,000,000	57,085,000	134,170,000	134,170,000	134,170,000	134,170,000	134,170,000	134,170,000	469,595,000
		31	3	495,508,980	771,628,200	77,162,820	1,344,300,000	10,000,000	57,215,000	134,430,000	134,430,000	134,430,000	134,430,000	134,430,000	134,430,000	470,505,000
		32	3	496,504,200	773,178,000	77,317,800	1,347,000,000	10,000,000	57,350,000	134,700,000	134,700,000	134,700,000	134,700,000	134,700,000	134,700,000	471,450,000
		33	3	497,462,560	774,670,400	77,467,040	1,349,600,000	10,000,000	57,480,000	134,960,000	134,960,000	134,960,000	134,960,000	134,960,000	134,960,000	472,360,000
		34	3	498,457,780	776,220,200	77,622,020	1,352,300,000	10,000,000	57,615,000	135,230,000	135,230,000	135,230,000	135,230,000	135,230,000	135,230,000	473,305,000
		35	3	499,453,000	777,770,000	77,777,000	1,355,000,000	10,000,000	57,750,000	135,500,000	135,500,000	135,500,000	135,500,000	135,500,000	135,500,000	474,250,000
		36	3	500,411,360	779,262,400	77,926,240	1,357,600,000	10,000,000	57,880,000	135,760,000	135,760,000	135,760,000	135,760,000	135,760,000	135,760,000	475,160,000
		37	3	501,406,580	780,812,200	78,081,220	1,360,300,000	10,000,000	58,015,000	136,030,000	136,030,000	136,030,000	136,030,000	136,030,000	136,030,000	476,105,000
		38	3	502,364,940	782,304,600	78,230,460	1,362,900,000	10,000,000	58,145,000	136,290,000	136,290,000	136,290,000	136,290,000	136,290,000	136,290,000	477,015,000
		39	3	503,360,160	783,854,400	78,385,440	1,365,600,000	10,000,000	58,280,000	136,560,000	136,560,000	136,560,000	136,560,000	136,560,000	136,560,000	477,960,000
		40	3	504,318,520	785,346,800	78,534,680	1,368,200,000	10,000,000	58,410,000	136,820,000	136,820,000	136,820,000	136,820,000	136,820,000	136,820,000	478,870,000
		41	3	505,313,740	786,896,600	78,689,660	1,370,900,000	10,000,000	58,545,000	137,090,000	137,090,000	137,090,000	137,090,000	137,090,000	137,090,000	479,815,000
		42	3	506,308,960	788,446,400	78,844,640	1,373,600,000	10,000,000	58,680,000	137,360,000	137,360,000	137,360,000	137,360,000	137,360,000	137,360,000	480,760,000
		43	3	507,267,320	789,938,800	78,993,880	1,376,200,000	10,000,000	58,810,000	137,620,000	137,620,000	137,620,000	137,620,000	137,620,000	137,620,000	481,670,000
		44	3	508,262,540	791,488,600	79,148,860	1,378,900,000	10,000,000	58,945,000	137,890,000	137,890,000	137,890,000	137,890,000	137,890,000	137,890,000	482,615,000
		45	3	509,220,900	792,981,000	79,298,100	1,381,500,000	10,000,000	59,075,000	138,150,000	138,150,000	138,150,000	138,150,000	138,150,000	138,150,000	483,525,000
		46	3	510,216,120	794,530,800	79,453,080	1,384,200,000	10,000,000	59,210,000	138,420,000	138,420,000	138,420,000	138,420,000	138,420,000	138,420,000	484,470,000
		47	3	511,174,480	796,023,200	79,602,320	1,386,800,000	10,000,000	59,340,000	138,680,000	138,680,000	138,680,000	138,680,000	138,680,000	138,680,000	485,380,000
		48	3	512,169,700	797,573,000	79,757,300	1,389,500,000	10,000,000	59,475,000	138,950,000	138,950,000	138,950,000	138,950,000	138,950,000	138,950,000	486,325,000
		49	3	513,164,920	799,122,800	79,912,280	1,392,200,000	10,000,000	59,610,000	139,220,000	139,220,000	139,220,000	139,220,000	139,220,000	139,220,000	487,270,000

■ **공통 유의사항**

- 청라국제업무단지 청라동 86-1번지(M5BL) 내 본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이 같이 조성된 단지로서 단지 내 일부 부대복리시설은 오피스텔과 공동주택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공급합니다. 부대복리시설의 위치 및 면적 산정과 관계없이 오피스텔과 공동주택 입주자가 공동사용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위치/면적 산정 및 공동 사용등을 사유로 계약의 해지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타입, 향, 층별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실별로 계약면적에 포함된 지하주차장, 건축설비실(기계실, 전기실 등), 관리실(MDF, 방재실 등), 피난안전구역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급계약과 관련한 인지세 및 각종 제세공과금은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실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 계약자의 경우 오피스텔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보행공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 체결 시에 납부하며, 납부방법은 1차, 2차로 나누어 계약금을 납부합니다. 2차 계약금의 경우 납부일자 경과 후 납부시 연체료가 적용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은 상기 지정된 시점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 지정기간 내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잔금의 50%는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사용승인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은 공사감리자의 공정확인서에 의하여 건축공사비(대지 매입비는 제외한다)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2회 이상으로 구분하여 받을 수 있으며, 최초로 납부하는 1차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날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동별로 청약 신청은 불가하며, 타입별 청약 신청만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첨자 발표 시 동·호실이 배정됩니다.)
- 본 사업부지 인근의 개발계획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청 그리고 정부정책 및 해당사업주체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분양 및 계약조건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홍보 제작물 및 분양광고의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분양사업장 1551-6881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부지는 오피스텔과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복합적으로 계획되어 있어 오피스텔과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각 용도별 연면적과 비율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오피스텔 각 형별 대지지분은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 실 당 지분 계산과정에서 남는 오차면적은 일부 실에 포함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향후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공부정리절차, 법령, 행정관청의 규제, 지적 정리사업, 확정측량 및 사업시행 결과 포함) 즉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고,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기타 공용면적 또한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실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II 청약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금회 분양광고일(2026.11.20.)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단,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과 법인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청약 신청은 타입별로 접수하며, 1인당 각 "타입별" 1실(건) 청약이 가능합니다.(각 타입별 1건씩 '최대 8건') 동일인이 동일한 타입에 2실(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한국부동산원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는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고 미계약 물량 발생 시에는「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당사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당첨자선정 및 동호실 결정방법
일 시	2026년 12월 07일(월) 인터넷 청약(09:00 ~ 17:30)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 영업시간까지)	2026년 12월 11일(금) 16:00 이후	2026년 12월 12일(토) ~ 2026년 12월 13일(일) 10:00 ~ 16:00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 추첨에 의해 신청 타입별 무작위 결정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라 아크원 푸르지오 분양사업장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87-1)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또는 카카오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은 PC[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및 스마트폰을 통해 청약가능하며, 청약 전에 청약통장 취급은행(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또는 카카오인증서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청약신청금 납부를 위해 1일(1회)이체한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 및 스마트폰 청약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위 모든 은행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 법인은 인터넷 청약불가하며, 청약통장 취급은행의 지점* 방문을 통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KEB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경남, SC제일, 전북 (제주, 씨티는 지점 방문접수 불가)

■ **청약신청 안내**

구 분	내용
이용안내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보유)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이체한도 확인)
이용방법 및 절차	• **(모든 은행 이용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민간임대'→ 청약신청하기 ② 청약 : 인증서 로그인 → 주택명 및 타입 선택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연락처 등(연락주소, 연락처)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신청 시간 : 09:00 ~ 17:30

※ 청약접수 완료 기준은 17:30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구 분	청약신청금	내용
모든 타입 공통	**1,000,000원** (금일백만원)	• 청약 신청 시 : 청약Home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납부 • 청약 참가은행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함(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은행창구 접수 시 구비서류**(청약통장 취급은행 전 지점)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2">구비사항</th></tr>
<tr><td rowspan="4">일반
공급</td><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청약신청서(청약통장 취급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통(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청약신청자 명의)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td></tr>
<tr><td rowspan="3">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td></tr>
<tr><th>인감증명 방식</th><th>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th></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청약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r><td colspan="2">법인 신청 시</td><td colspan="2">• 청약신청서(청약통장 취급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법인 인감 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신청 시 일반공급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참고
※ 대표이사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 :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td></tr>
</table>

※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KEB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경남, SC제일, 전북 (제주, 씨티는 지점 방문접수 불가)

• 은행창구 청약접수는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청약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구비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신청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아니하고 신청자가 기재(입력)한 내용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신청정보를 착오로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분양사업장에서는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 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관계자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건축물의 층수, 향, 배치구조 등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조망권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신청자는 청약 및 계약 전 당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및 오인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격 및 신청건수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으며,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는 계약체결 시 동일인의 동일타입 내 중복 당첨을 모두 무효처리하오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중복 당첨으로 인한 당첨 탈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제출서류는 금회 분양광고일(2026.11.20.)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사항으로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청구하여 신청자격 유무를 대조, 확인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됩니다. 청약금 환불은 청약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합니다.(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 : 한국부동산원 전산 추첨을 통해 신청 타입 내에서 타입별 동·호실을 무작위로 전산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발표 일시	당첨자 발표 장소
2026년 12월 11일(금) 16:00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청약당첨조회 →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민간임대 당첨조회 메뉴에서 조회 일 기준 최근 5일 이내 당첨발표한 단지에 한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추첨 방법 및 안내사항

동.호실 결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청약신청한 타입 내에서 동·호실은 무작위로 추첨 결정함
기타사항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구 분	환불방법
환불대상	• 당첨자 및 낙첨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인터넷 청약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청약자가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은행(창구)청약자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 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을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자동 환불 됨 •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 받아야 함

-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III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및 장소

계약체결 기간	계약체결 시간	장 소	계약금 납부(계약 체결 시)
2026년 12월 12일(토)~2026년 12월 13일(일)	10:00~16:00	**청라 아크원 푸르지오 분양사업장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87-1)**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

-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 및 분양(공급) 금액 납부계좌**

※ 분양자들께서는 분양대금(중도금 및 잔금 포함)을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분양대금관리자로 명시된 납부계좌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 후 분양대금관리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계약금 1차	**BNK경남은행**	**207-0234-4501-03**	**신한자산신탁(주)**	입금 시 호실과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101동 1001호 당첨자 홍길동 → 101-1001홍길동)
계약금 2차, 중도금, 잔금		**동호실별 생성(공급계약서 명시)**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의 분양(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분양사업장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아래 구비서류 참조)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 및 공급(분양)계약서에 명시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은 인정치 않습니다.
- 예금주 신한자산신탁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의하여 분양 수입금을 관리합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구분	해당 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공통기본서류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분양사업장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본인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상의 공급대금과 추가옵션계약서 상의 공급대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1/2씩 균등 분할 납부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는 우체국, 은행에 방문,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에 접속, 구매 및 출력 - 계약서 기재금액(합계)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계약서 기재금액(합계)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계약서 기재금액(합계)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계약서 기재금액(합계)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계약서 기재금액(합계)이 10억원 초과 : 35만원** [예시] 공급계약서 상의 공급대금 9억9천만원에 해당하는 인지세 15만원을 사업주체 7만 5천원, 계약자 7만 5천원을 각각 납부하고, 추후 추가옵션계약서 상의 공급대금 2천만원이 명시되어 있으면 합산한 금액 10억 1천만원에 대한 인지세 납부 시 기존에 납부한 인지세 7만 5천원에 인지세 10만원 추가 납부(계약자+사업주체 총 35만원)

구분	해당 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본인 계약 시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본인발급용)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발급
법인 계약 시	대표이사 신분증	대표이사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12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제출해야함)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법인 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
제3자 대리인 제출 시 추가사항 ※본인 이외는 모두 3자	위임장	청약자	분양사업장에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오피스텔 계약 위임용(계약자 본인 발급용)
	대리인신분증, 인장	대리인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상기 제증명 서류는 금회 분양광고일(2026.11.20.)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는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는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부동산거래신고서에 서명 또는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계약체결 전 반드시 본 분양광고문 하단 "기타 유의사항"의 단지 내외부 및 설계 등의 유의사항을 확인 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변 환경 및 개발계획 등을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분양사업장,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분명히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단지 내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배치, 구조 및 층·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타입, 층, 호실의 공급금액 및 공급금액별 납부일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지연이자는 공급(분양)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사정으로 부득이 해약하게 되는 경우에도 계약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급(분양)계약서 참조]
- 당 사업지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의 의무가 있으며 공급계약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제반 서류를 사업관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 공급계약서(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시 제출하는 공급계약서와 추가옵션계약서에 합산된 금액에 대한 인지세는 사업주체(시행사)와 계약자가 균등 분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오피스텔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 및「인지세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당해 계약서별로 계약 당사자간에 서명 날인을 마친 때(전매 포함 분양계약 체결 시)에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과세기준(기재금액)은「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와「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입니다.

※「인지세법」제1조,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대상증서	1.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서 및 전매계약서 :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제출하는 계약서)
납부기한	2023.01.01. 시행된「인지세법」제8조 제3항에 따라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방법	1.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결제 → 출력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2. 우체국 및 은행에 방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납부금액

계약서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상의 공급대금과 추가옵션계약서 상의 공급대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균등 분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및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중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인지세의 미납, 과소 납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오니 공급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고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 및 이메일 주소(전자 세금계산서 수령처)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을 이유로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할 수 있으며 위약금을 공제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추후 관리주체 등에 의해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르며, 계약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상기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관리비 및 부대시설 운영비, 기타 서비스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릅니다.
- 기타 계약조건으로 계약자는「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오피스텔은 중도금 대출시 무이자조건으로 융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무이자기간은 대출개시일로부터 사업관계자가 지정하는 최초 입주개시일 전일까지입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은 총 공급금액의 60% 범위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 중도금 대출 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5%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시행자 및 시공사가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대출 제한 등) 및 금융권 사정, 법률의 변경 등에 따라 대출은행을 선정하지 못하거나 계약자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이 제한 또는 불가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본인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에게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안내는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이며 사업주체가 알선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 분양사업장은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대출취급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관계자 및 시공사에 대출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 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공급대금을 조달하여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셔야 하며,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므로 납기일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미납 시 공급(분양)계약서에 표기된 연체율이 적용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에 따라 공급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서 상 계약해제 조항에 따라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자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 본인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중도금 대출 혹은 본인 자금 조달 시에는 별도의 이자지원 적용 불가합니다.
-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법인은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방침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Ⅳ 선택품목 안내

■ 선택품목(유상옵션)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오피스텔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판매일정은 추후 수분양자에게 별도로 공지하고 계약 진행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는 오피스텔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잔금),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분양사업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오피스텔 분양계약과 별개로 시행사 ㈜청라스마트시티가 입주대상자와 계약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및 공급금액

1. 라이프업 스타일링(유상)

① 현관 중문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선택 항목	타입	선택형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기본형(무상)		선택형(유상)				계약금(10%)	잔금(90%)	
현관 중문	105OA/OB /OC/OD 121OA	1안	• 미설치	2안	• 3연동 자동중문	105OA	2,080,000	208,000	1,872,000	-
						105OB	2,090,000	209,000	1,881,000	
						105OC	2,090,000	209,000	1,881,000	
						105OD	2,090,000	209,000	1,881,000	
						121OA	2,180,000	218,000	1,962,000	
	121OB, 136OA/OB			2안	• 원슬라이딩 자동중문+ 시트판넬	121OB	2,230,000	223,000	2,007,000	-
						136OA	2,130,000	213,000	1,917,000	
						136OB	2,130,000	213,000	1,917,000	

- 현관중문 기본형(1안) 시 중문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현관중문 디자인은 본 오피스텔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써 계약 시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현관중문의 구성품 중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차단의 목적에 한해 설치됩니다.
• 현관중문은 본 공사 시 제조사, 센서, 스위치, 도어 프레임의 상세 및 규격, 유리의 형태,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은 자동형으로 현관에서 세대로 진입 시 자동으로 열리며, 세대에서 나갈 시에는 별도의 버튼으로 작동하며 개별적인 속도 조절은 불가능합니다.
• 본 공사 시 센서 및 버튼의 사양 및 규격,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등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공간 상의 이유로 배선기구, 스프링클러, 환기디퓨저, 화재감지기, 조명기구의 배치 및 수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선택 여부에 따라 가구 마감판의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미선택시 별도의 전원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② 벽/바닥 마감재 특화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선택 항목	타입	선택형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기본형(무상)		선택형(유상)				계약금(10%)	잔금(90%)	
벽/바닥 마감재 특화	105OA, 121OA, 136OA /OB	1안	• 거실아트월타일 (600*600) • 실크벽지 • 강마루(섬유판)	2안	• 거실 아트월 세라믹타일 • 안티스크래치 기능성 벽지(천장제외) • 복도 시트판넬 • 복도 1면 간접조명 • 거실/주방 바닥타일(600*1,200, 유럽산) + 침실 광폭 강마루(섬유판)	105OA	7,220,000	722,000	6,498,000	-
						121OA	8,040,000	804,000	7,236,000	
						136OA	8,530,000	853,000	7,677,000	
						136OB	8,550,000	855,000	7,695,000	
				3안	• 거실 아트월 세라믹타일 • 안티스크래치 기능성 벽지(천장제외) • 복도 시트판넬 • 복도 1면 간접조명 • 전실 광폭 강마루(섬유판)	105OA	6,130,000	613,000	5,517,000	-
						121OA	6,820,000	682,000	6,138,000	
						136OA	7,340,000	734,000	6,606,000	
						136OB	7,340,000	734,000	6,606,000	
	105OB, 121OB			2안	• 거실 아트월 세라믹타일 + 복도 아트월 세라믹타일 연장 • 안티스크래치 기능성 벽지(천장제외) • 복도 시트판넬 • 복도 1면 간접조명 • 거실/주방 바닥타일(600*1,200, 유럽산) +침실 광폭 강마루(섬유판)	105OB	7,880,000	788,000	7,092,000	-
						121OB	7,730,000	773,000	6,957,000	
				3안	• 거실 아트월 세라믹타일 + 복도 아트월 세라믹타일 연장 • 안티스크래치 기능성 벽지(천장제외) • 복도 시트판넬 • 복도 1면 간접조명 • 전실 광폭 강마루(섬유판)	105OB	6,880,000	688,000	6,192,000	-
						121OB	6,610,000	661,000	5,949,000	
	105OC /OD			2안	• 거실 아트월 세라믹타일 • 안티스크래치 기능성 벽지(천장제외) • 복도 시트판넬 • 복도 2면 간접조명	105OC	8,560,000	856,000	7,704,000	-
						105OD	8,560,000	856,000	7,704,000	

					• 거실/주방 바닥타일(600*1,200, 유럽산) + 침실 광폭 강마루(섬유판)					
				3안	• 거실 아트월 세라믹타일 • 안티스크래치 기능성 벽지(천장제외) • 복도 시트판넬 • 복도 2면 간접조명 • 전실 광폭 강마루(섬유판)	105OC	7,510,000	751,000	6,759,000	-
						105OD	7,390,000	739,000	6,651,000	

- 본 공사 시 강마루(섬유판), 광폭강마루(섬유판), 바닥타일, 아트월 세라믹 타일의 제조사 및 규격, 색상, 패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벽 마감재 옵션에 따라 마감재 두께에 따른 안목치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별/부위별로 규격, 나누기, 시공 상세 등이 상이합니다.
- 벽/바닥 마감재 옵션 기본형(1안) 선택 시 각 단위실에 비치된 샘플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분양사업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벽/바닥 마감재 옵션 기본형(1안) 선택 시 복도의 시트판넬은 설치되지 않으며, 도배로 마감됩니다.
- 벽/바닥 마감재 특화 선택형(2안, 3안) 선택 시 설치되는 안티스크래치벽지는 도배지가 시공되는 벽 부분에 해당되며, 천장은 제외됩니다.
- 벽/바닥 마감재 옵션 선택형(2안, 3안) 선택 시 복도에 설치되는 간접조명의 규격 및 상세, 형태는 본공사시 접합부 마감품질 향상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벽/바닥 마감재 옵션 선택형(2안, 3안) 선택 시 타입 및 평면 옵션에 따라 마감재의 시공부위가 상이합니다.
- 벽/바닥 마감재 옵션 선택형(2안) 미 선택 시 욕실1 건식 세면대 구간(스마트욕실)의 바닥 타일은 기본형(600*600)으로 시공됩니다.
- 벽/바닥 마감재 옵션 선택형(2안) 미 선택 시 105OC, 121OA, 121OB, 136OA, 136OB의 세탁실 FL±0 구간 바닥 타일은 기본형(600*600)으로 시공됩니다. (세탁기 설치 구간은 300*300 바닥타일 적용)

③ 조명 특화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선택 항목	타입	선택형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기본형(무상)		선택형(유상)				계약금(10%)	잔금(90%)	
조명 특화	전타입	1안	• 기본 조명 기구 • 스마트 스위치 일반형 (거실, 주방, 침실)	2안	• 특화 조명 기구 - 거실 라인 간접등 + 침실 1,2,3 엣지등 • 스마트스위치 고급형 (주방포함) • 거실 실링팬	105OA	2,230,000	223,000	2,007,000	-
						105OB	2,830,000	283,000	2,547,000	
						105OC	2,230,000	223,000	2,007,000	
						105OD	2,160,000	216,000	1,944,000	
						121OA	2,610,000	261,000	2,349,000	
						121OB	2,830,000	283,000	2,547,000	
						136OA	2,830,000	283,000	2,547,000	
						136OB	2,900,000	290,000	2,610,000	

- 조명특화옵션 선택에 따라 등기구 위치 및 수량 등이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분양사업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업장에 설치된 조명특화 조명기구의 외관 디자인 및 Spec, 설치수량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기본조명으로 설치되오니 분양사업장 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 조명특화옵션 선택 시 거실, 침실등의 디밍/색온도 조절 기능은 하부면을 비추는 조명부분만 제공됩니다.
- 조명특화옵션 선택시에만 디밍과 색온도 제어가 가능한 풀터치 고급형 스마트스위치가 제공됩니다. 미선택시 조명ON/OFF 기능만 가능한 일반 스마트스위치가 제공됩니다. 스마트스위치의 설치 위치에 따라 스마트스위치의 기능 및 형태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분양사업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타입 주방 스마트스위치 고급형에는 디밍/색온도 조절 기능이 구현되지 않으며 평면옵션 선택에 따라 스마트스위치가 미적용 될 수 있습니다.
- 조명특화옵션 선택형(2안) 선택 시 타입에 따라 시공부위가 상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급형 스마트 스위치의 음성인식 기능은 침실에 한해서 구현 가능합니다.
- 분양사업장 개별호실 내 안내되어 있는 일반형 스마트스위치의 POP 이미지는 샘플 이미지이며, 공간 및 조명 회로에 따라 버튼 수량은 상이합니다.
- 고급형스마트스위치(침실) 음성인식기능은 마이크와의 거리 및 방향에 따라 음성인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조명 특화 옵션은 품목별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 거실 실링팬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 거실 실링팬은 조명이 없는 형태로 무선 리모콘을 통해 제어되며, 월패드, 홈네트워크 및 별도 스위치와 연동되지 않습니다.

④ 발코니 특화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선택 항목	타입	선택형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기본형(무상)		선택형(유상)				계약금(10%)	잔금(90%)	
발코니 특화	105OA/ OC/OD 121OB	1안	• 기본형 바닥 타일 (300*300) • 기본 조명기구	2안	• 대형 바닥타일(600*1,200, 유럽산 / 침실1 전면발코니 제외) • 특화 조명기구 • 전동 빨래건조대 (1개소 / 침실1 전면 발코니)	105OA	550,000	55,000	495,000	-
						105OC	880,000	88,000	792,000	
						105OD	860,000	86,000	774,000	
						121OB	800,000	80,000	720,000	
	105OB 121OA 136OA/ OB			2안	• 대형 바닥타일(600*1,200, 유럽산 / 침실1 전면발코니 제외) • 특화 조명기구 • 칸막이 벽체 • 전동 빨래건조대 (1개소 / 침실1 전면 발코니)	105OB	1,520,000	152,000	1,368,000	-
						121OA	1,190,000	119,000	1,071,000	
						136OA	1,520,000	152,000	1,368,000	
						136OB	1,590,000	159,000	1,431,000	

- 발코니 특화 옵션 기본형(1안) 선택 시 바닥 마감은 분양사업장에 비치된 샘플로 시공되며, 본공사 시 타일의 제조사, 규격, 색상, 패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특화 옵션 선택형(2안) 선택 시 발코니 바닥 단차는 기본형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자세한 내용은 분양사업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특화 옵션 선택형(2안) 선택 시 시공되는 바닥 타일의 제조사 및 규격, 색상, 패턴 및 타일 나누기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특화 옵션 선택형(2안) 선택 시 시공되는 칸막이 벽체의 위치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등기구의 위치 및 수량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옵션 선택과 무관하게 발코니 바닥은 실내 바닥과 단차가 있으며, 분양사업장 내 발코니 공간은 디스플레이 품목 설치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시공 시에는 발코니 바닥 부분의 단차(실내 바닥에서 –50mm)는 유지되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바닥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라이프업 수납(유상)

① 현관 수납 특화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선택 항목	타입	선택형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기본형(무상)		선택형(유상)				계약금(10%)	잔금(90%)	
현관 수납 특화	105OA/ OB/OC/ OD	1안	• 신발장 : 기본형 • 현관 창고 : 여닫이 도어 + 폴대형 시스템선반 • 현관바닥 : 타일(600*600)	2안	• 신발장 특화 : 오픈장(조명포함)+ 디자인선반(조명포함)+신발장 하부조명 • 현관 창고 특화 : 폴딩도어+수납장 (조명포함) • 현관바닥 : 대형타일(600*1,200)	105OA	2,140,000	214,000	1,926,000	-
						105OB	3,250,000	325,000	2,925,000	
						105OC	2,570,000	257,000	2,313,000	
						105OD	2,230,000	223,000	2,007,000	
	121OA/ OB 136OA/ OB			2안	• 신발장 특화 : 디자인 수납장(유리도어/ 조명포함)+디자인 선반(조명포함)+ 신발장 하부조명 • 현관 창고 특화 : 폴딩도어+수납장 (조명포함) • 현관바닥 : 대형타일(600*1,200)	121OA	3,350,000	335,000	3,015,000	-
						121OB	3,210,000	321,000	2,889,000	
						136OA	2,700,000	270,000	2,430,000	
						136OB	4,680,000	468,000	4,212,000	

- 현관 수납 특화 옵션은 타입에 따라 시공부위 및 규격, 특화사항이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분양사업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수납 특화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수납장의 구성 및 가구도어 열림방향 등이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분양사업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 옵션 선택 시, 조명에 대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지만, 유상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세대는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관 수납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현관 창고 내 폴대형 시스템 선반이 설치되며, 현관창고 내부는 도배로 마감됩니다.
• 현관 수납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각 세대에 비치된 샘플 및 이미지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분양사업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수납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조명 선반의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신발장 및 수납장 상단에 설치되며, 본공사 시 위치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수납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디자인선반(조명) 설치에 따라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공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수납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오픈장 및 디자인 수납장 및 현관창고 수납장 조명 스위치의 설치 위치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팬트리 수납 특화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선택 항목	타입	선택형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기본형(무상)		선택형(유상)				계약금(10%)	잔금(90%)	
팬트리 수납 특화	105OA	1안	• 여닫이 도어 + 폴대형 시스템 선반	2안	• 유리 슬라이딩 도어 + 가구판넬 + 수납장	105OA	2,620,000	262,000	2,358,000	-
	105OB/ OC/OD 121OB			2안	• 여닫이 도어+수납장(조명포함)	105OB	2,640,000	264,000	2,376,000	-
						105OC	1,990,000	199,000	1,791,000	
						105OD	1,770,000	177,000	1,593,000	
						121OB	1,610,000	161,000	1,449,000	
	121OA			2안	• 유리 슬라이딩 도어 + 수납장	121OA	1,990,000	199,000	1,791,000	

• 팬트리 특화 옵션은 타입에 따라 시공부위 및 규격, 특화사항이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분양사업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팬트리 수납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팬트리 내 폴대형 시스템선반이 설치되며, 내부 벽체는 도배로 마감됩니다.
• 105OB, 105OC, 105OD, 121OB 타입 팬트리 수납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조명 선반의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수납장 상단에 설치되며, 본공사 시 위치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5OB, 105OC, 105OD, 121OB 타입 팬트리 수납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수납장 조명 스위치의 설치 위치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5OA, 121OA 타입 팬트리 수납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설치되는 유리 슬라이딩도어 구성품 중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습니다.
• 105OA, 121OA 타입 팬트리 수납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설치되는 유리 슬라이딩도어는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차단의 목적에 한해 설치됩니다.
• 105OA, 121OA 타입 팬트리 수납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설치되는 유리 슬라이딩도어는 본 공사 시 제조사 및 규격, 하드웨어 및 도어 프레임의 상세 및 규격, 유리의 형태,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드레스룸 특화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선택 항목	타입	선택형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기본형(무상)		선택형(유상)				계약금(10%)	잔금(90%)	
드레스룸 특화	105OA /OB/O C/OD 121OA	1안	• 포켓도어 + 폴대형 시스템 선반	2안	• 3연동 슬라이딩 도어 • 디자인 시스템선반(조명포함) • 천장형 제습기	105OA	4,620,000	462,000	4,158,000	-
						105OB	4,050,000	405,000	3,645,000	
						105OC	4,120,000	412,000	3,708,000	
						105OD	4,110,000	411,000	3,699,000	
						121OA	3,880,000	388,000	3,492,000	
	121OB			2안	• 유리 슬라이딩 도어 • 디자인 시스템선반(조명포함) • 천장형 제습기	121OB	4,220,000	422,000	3,798,000	-

	136OA /OB			2안	• 유리 슬라이딩 도어 • 디자인 시스템선반(조명포함) • 디자인 붙박이장(조명포함) • 조명특화 • 천장형 제습기	136OA	4,290,000	429,000	3,861,000	-
						136OB	3,330,000	333,000	2,997,000	
드레스룸 제습기	전타입	1안	• 미설치	2안	• 천장형 제습기	전타입	830,000	83,000	747,000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 미선택시 별도 선택 가능

- 드레스룸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포켓도어 및 폴대형 시스템선반이 설치됩니다.
- 드레스룸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드레스룸 내부는 도배지로 마감되며, 자세한 내용은 분양사업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타입별로 선반의 규격 및 위치와 구성이 상이하며, 설치 위치는 분양사업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3연동 슬라이딩도어/유리 슬라이딩도어 (타입별 상이)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분양사업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옵션 선택형(2안) 선택 시 드레스룸 내부 벽체는 판넬로 마감되며, 타입별로 적용 부위가 상이합니다.
-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디자인 시스템 선반 유리조명 선반은 전원 연결로 인해 고정 설치되어 이동할 수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분양사업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설치되는 3연동/유리 슬라이딩도어(타입별 상이) 구성품 중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설치되는 3연동/유리 슬라이딩도어(타입별 상이)는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차단의 목적에 한해 설치됩니다.
-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설치되는 3연동/유리 슬라이딩도어(타입별 상이)는 본 공사 시 제조사 및 규격, 하드웨어 및 도어 프레임의 상세 및 규격, 유리의 형태,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조명 선반의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하단에 설치되며, 본공사 시 점검구의 규격 및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선택 시 조명기구 Spec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분양사업장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선택 시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의 스펙, 위치, 수량,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천장형 제습기가 포함됩니다.(가야/KY-1005P)
- 천장형 제습기는 무선 리모콘으로 동작하며, 사용시 작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제습기는 자동으로 배수되는 타입으로, 배수배관이 매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제습기는 타입별/옵션별로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면적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및 천장형 제습기 옵션 미선택 시, 별도의 전원이 설치 및 시공되지 않습니다.
- 디자인 시스템 선반(조명), 디자인 붙박이장은 조명기구 유지보수를 위해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공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될 수 있으며, 조명기구는 본 공사 시 규격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36OA, 136OB 타입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형(2안) 선택 시 조명 선반의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수납장 상단에 설치되며, 본공사 시 위치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36OA, 136OB 타입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형(2안) 선택 시 디자인 붙박이장 조명 스위치의 설치 위치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디자인 시스템 선반의 제조사, 규격,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④침실 2/3 수납 특화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선택 항목	타입	선택형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기본형(무상)		선택형(유상)				계약금(10%)	잔금(90%)	
침실2/3 매립형 붙박이장	105OA/OB/OC/OD 121OA/OB	1안	• 미설치	2안	• 침실 2/3 매립형 붙박이장 (2개소)	105OA	2,080,000	208,000	1,872,000	-
						105OB	2,080,000	208,000	1,872,000	
						105OC	2,080,000	208,000	1,872,000	
						105OD	2,080,000	208,000	1,872,000	
						121OA	2,200,000	220,000	1,980,000	
						121OB	2,490,000	249,000	2,241,000	
서브마스터룸 특화	136OA/OB	1안	• 침실3 드레스룸 도어 공틀	2안	• 침실3 확장(3,400 → 3,600) • 침실3 드레스룸 포켓도어 + 디자인 시스템선반(조명 포함) + 천장형 제습기	136OA	3,090,000	309,000	2,781,000	서브마스터룸 특화(유상 2안) 선택 시 침실2,3 내경 변경 (침실2: 3,400→3,200 / 침실3: 3,400→3,600)
						136OB	4,500,000	450,000	4,050,000	

- 평형 및 타입별로 붙박이장의 길이 및 규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침실2,3 매립형 붙박이장 선택형(2안) 선택 시 침실2 및 침실3의 가로폭 사이즈가 줄어들며, 자세한 내용은 분양사업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침실2,3 매립형 붙박이장 선택형(2안) 선택 시 설치되는 가구의 크기는 각 평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규격, 상세, 하드웨어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2,3 매립형 붙박이장 선택에 따라, 기본제공되는 냉매박스 및 콘센트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36OA, 136OB 타입 서브마스터룸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침실2 및 침실3의 내경이 변경되며, 자세한 내용은 분양사업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36OA, 136OB 타입 서브마스터룸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포켓도어 및 시스템선반은 설치되지 않으며, 도어 공틀이 설치되며 내부 도배로 마감됩니다.
- 136OA, 136OB 타입 서브마스터룸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드레스룸 내부 벽체는 판넬로 마감되며, 타입별로 적용 부위가 상이합니다.
- 136OA, 136OB 타입 서브마스터룸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디자인 시스템 선반 유리조명 선반은 전원 연결로 인해 고정 설치되어 이동할 수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분양사업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36OA, 136OB 타입 서브마스터룸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조명 선반의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하단에 설치되며, 본공사 시 점검구의 규격 및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36OA, 136OB 타입 서브마스터룸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조명기구 Spec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분양사업장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136OA, 136OB 타입 서브마스터룸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의 스펙, 위치, 수량,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36OA, 136OB 타입 서브마스터룸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천장형 제습기가 포함됩니다.(가야/KY-1005P)
- 천장형 제습기는 무선 리모콘으로 동작하며, 사용시 작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제습기는 자동으로 배수되는 타입으로, 배수배관이 매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제습기는 타입별/옵션별로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면적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36OA, 136OB 타입 서브마스터룸 특화 선택형(2안) 미 선택 시, 별도의 천장형 제습기 전원이 설치 및 시공되지 않습니다.
- 디자인 시스템 선반 유리조명 선반은 전원 연결로 인해 고정 설치되어 이동할 수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분양사업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⑤ 세탁실 수납 특화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선택 항목	타입	선택형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기본형(무상)		선택형(유상)				계약금(10%)	잔금(90%)	
세탁실 수납 특화	105OC 121OA/OB 136OA/OB	1안	• 미설치	2안	• 세탁실 수납장	105OC	610,000	61,000	549,000	-
						121OA	640,000	64,000	576,000	
						121OB	640,000	64,000	576,000	
						136OA	720,000	72,000	648,000	
						136OB	680,000	68,000	612,000	

- 세탁실 수납장 가구의 색상, 규격, 하드웨어 등 상세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탁실 수납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의 스펙, 위치, 수량,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라이프업 키친(유상)

① 주방 특화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선택 항목	타입	선택형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기본형(무상)		선택형(유상)				계약금(10%)	잔금(90%)	
주방 특화	105OA /OC/O D	1안	• 기본형 주방가구 + 기본형 수저분리함 + 걸이형 액세서리 • 벽 : 타일(300*600) • 상판 : 인조대리석(MMA) • 국산 싱크수전+와이드 싱크볼 • 기본 조명기구	2안	• 벽/상판 : 세라믹 타일	105OA	1,730,000	173,000	1,557,000	-
						105OC	1,730,000	173,000	1,557,000	
						105OD	1,000,000	100,000	900,000	
				3안	• 주방가구 특화 : 주방가구 연장 (유리도어 하부장) + 고급형 수저 분리함 + 플랩 상부장 + 미드웨이 액세서리 + 상부장 하부조명 • 벽,상판 : 세라믹 타일 • 외산 싱크수전+와이드 절곡형 싱크볼 • 특화 조명기구 : 주방 슬림라인등	105OA	6,670,000	667,000	6,003,000	
						105OC	6,420,000	642,000	5,778,000	
						105OD	4,370,000	437,000	3,933,000	
	105OB	1안	• 기본형 주방가구 + 기본형 수저분리함 • 상판 : 인조대리석(MMA) • 국산 싱크수전+와이드 싱크볼 • 기본 조명기구	2안	• 상판 : 세라믹 타일	105OB	380,000	38,000	342,000	-
				3안	• 주방가구 특화 : 유리도어 하부장 + 고급형 수저분리함 • 상판 : 세라믹 타일 • 외산 싱크수전+와이드 절곡형 싱크볼 • 특화 조명기구 : 주방 슬림라인등 + 원통형 식탁 직부등	105OB	2,530,000	253,000	2,277,000	
	121OA	1안	• 기본형 주방가구 + 기본형 수저분리함 + 걸이형 액세서리 + 키큰장 • 벽 : 타일(300*600) • 상판 : 인조대리석(MMA) • 국산 싱크수전 + 와이드 싱크볼 • 기본 조명기구	2안	• 벽/상판 : 세라믹 타일	121OA	1,310,000	131,000	1,179,000	-
				3안	• 주방가구 특화 : 주방가구 연장 (카운터형 아일랜드) + 하부장 마감특화 + 고급형 수저분리함 + 홈바 장식장 + 플랩 상부장 + 미드웨이 액세서리 + 상부장 하부조명 • 벽,상판 : 세라믹 타일 • 외산 싱크수전 + 와이드 절곡형 싱크볼 • 특화 조명기구 : 주방 슬림라인등	121OA	5,540,000	554,000	4,986,000	
	121OB	1안	• 기본형 주방가구 + 기본형 수저분리함 • 상판 : 인조대리석(MMA)	2안	• 상판 : 세라믹 타일	121OB	420,000	42,000	378,000	-
				3안	• 주방가구 특화 : 카운터형 아일랜드 + 하부장 마감특화 + 고급형 수저분리함 • 상판 : 세라믹 타일	121OB	2,620,000	262,000	2,358,000	

			• 국산 싱크수전 + 와이드 싱크볼 • 기본 조명기구		• 외산 싱크수전 + 와이드 절곡형 싱크볼 • 특화 조명기구 : 주방 슬림라인등 + 원통형 식탁 직부등					
	136OA /OB	1안	• 기본형 주방가구 + 기본형 수저분리함 + 복도 수납장 • 상판 : 인조대리석(MMA) • 국산 싱크수전 + 와이드 싱크볼 • 기본 조명기구	2안	• 상판 : 세라믹 타일	136OA	430,000	43,000	387,000	-
						136OB	430,000	43,000	387,000	
				3안	• 주방가구 특화 : 대형 아일랜드 + 하부장 마감특화 + 고급형 수저분리함 + 유리도어 장식장 • 상판 : 세라믹 타일 • 외산 싱크수전+와이드 절곡형 싱크볼 • 특화 조명기구 : 주방 슬림라인등 + 원통형 식탁 직부등	136OA	4,510,000	451,000	4,059,000	
						136OB	4,520,000	452,000	4,068,000	

- 분양사업장에 설치된 조명기구의 외관 디자인 및 Spec, 설치수량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분양사업장 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 주방 특화 옵션은 품목별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 인조대리석(MMA) 및 세라믹타일은 재료의 물성에 따라 이음매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패턴 및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특화 옵션은 타입에 따라 시공부위 및 규격, 특화사항이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분양사업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각 단위실에 비치된 샘플 및 이미지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분양사업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벽/상판 및 상판(타입별 상이) 외의 품목은 기본형(1안)과 동일하게 설치됩니다.
- 주방특화 선택형(2안,3안) 선택에 따라 마감재 적용 부위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분양사업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5OA, 105OC, 105OD, 121OA 타입 주방특화 선택형(3안) 선택 시 설치되는 상부장 하부조명은 가구 시공성 향상 및 전기/설비 간섭구간으로 인해 본공사시 규격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별로 설치 위치 및 길이가 상이합니다.
- 105OA, 105OC, 105OD, 121OA 타입 주방 특화 선택형(3안) 선택 시 설치되는 상부장 하부조명은 유지보수를 위해 상부에 점검구가 추가됩니다.
- 105OA, 105OC, 105OD, 121OA 타입 주방 특화 선택형(3안) 선택 시 설치되는 미드웨이 ACC는 타입별로 레이아웃, 규격, 설치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특화 기본형(1안) 및 선택형(2안) 선택 시 기본 싱크수전 (진명홈바스 / JMK 7200WS)가 설치됩니다.
- 주방특화 선택형(3안) 선택 시 외산 싱크수전 (한스그로헤 / #72800) 제품이 설치됩니다.
- 주방특화 선택형(3안) 선택 시 별도의 센서식 싱크 절수기가 설치됩니다.
- 타입별로 주방 쪽 식탁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식탁등이 설치되며, 주방특화 옵션과 조명특화 옵션에 따른 조명 변경 여부가 상이합니다.
- 주방 스마트스위치(일반형 및 고급형)에는 디밍/색온도 조절 기능이 구현되지 않으며 평면옵션 선택에 따라 스마트스위치가 미적용 될 수 있습니다.
- 주방특화 옵션 선택에 따라 스마트 스위치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라이프업 스타일링-조명 특화 선택에 따라 스마트 스위치(일반형/고급형)변경이 가능합니다.
- 105OA, 105OC, 105OD, 121OA 타입 주방특화 선택형(3안) 선택 시 주방 상부장에 주방상부장 하부조명의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디테일 및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특화 선택형(3안) 선택 시 설치되는 유리도어 하부장, 유리도어 장식장(타입별 상이) 등의 가구 조명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디테일 및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 배선기구, 전자식 스위치, 환기디퓨저의 위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선택 항목	타입	선택형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기본형(무상)		선택형(유상)				계약금(10%)	잔금(90%)	
주방 냉장고,	105OA/ OC	1안	• 냉장고 상부장 + 김치냉장고 상부장	2안	• 3컬럼 패키지 냉장고 + 상부장 + 키큰장	105OA	5,560,000	556,000	5,004,000	-
						105OC	5,560,000	556,000	5,004,000	-

냉장고장				3안	• 3컬럼 패키지 냉장고 + 상부장 + 홈바 장식장	105OA	5,963,000	596,300	5,366,700	-
						105OC	5,963,000	596,300	5,366,700	-
	105OB/OD	1안	• 냉장고 상부장 + 김치냉장고 상부장 + 키큰장	2안	• 3컬럼 패키지 냉장고 + 상부장 + 키큰장	105OB	5,430,000	543,000	4,887,000	-
						105OD	5,599,000	559,900	5,039,100	
				3안	• 3컬럼 패키지 냉장고 + 상부장 + 홈바 장식장	105OB	5,937,000	593,700	5,343,300	
						105OD	5,950,000	595,000	5,355,000	-
	121OA	1안	• 냉장고 상부장 + 김치냉장고 상부장 + 키큰장	2안	• 3컬럼 패키지 냉장고 + 상부장 + 키큰장	121OA	5,547,000	554,700	4,992,300	-
				3안	• 3컬럼 패키지 냉장고 + 상부장 + 키큰장 + 유리도어 장식장	121OA	6,483,000	648,300	5,834,700	
	121OB	1안	• 냉장고 상부장 + 김치냉장고 상부장 + 키큰장	2안	• 3컬럼 패키지 냉장고 + 상부장 + 키큰장	121OB	5,521,000	552,100	4,968,900	-
				3안	• 3컬럼 패키지 냉장고 + 상부장 + 키큰장 + 홈바 장식장	121OB	6,028,000	602,800	5,425,200	
	136OA/OB	1안	• 냉장고 상부장 + 김치냉장고 상부장 + 키큰장	2안	• 3컬럼 패키지 냉장고 + 상부장 + 키큰장	136OA	5,573,000	557,300	5,015,700	-
						136OB	5,573,000	557,300	5,015,700	
				3안	• 3컬럼 패키지 냉장고 + 상부장 + 키큰장 + 히든홈바(슬라이드 어웨이 도어 + 홈바 장식장)	136OA	8,238,000	823,800	7,414,200	
						136OB	8,238,000	823,800	7,414,200	

- 주방 냉장고장 옵션 선택에 따라 수납장의 구성이 변경되며, 형태 및 규격은 타입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분양사업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컬럼 패키지 냉장고는 냉동고(RZ34C7865AP), 냉장고(RR40C7995AP), 김치냉장고(RQ34C79(8)45AP)로 구성되며, 각 냉장고의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 3컬럼 패키지 냉장고의 전면 패널은 글라스 재질의 새틴화이트(105OA/OB/OC/OD, 136OA/OB) 및 새틴베이지(121OA/OB) 색상으로 설치되며 패널 색상의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 3컬럼 패키지 냉장고는 문열림 방향은 분양사업장 기준으로 설치되며, 임의로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주방 냉장고장은 타입별로 크기가 상이하며, 자세한 사항은 분양사업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라이프업 바스(유상)

① 욕실특화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선택 항목	타입	선택형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기본형(무상)		선택형(유상)				계약금(10%)	잔금(90%)	
욕실 특화	105OA/OB/OC/OD	1안	• 벽 : 타일(300*600) • 바닥 : 타일(300*300) • 접합유리 샤워부스 (욕실1) • 욕조 수납형 에이프런 (욕실2) • 국산 수전	2안	• 벽 : 유럽산 타일(600*1,200) • 바닥 : 유럽산 타일(300*600) • 샤워부스 프레임 색상특화 (욕실1) • 욕조 측면 타일 마감 (욕실2) • 고급형 수전	105OA	6,220,000	622,000	5,598,000	-
						105OB	6,220,000	622,000	5,598,000	
						105OC	6,220,000	622,000	5,598,000	-

					• 고급형 도기(세면대, 비데일체형양변기) • 욕실 액세서리류 색상특화	105OD	6,220,000	622,000	5,598,000	
			• 국산 도기(세면대, 양변기), 전자비데(욕실2) • 욕실 기본 액세서리	3안	• 벽 : 유럽산 타일(600*1,200) • 바닥 : 유럽산 타일(300*600) • 샤워부스 프레임 색상특화 (욕실1) • 욕조 측면 타일 마감 (욕실2) • 외산 수전 • 외산 도기(세면대, 비데일체형양변기) • 욕실 액세서리류 색상특화	105OA	8,780,000	878,000	7,902,000	-
						105OB	8,780,000	878,000	7,902,000	
						105OC	8,780,000	878,000	7,902,000	-
						105OD	8,780,000	878,000	7,902,000	
욕실 특화	121OA/ OB	1안	• 벽 : 타일(300*600) • 바닥 : 타일(300*300) • 접합유리 샤워부스 (욕실1,2) • 욕조 수납형 에이프런 (욕실2) • 국산 수전 • 국산 도기(세면대, 양변기), 전자비데(욕실2) • 욕실 기본 액세서리	2안	• 벽 : 유럽산 타일(600*1,200) • 바닥 : 유럽산 타일(300*600) • 샤워부스 프레임 색상특화 (욕실1,2) • 욕조 측면 타일 마감 (욕실2) • 고급형 수전 • 고급형 도기(세면대, 비데일체형양변기) • 욕실 액세서리류 색상특화	121OA	6,760,000	676,000	6,084,000	-
						121OB	6,950,000	695,000	6,255,000	
				3안	• 벽 : 유럽산 타일(600*1,200) • 바닥 : 유럽산 타일(300*600) • 샤워부스 프레임 색상특화 (욕실1,2) • 욕조 측면 타일 마감 (욕실2) • 외산 수전 • 외산 도기(세면대, 비데일체형양변기) • 욕실 액세서리류 색상특화	121OA	10,470,000	1,047,000	9,423,000	
						121OB	10,660,000	1,066,000	9,594,000	
욕실 특화	136OA/ OB	1안	• 벽 : 타일(300*600) • 바닥 : 타일(300*300) • 접합유리 샤워부스 (욕실1,2,3) • 욕조 수납형 에이프런 (욕실2) • 국산 수전 • 국산 도기(세면대, 양변기), 전자비데(욕실2) • 욕실 기본 액세서리	2안	• 벽 : 유럽산 타일(600*1,200) • 바닥 : 유럽산 타일(300*600) • 샤워부스 프레임 색상특화 (욕실1,2,3) • 욕조 측면 타일 마감 (욕실2) • 고급형 수전 • 고급형 도기(세면대, 비데일체형양변기) • 욕실 액세서리류 색상특화	136OA	10,010,000	1,001,000	9,009,000	-
						136OB	10,300,000	1,030,000	9,270,000	
				3안	• 벽 : 유럽산 타일(600*1,200) • 바닥 : 유럽산 타일(300*600) • 샤워부스 프레임 색상특화 (욕실1,2,3) • 욕조 측면 타일 마감 (욕실2) • 외산 수전 • 외산 도기(세면대, 비데일체형양변기) • 욕실 액세서리류 색상특화	136OA	15,140,000	1,514,000	13,626,000	
						136OB	15,430,000	1,543,000	13,887,000	
스마트 욕실	105OA/ OB	1안	• 욕실1 : 스마트욕실 도어 공틀	2안	• 욕실1 : 스마트욕실 포켓도어	105OA	1,350,000	135,000	1,215,000	-

도어	121OA/OB 136OA/OB					105OB	1,350,000	135,000	1,215,000	
						121OA	1,350,000	135,000	1,215,000	
						121OB	1,350,000	135,000	1,215,000	
						136OA	1,350,000	135,000	1,215,000	
						136OB	1,350,000	135,000	1,215,000	
	105OC/OD			2안	• 욕실1 : 스마트욕실 여닫이 도어	105OC	250,000	25,000	225,000	-
						105OD	250,000	25,000	225,000	
욕실 복합 환풍기	105OA/OB/OC/OD 121OA/OB	1안	• 미설치	2안	• 욕실 복합 환풍기 (2개소/욕실1,2)	105OA	1,300,000	130,000	1,170,000	-
						105OB	1,300,000	130,000	1,170,000	
						105OC	1,300,000	130,000	1,170,000	
						105OD	1,300,000	130,000	1,170,000	
						121OA	1,300,000	130,000	1,170,000	
						121OB	1,300,000	130,000	1,170,000	
	136OA/OB			2안	• 욕실 복합 환풍기 (3개소/욕실1,2,3)	136OA	1,950,000	195,000	1,755,000	-
						136OB	1,950,000	195,000	1,755,000	

• 욕실 특화 옵션은 품목별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 욕실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단위실에 비치된 샘플 및 이미지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분양사업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전자비데는 욕실2 1개소에 설치됩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벽/바닥 타일의 나누기 및 상세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바닥 배수구의 위치, 크기,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코너선반의 형태는 욕실 특화 선택형(2안)과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분양사업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 특화 선택형(2안 및 3안) 선택 시 외산·국산 타일 규격이 상이하며, 타일 나누기 및 줄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특화 선택형(2안 및 3안) 선택 시 욕조 수납형 에이프런은 타일 마감으로 변경되어 수납공간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분양사업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1은 본 공사시 세면대 배수관로 설치를 위해 세면대 하부장 뒷판과 지판이 미설치 되며 전면 가림판에 의해 수납공간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21OA,OB / 136OA,OB 타입 욕실2는 본 공사시 세면대 배수관로 설치를 위해 세면대 하부장 뒷판과 지판이 미설치 되며 전면 가림판에 의해 수납공간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욕실 벽/바닥 타일의 제조사, 규격, 패턴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욕실장, 샤워부스 등 욕실가구의 색상, 규격, 형태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 욕실 도어 기본형(1안) 선택 시 스마트욕실(건식 세면대 공간) 도어는 설치되지 않으며, 공틀로 시공됩니다. 건식 세면대 공간과 습식 욕실 사이에는 여닫이 도어가 기본 설치됩니다.
• 스마트 욕실 도어 선택형(2안) 선택 시 타입별 레이아웃에 따라 건식 세면대 구간에 포켓도어(105OA,OB/121OA,OB/136OA,OB) / 여닫이도어(105OC,OD)가 설치되며, 본 공사 시 도어의 손잡이, 포켓도어 레일 등 하드웨어 스펙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복합환풍기 선택형(2안)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일반 욕실배기팬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복합환풍기는 무선 리모콘으로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 욕실복합환풍기의 설치위치는 타입에 따라 상이하며, 동일 타입인 경우에도 천장 내 설비 위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빌트인가전 옵션(유상)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타입	설치위치	제조사	모델명	내용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 (10%)	잔금 (90%)	
전기쿡탑(인덕션3구)	전타입	주방	디트리쉬	DPI-4320WK	고급형	1,750,000	175,000	1,575,000	-
전기오븐			엘지전자	MZ385EBT1	일반형	450,000	45,000	405,000	-
				MZL94HBT	고급형	1,000,000	100,000	900,000	
식기세척기			삼성전자	DW80F73Y1UEW	일반형	1,100,000	110,000	990,000	-
				DW80F75K1UAP	고급형	1,400,000	140,000	1,260,000	
빌트인 정수기			쿠쿠홈시스	CP-AAS100BDS	화이트	1,100,000	110,000	990,000	-
				CP-AAS100BW	실버	1,100,000	110,000	990,000	-
시스템청정환기	전타입	거실, 침실1	삼성전자		2개소	1,980,000	198,000	1,782,000	-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4개소	3,940,000	394,000	3,546,000	-

- 전기쿡탑(인덕션3구) 고급형 옵션품목 미선택시에는 인덕션3구 일반형이 설치됩니다. (CIR-M304FB / 쿠쿠전자)
- 기본 제공되는 전기쿡탑(인덕션 3구)은 3.4kW 전력제어 모델이며, 추가 전기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유상으로 제공되는 전기쿡탑(고급형)은 7.4kW 전력제어 모델이며, 추가 전기공사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옵션 미선택 시 수납장이 설치됩니다.
- 식기세척기(선택1) 패널은 에센셜 화이트로 설치되며 패널 색상의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 식기세척기(선택2) 패널은 새틴화이트(105OA/OB/OC/OD, 136OA/OB) 및 새틴베이지(121OA/OB) 패널이 설치되며 패널 색상의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 가전제품을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가전제품별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만,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하지 않는 가전제품별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작동에 따른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는 선택 옵션에 따른 설치 공간의 면적에 따라 공기청정화 능력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설치에 따라 미설치 단위실과 환기 디퓨저의 설치 개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설치에 따라 미설치 단위실과 스프링클러, 감지기, 등기구의 설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는 무선 리모콘으로 제어하며, 장비 1대당 무선 리모콘 1개가 제공됩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사용에 따라 주기적으로 필터 교환 등 관리가 필요하며, 소모품 교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 분양광고시 공개된 품목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설치비용은 오피스텔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와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제반자재, 공사관리비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적용 및 설치는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에 관한 상세내용 중 본 분양광고문에 기재하지 못한 내용은 추후 추가선택품목 계약시 별도의 안내 후 계약 진행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판매가격에는 기본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을 정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별도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시공 상의 관리문제(발주 및 설치)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이 불가하며 (추가선택품목 계약시 계약 가능기간 안내), 중도금 납부이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제품 및 모델은 설치시점에 이르러 생산 단종 (제품의 품절, 품귀, 성능개선, 디자인 개선 등의 사유)발생시 동제조사의 동급이상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폐업, 부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제품공급이 불가시 동급 이상의 타제조사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발생시 공고한 바에 따라 적용되며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중 완제품으로 시공된 전자제품의 서비스 내용 및 제품에 대한 하자는 오피스텔 하자담보 책임범위에서 제외되며, 서비스 내용에 대한 민원, 제품에 대한 하자 발생시 제조사 보증책임에 따라 처리됩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본 오피스텔의 특성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써 타입별로 상이하며, 구성내용 및 판매가격에 대해 교체 및 변경은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본 분양광고문 표기에 한계가 있고, 분양사업장 건립호실에 전품목 전시불가 등의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체결 시 분양사업장에서 상세한 설명과 확인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미선택시에는 기본 설계안 대로 시공됩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분양사업장에 설치된 단위호실에 전시(일부)되오며, 설치시 홈페이지 및 홍보물의 이미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에 따라 인접하는 가구, 마감재, 벽체, 몰딩, 걸레받이, 커텐박스, 등기구, 스위치 및 콘센트 등의 설치위치와 수량, 형태가 홈페이지 및 홍보물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류), 스마트스위치, 기타 기기 등의 설치위치, 수량, 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분양광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오피스텔 공급계약 체결 시 분양광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은 옵션 선택으로 인해 시공되지 않는 기본마감과의 차액을 정산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의 경우 사용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전류의 에너지효율등급은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등급산정 기준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으며 계약 전 위치 확인하기 바랍니다.
• 각 평형별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각 평형별 옵션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마감재 사양이 변경되어 시공됩니다.
• 각종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 유무에 따라 제공되는 가구의 형태 및 사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 시 기본 설치되는 수납공간이 미제공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은 자재 발주, 시공 개시 등 비용 발생 이후부터는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시공상의 일정 등으로 비용 발생 시점을 통보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당사 분양 홈페이지 또는 분양사업장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 시 제품 특성상 소음, 진동 및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전류의 온/오프라인 판매가는 계약시점과 입주시점이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 시 이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타입에 따라 등기구의 위치 및 수량 등이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분양사업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Ⅴ 기타 계약자안내

■ 입주자 사전방문 관련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0의2호에 따라, 분양받은 자의 사용승인 전 건축물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사전방문 미참석자에 대한 별도의 사전점검은 없습니다.)

■ 준공 및 입주예정일 : 2031년 08월 예정(정확한 준공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자연재해,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암반 발견 등 불가항력을 포함하여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관계자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 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입주 안내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오피스텔은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전매제한 기간이 없습니다.
• 전매 관련 내용은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시행자", "시공사"의 동의를 득하여 권리의무승계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양도인의 공급계약상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의 범위 및 담보책임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승인(준공)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콘크리트의 폭 0.3mm 이하의 미세한 균열은 공사상의 하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자금관리 대리사무

① 신한자산신탁(주)(이하 "자금관리 대리사무사"라 한다)는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매도인 겸 사업시행자"(사업주체)로서의 책임(수분양자의 중도해지에 의한 환불금, 하자보수 등)을 지지 않습니다.
② "자금관리 대리사무사"가 매도인(사업주체)과 체결한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자금관리 대리사무사"가 관리하는 분양수입금 등과 자금관리업무 모두 매도인(사업주체)에게 포괄승계되며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의 업무는 종결, 면책됨을 확인합니다.
③ "자금관리 대리사무사"가 매도인(사업주체)과 체결한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수분양자는 분양대금을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수분양자"는 분양대금 등을 반드시 지정된 분양수입금계좌(추가선택품목 공사비 계좌를 포함함)로 납부해야 하며, 지정 계좌 외의 다른 경로로 입금 및 납부된 금액은 정당한(유효한) 납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⑤ "자금관리 대리사무사"는 부족한 사업비의 조달에 관여하지 아니합니다.
⑥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 등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의 상환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⑦ "수분양자"는 "자금관리 대리사무사"가 본 사업의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 반환 의무는 "매도인 겸 사업시행자"(사업주체)가 부담함을 확인하며, 향후 분양대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의 자금관리계좌 잔액이 분양대금 반환액보다 적을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한 자금조달 의무는 "매도인 겸 사업시행자"(사업주체)의 책임으로 이행함을 확인합니다.
⑧ 분양대금반환과 관련하여 매수인인 "수분양자"는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분양대금반환, 하자보수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 겸 사업시행자"(사업주체)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⑨ 수분양자는 임의로 체결된 각종 개별계약(위탁자 및/또는 분양대행사와 수분양자 간의 임대확약, 수익보장, 계약해제합의, 환매확약, 할인분양, 대물변제 등)에 대해서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인 신한자산신탁㈜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Ⅵ 단지여건 및 유의사항

• 청약 및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분양광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 본 오피스텔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구분		내용
공통	일반사항	•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분양사업장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또는 마감사양, 부대복리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업장,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 분양광고 및 공급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오피스텔 분양광고문과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하자의 범위 및 담보책임 기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사용승인 하자판정 기준은 사용승인(준공) 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일부 실은 공사품질관리를 위하여 선행시공 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 해당 단지는 복리시설과 오피스텔,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토지입니다. • 단지명 '청라 아크원 푸르지오'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통	인허가	• 각종 홍보물은 예정된 설계변경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사용승인(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홍보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의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은 최초 사업계획승인일인 2024년 08월 23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당 사업은 2023년 건축심의를 신청한 사업으로 오피스텔 및 부대복리시설의 창호, 벽체 등의 단열기준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2023.02.28.)에 따라 적용되었습니다. • 지자체, 인·허가관청 등의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변경 될 경우, 인접대지, 학교부지 등의 용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에 설치된 환기구(DA), 계단실, 외부엘리베이터 등은 구조 및 성능개선을 위해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설계변경사항 이외의 설계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발코니가 계획되어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공간을 설계한 사항으로 구조변경을 통한 확장 사용 등이 불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계획은 오피스텔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 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호실 내부 및 외부 공용 부위 등의 설계 변경에 해당하는 내용, 각종 인·허가 도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공통	사업지 및 도로 단지주변현황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가 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 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소음영향평가 실시 후 결과에 따라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시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으며, 소수점 이하 증감이 있을 때에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 투시형 펜스 (방음벽 포함) 또는 조경 등의 설치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반시설의 위치, 도로, 하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및 송전탑 등 혐오시설 유무, 주변 개발현황 등 단지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 및 모형과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고, 해당 사항에 대하여 관계 주무관청에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지는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며 당해 지구단위계획에서 사업지 인근 국제업무단지는 지정된 용도지역에 의해 권장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가 규정되며, 이에 따라 개발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청라국제도시의 사업시행자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으로서 향후 택지지구 내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최초 개발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 본 사업지 대지경계에 구조물 등이 설치 또는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인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향후 공사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향후 일조 및 조망과 관련한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귀책사유는 없습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한 것으로, 실제도로의 위치, 형태 및 조성 현황등은 향후 계획 및 실제 현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장이 인접한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학교 등)은 개발계획 및 해당 기반시설 공사(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의 지연 및 변경 등에 따라 사업추진 중 일부(당 사업의 실착공 및 준공 지연 등)가 변경,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사업장의 입주시기 및 사용검사 완료가 지연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단지 서측 경계에서 서측 직선거리 약 1km 내에 서인천발전본부(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신인천빛드림본부(신인천복합화력발전소) 및 청라자원순환센터(청라 소각장)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지 주변에는 하나금융그룹 통합데이터센터가 위치해 있고, 인천광역시 서해구 원창동 일원에는 청라 AI 데이터센터가 개발될 예정입니다.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사업지 현장 및 위 주변현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행자 전용도로 등 단지의 대지경계선 밖에 위치하는 시설은 당사업지 부지가 아니오니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광고에 기재된 주변 시설 현황은 오피스텔 분양광고일 현재 사업주체가 확인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해당 시설의 설치·변경·확장·이전 등은 관계기관 또는 해당 시설 소유자의 계획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사업주체와 무관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분양광고에 고지된 주변 시설 및 이로 인한 환경 영향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며, 추후 이를 사유로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내용
공통	학교	• 당 사업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상대보호구역에 해당없으며, 인근에 "초등학교 예정지(초10)" 및 "중학교 예정지(중6)"가 계획되어 있습니다(청라국제도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고). • (초등학생) 초등학생은 (가칭)청라10초(2031년 9월 개교 목표)에 배치 예정이나, 개교 전 입주시 인근 학교에 임시 배치될 수 있으며, (가칭)청라10초 개교일정은 입주시기 및 학교설립 추진상황, 인근 개발사업 추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중·고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은 학교군 내 배치 예정입니다. ※ 초등학생 통학구역은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의 통학구역 지정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중·고등학교 학교군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조정 및 변경 가능함. ※ 학생배치계획은 개발계획 변경(취소, 세대수 변경, 입주시기조정 등), 인근 개발사업 추이, 관할 교육청 학생배치 기준(학급별 학생수 상·하향 조정 등)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다만, 학생 배정 및 학교 개교 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관할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서 결정 하는 사항으로, 관할기관의 정책 변화 및 학생수용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동별 현황	• 저층 실은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쓰레기 보관소, 쓰레기 이송설비의 악취, 분진, 지하급배기구 소음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주변 건물 및 구조물, 단지 내 인접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 실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이사만 가능하며, 개별적인 부피에 따른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이동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승강장 및 복도 내 창호는 일부는 고정창 및 배연창, 일부는 프로젝트창으로 적용되며, 프로젝트창의 적용위치는 층별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는 302동에 설치됩니다. • 각 동 옥상 및 301동, 302동, 303동 20층 피난안전구역에 소화펌프, 제연송풍기, 냉각탑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하층 실에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제4항에 의거 지하층 휀룸(지하1층, 지하3층, 지하5층), 각 동 EPS/TPS실(10층, 26층, 42층)에는 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시공과정에서 수량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단지계획 (설계, 디자인, 마감)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등), 근린생활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상하수도, 지역난방, 전기, 통신, 쓰레기 이송설비 등 각종 인입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은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악취발생·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호실,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 주차장 경사로 등), 조경시설(수공간 등),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단지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실은 소음, 불빛, 분진 등에 의한 생활권과 사생활 침해 등 각종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동 상부 지붕층에 공용부 전기 생산을 위한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됩니다. 태양광의 위치 및 설치형태는 모형에 임의로 반영되어 있으며, 크기, 높이, 개소는 본 시공시 동 배치 및 일조량에 따라 재배치될 수 있으며, 구조물에 의해 설치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옥탑층 및 상층부 입면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연도, 고가수조,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태양광 집광판,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및 측뢰 피뢰침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집단에너지(지역냉난방) 공급지역으로 오피스텔 호실 내 개별 에어컨 실내기, 실외기(실)는 설치되지 않으며, 지역냉난방 열원을 이용한 팬코일유니트가 설치됩니다. 지붕층에 냉각탑 등 관련 설비가 설치됩니다. • 오피스텔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장재 마감 사양 및 적용 비율은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및 상품개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차장 출입구를 제외한 보행자 전용 통로, 공개공지, 공공조경은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의 통행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청의 지침에 따라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지와 공공보행통로 사이는 경계담장이 설치되지 않으며 보행 이동이 가능합니다. •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 폐기물 보관소, 쓰레기 이송설비의 위치, 마감, 수량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 냄새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 또는 각 동 측면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용공간에 의해 발생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준공 후 조경유지관리 의무는 관리주체 및 입주자에게 있으며,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조경수 고사 및 조경 하자는 시공사에 책임이 없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와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시설물의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위치 옥외안테나 : 옥상층(201동, 202동, 203동), 지상1층 중계장치 : 지하층 휀룸(지하1층, 지하3층, 지하5층), 301동 EPS/TPS실(10층, 26층, 42층), 302동 EPS/TPS실(10층, 26층, 42층), 303동 통신실(10층, 26층, 42층), 옥상층(201동, 202동, 203동) • 일부 단지 내 도로는 비상상황에서 소방차량 등의 활동을 위해 설치된 도로로써 경사도로 인해 일반차량이 이용할 경우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보행자 이용 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상부에 옥상조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조경계획은 옥상의 환경을 고려해 실시설계 및 시공시 확정됩니다.
단지	외관계획	• 외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실의 외벽 및 외부공간, 지붕 등에 장식용 구조물 및 부착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경관조명, 사인계획 등), 공용부 디자인(E/V홀, 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문주, D.A,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보관소, 외부E/V, 외부계단, 썬큰 등), 조경 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및 재료, 옹벽의 형태와 디자인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발주처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의 고유한 업무 영역으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저층부는 석재 및 금속 등 기타 자재로 마감되고, 주동 형태에 따라 석재 및 외장타일 등 기타자재의 적용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문주는 진입공간 배치 현황 및 현장 여건에 맞춰 형태, 크기, 배치가 결정되며 문주 설치로 인해 주 진입부에 위치한 일부 저층 실에서는 조망간섭 및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문주에 설치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에 대해 타사 및 당사의 타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에 적용된 외관특화, 입면, 색채, 경관조명 및 마감재 등 디자인 일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 옥상 및 외벽에 유리 및 금속마감재, 몰딩, 경관조명, 조형물, 태양광 패널 및 사인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동별 적용면적은 상이합니다. 또한 동 위치에 따라 일부 실의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조명이나 유리마감재의 빛반사로 인한 눈부심, 소음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외벽 유리 및 금속 마감재, 태양광 패널 및 몰딩이 설치되는 구간이 있으며, 면적은 동별로 상이합니다. 동 위치에 따라 일부동은 빛의 반사로 인한 눈

구분		내용
		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커튼월룩이 적용된 외벽 일부는 전열교환기 등의 환기캡 설치를 위해 환기캡 설치에 적합한 마감재 및 형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에 적용된 대형옥상구조물 등 경관조명이 결합된 외관 요소는 사업주체 및 인허가청 협의를 통해 설치하는 것으로 입주예정자의 요청에 의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BI 및 단지명은 시공사 및 시행사 협의에 의해서 형태 및 위치를 결정하며, 계약자 요구에 의해서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실(일부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예비 공간), 냉각탑, D.A , 등 그릴 및 루버가 설치되는 부분과 통기관, 중수처리조 배기구의 재질, 색상, 간격 및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옥상구조물 상부 및 내부면은 도장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옥상 소화수조 변경으로 인하여 옥상구조물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설계변경을 준비 중에 있으며, 분양사업장 및 분양홍보자료는 예정된 설계변경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계약자는「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설계변경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설계변경사항 이외의 설계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에서 허가권자 의견, 관계기관 협의 및 현장 여건등에 따라 일부 설계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계약 전 예정된 설계변경사항 및 분양사업장, 분양홍보자료등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 관계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시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에 인접한 실은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 (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수거시설, 옥외 엘리베이터 등)로 인해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용시설이 인접한 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실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단 구성 후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할 때까지 커뮤니티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실에 부과됩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관리단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단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공간만 제공되며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비품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부 집기류, 비품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매 및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공유시설물 및 부대복리시설(주민운동시설 등) 등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 부분의 범위와 유지/보수비용 분담, 구체적 운영방법(공동운영 또는 별도 운영)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와 오피스텔 관리단의 구성 후 각 시설에 대하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관련 법령에 의거한 절차 및 합의 과정을 통해 공동주택의 입주자,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은 공동주택과 공동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구성 등을 통해 입주자들이 결정합니다. 시설 이용료 및 관리비는 별도 기준에 따라 부과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부과 기준과 부담 방식은 추후 결정됩니다. • 부대시설의 구성, 명칭, 배치, 내부 디자인, 창호, 마감재 및 집기류는 분양 이후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과정에서 사용성 개선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부대시설 면적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부대복리시설의 디자인과 내부에 설치되는 각종 기구류의 사양은 각 시설의 기능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민들은 개인 취향이나 타 단지와의 비교 등을 이유로 사양변경, 추가설치 및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은 설치 위치에 따라 각 동별로 접근성, 사용성 및 편의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내 바닥레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입구 및 내부 바닥에 경사(슬로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내 일부 실에 공용 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 단지내에 쓰레기 야적장 및 분리수거장, 재활용 보관소 등이 설치되어 이로 인한 일부 실은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현장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자는 준공 후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오피스텔 및 부대복리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입주 후 최대 24개월)동안 현장 as센터(가칭)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을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피트니스클럽에 설치되는 운동기구는 준공 후 입주지정기간이 종료된 이후 설치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내용
		• 부대시설 및 공용부의 유지 관리를 위한 냉난방, 급수, 급탕, 전력, 조경용수, 동파방지열선, 제습기, 배수펌프, 환기장치 사용으로 발생하는 공용 전기료, 수도료 등이 관리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시설은 입주지정기간 경과 후 관리주체에서 운영하게 되며, 운영 시 입주안내문과 커뮤니티시설 운영 홍보내용을 통해 관리주체가 사전 고지한 시설운영 시간과 요금표에 따라 공용 또는 개별실 관리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시설요금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소모품비, 수도광열비, 충당금 등 제반 운영비용을 포함하며, 관리수입으로 전액 귀속됩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슬래브 등)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커뮤니티 시설 내 기둥(또는 벽체)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외부공간 일부에 하부 실의 원활한 배수 성능 확보를 위한 통기배관 및 우수입상관등이 노출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속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해 주변 인접 동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설치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및 크기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중앙에 주민 편의를 위한 카페테리아가 설치될 예정이나, 향후 해당 시설의 분양계약자 및 소유자의 의지에 따라 세부 용도, 운영 방식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은 각각 별도의 지하주차장 및 관리사무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 지하층 동 하부 공간 내 개별물품 보관을 위한 창고가 제공되며, 창고의 사이즈와 형태,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설계변경을 준비 중에 있으며, 분양사업장 및 분양홍보자료는 예정된 설계변경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계약자는「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설계변경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설계변경사항 이외의 설계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에서 허가권자 의견, 관계기관 협의 및 현장 여건등에 따라 일부 설계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계약 전 예정된 설계변경사항 및 분양사업장, 분양홍보자료등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 관계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라국제업무단지 M5BL내 본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이 같이 조성된 단지로서 단지 내 일부 부대복리시설은 오피스텔과 공동주택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공급됩니다. 부대복리시설의 위치 및 면적 산정과 관계없이 오피스텔과 공동주택 입주자가 공동사용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위치/면적 산정 및 공동 사용등을 사유로 계약의 해지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부대복리시설과 오피스텔, 공동주택의 대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토지로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의 일부 부대복리시설을 별도로 분리할 수 없으며, 공동으로 운영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므로 계약 및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중 아래 시설은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이 구분 없이 통합 설치되었으며, 해당 시설은 오피스텔과 공동주택 구분 없이 사용가능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통합부대 시설 :** 독서실, 공유오피스, 멀티룸, 맘스라운지, 공유주방, 컬쳐 라운지, 그리너리카페, 런드리라운지, 키즈카페,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펫라운지, 시니어클럽(경로당), 운동시설(사우나(1개소), 골프클럽(1개소), 스크린골프(1개소), 피트니스(1개소), GX(1개소)), 게스트하우스, 경비실, 키즈스테이션,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 옥외 조경 시설 • 본 단지 내 설치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및 다함께돌봄센터는 관계 법령 및 관할 지자체의 운영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될 예정이며,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에게 우선입소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입주민 자녀의 경우 해당 우선입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향후 어린이집 및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여건, 정원 및 보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 및 운영 기준에 따라 입소가 가능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입소 가능 여부는 관할 지자체 및 어린이집 운영주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주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은 오피스텔 입주민 자녀의 어린이집 및 다함께돌봄센터 입소를 보장하거나 별도의 우선입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공용설비 및 시스템	•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용 전기요금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고 해당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제습을 위한 제습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제습기 가동에 따른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지상1층,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되는 공기청정기 가동에 따른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관련 법령 및 인허가 조건에 의해 지하저수조와 우수조(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가 설치될 수 있으며,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에는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실은 가로등(보안등) 및 경관조명에 의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 피난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외부 E/V실, 제연휀룸, D.A)과 인접한 저층실은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 기계실, 휀룸 및 이와 유사한 기계 설비 장치가 설치되는 실에 인접한 곳에서는 장비로 인한 소음,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택배보관함은 동별 설치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접한 호실의 경우 택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를 통한 화상통화는 불가합니다. • 설계된 전기용량은 예상 용량이며, 향후 실시설계 및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전기공급 기준에 적합한 용량으로 적용됩니다. • 소방시설 및 설비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 및 적용되며, 성능위주설계에 따라 적용된 사항은 실시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주차장	• 지하 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닥트, 장비 등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지하에 설치되어있으며 오피스텔 1,695대, 근린생활시설 40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경차 및 장애인 주차, 환경친화적자동차, 전기차 주차구역 포함) • 지하 주차장의 주차면 계획과 일반형, 확장형, 장애인, 경형, 전기차, 승용차 공동이용, 하역공간 주차구획의 위치 및 비율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조 형식상 지하주차장의 동 직하부와 기계실, 휀룸, 및 이와 유사한 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에 인접한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특성상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 ~ 지하 5층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구획별로 지하주차장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 및 관련 설비는 관계법령 및 기준, 인허가청 협의 내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의 일부 구간은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의 간섭으로 통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의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은 인·허가 도서에 준해 설치되며, 주차 주요동선차로 및 출입구의 유효높이는 층별로 상이하여 (지하1층 : 2.7m, 지하2층~지하5층 : 2.3m) 해당 천장고 초과 차량은 출입할 수 없으며,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최소 2.1m로 동일합니다. • 무인택배 보관함은 동별 1개소 지하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 주변에는 택배차량등의 하역을 위한 공간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설치 위치 및 하역공간은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오피스텔(지하), 근린생활시설(지하) 주차출입구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지하 1층 내 차단기를 설치하여 주차구획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구획은 오피스텔과 차단기로 분리되어 있으며, 지하1층 공동주택 202, 203동 동출입구 주변으로 배치되어 있지만 해당 동과 출입구 및 주차공간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오피스텔과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나, 오피스텔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지상 부위의 차로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일체의 점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시점에 따라 MD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용 재활용 쓰레기 보관소는 각 동에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일부 실은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쓰레기이송설비를 통해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며 공동주택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내 근린생활시설의 다양한 업종의 입점 등으로 인하여 직.간접(배기설비)적인 소음, 냄새, 프라이버시, 진동 등에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 수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자금관리 대리사무사, 분양대행사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호실설계	평면	타입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단위실은 공사 시행 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추후 해당 단위실은 보상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단위실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샷시 및 유리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타입별로 제공 품목 및 선택 가능한 유상옵션 항목에 차이가 있으니 카탈로그 등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실 내 분전반 및 통신단자함 위치 및 가구/선반의 배치, 주방 싱크대 수전위치, 현관문 도어의 방향은 좌우 단위실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피난공간(하향식피난구)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에 따라 피난공간(하향식피난구) 내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마감손상 및 훼손된 물품에 대해 보상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호실 내 설치되는 피난공간(하향식 피난구)은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시설이므로 화재 등 비상 시에만 개방하여야 하며 피난구 개방에 따른 인접 호실 사생활 보호에 대한 관리는 입주자의 책임입니다. • 피난공간(하향식 피난구)은 상·하층 호실이 수직으로 관통되는 구조적 특성상, 구조체(덮개)를 통한 상하층 간의 미세한 생활소음, 진동, 냄새 등이 전달될 수 있으나 이는 제품 및 시공상 하자가 아닙니다. • 피난공간(하향식 피난구)에는 화재 외 임의 개방 시 단지 방재실(경비실)로 경보가 울리는 실시간 보안 센서(경보장치)가 설치됩니다. 화재 등 긴급 상황이 아님에도 호기심이나 임의 조작으로 개방하여 경보가 작동하거나, 아래층 호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난방시공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외부 온도 차이에 의해 결로 및 결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마감재의 손상이나 보관 물품의 훼손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호실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동파 및 각종 하자는 입주민께서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보수해야 합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청소를 위한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일부 발코니에만 선홈통 및 배수구가 설치됩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피난공간(하향식피난구) 내 물청소 등으로 인해 하향식 피난구 내부 장치나 아래층 호실로 물이 유입될 경우, 녹 발생으로 인한 작동 불량 및 아래층 인테리어 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은 원인을 제공한 상층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및 욕실에 설치되는 각종 수전, 배수배관의 설치 위치 및 개수, 사이즈는 변경(위치변경, 추가 또는 미설치 등)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및 세탁실 문턱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습니다.(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내부 욕실, 세탁실, 팬트리내부, 피난공간(하향식피난구), 발코니 등의 바닥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실제 시공시 도면 및 분양사업장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위실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외벽 및 단위실 간벽 등 단열설치 부위의 결로 발생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타입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내부 및 실간 벽체 재질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타입의 경우, 욕실 뒷선반의 깊이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시공 시 단위실 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창호의 문 열림 방향, 날개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내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팬코일유니트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사유와 관련하여 설치완료 후 이동이 불가합니다. • 본 단지 실의 천장 높이는 2,500mm로 시공됩니다. (현관, 욕실, 세탁실, 팬트리 내부, 피난공간(하향식 피난구), 발코니 등 제외) • 입주 시 실 내에 침실별 가구(붙박이장 등)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각 실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은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현관, 현관창고, 세탁실, 발코니 등에는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으며, 욕실의 경우, 마감여건상 일부 구간에만 바닥난방이 시공됩니다. (욕조, 샤워부스 등에는 바닥난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실 내부 벽체는 마감 품질 확보를 위하여 재료(콘크리트, 조적, 경량벽체, ALC블럭), 길이 및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간 벽체에는 공사를 위한 작업통로가 설치될 수 있으며, 작업 완료 후 조적, ALC블럭 또는 건식벽체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 105OA 및 121OA 타입의 경우, 주방창 외부에 인접한 벽체 등으로 인해 조망 및 개방감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인지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은 전열교환기가 발코니에 노출 설치되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별 에어컨이 아닌 중앙냉방방식의

구분		내용
		팬코일유니트가 설치됩니다. • 팬코일유니트는 각 장비마다 점검구가 설치되어, 내부 장비 및 배관, 밸브 등 유지보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분양사업장과 설계 도면이 상이한 경우 분양사업장이 우선됩니다. • 본 오피스텔은 설계변경을 준비 중에 있으며, 분양사업장 및 분양홍보자료는 예정된 설계변경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계약자는「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설계변경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설계변경사항 이외의 설계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에서 허가권자 의견, 관계기관 협의 및 현장 여건등에 따라 일부 설계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계약 전 예정된 설계변경사항 및 분양사업장, 분양홍보자료등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 관계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 내 근린생활시설의 다양한 업종의 입점 등으로 인하여 직.간접(배기설비)적인 소음, 냄새, 프라이버시, 진동 등에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 수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자금관리 대리사무사, 분양대행사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탁기 상부에 건조기를 직렬키트로 설치하는 경우 세탁실 천장 점검구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호실 환기용 설비, 소방용 설비, 조명 설비 등이 한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설치될 경우, 각 기능에 따라 배치되고, 일직선상 배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호실설계	창호	• 오피스텔 타입 및 실에 따라 적용되는 창호 및 하드웨어(손잡이 등)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저층 실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 및 문짝의 폭, 높이,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밀폐된 생활 환경 속에서 음식 조리, 가습기 사용, 실내 화분, 빨래 등으로 인해 실내 상대 습도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창호 유리면 및 창틀 주변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연환기 또는 환기 시스템을 작동하여 결로 현상을 예방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 복도에 설치되는 창호는 배연설비용 배연창으로 개폐를 위한 기계 장치가 부착되어 화재 시 자동 개폐되며 해당설비의 제거 및 변경등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방관 진입창이 설치되지 않는 같은 라인의 다른 층의 창호는 외부 난간 등 형태가 상이합니다. • 소방관 진입 표시는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빛반사, 야광 등의 재질로 제작되며, 크기, 부착 위치, 재질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됩니다. • 오피스텔 각 실 거실에 배연창이 적용되고, 배연창은 비상시 외에는 고정창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개폐를 위한 기계 장치가 부착되어 미관을 해칠 수 있으며, 평상 시 개폐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창호 프레임과 벽체 내외부 마감과의 깊이는, 마감재(커튼월룩 마감, 석재, BIPV, 페인트 등)에 따라 다릅니다. • 건축법 시행령 51조에 의거 거실 1개소에 설치된 배연설비로 화재 시 배연창호가 자동으로 개폐되며 환기목적으로 사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배연설비의 색상 또는 형태,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설비 설치로 인해 창호 프레임에 타공이 될 수 있습니다. • 배연창 설비가 설치됨으로 인해 입주 후 커튼 및 블라인드 설치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배연창 설비의 임의 제거 및 변경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으며, 위반시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내 유리난간이 설치되는 창호는 설계 구조상 양측 개폐가 불가하며, 유리난간이 설치된 단방향(한쪽) 창문만 열리는 구조로 양방향 개폐 창호 대비 개방감이나 자연 환기량(통풍)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입주 후 고정된 창짝의 개조나 임의 변경은 안전상 절대 불가하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에는 바닥난방이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기적인 환기를 하여야 합니다. (부주의한 관리에 따른 손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105OA, 105OB, 121OA, 121OB, 136OA, 136OB 타입 중 커튼월룩과 인접한 창호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의견에 따라 창호 설치 위치를 외측면에 맞추어 시공합니다. 이에 따라 창 내측면이 공프레임으로 시공되며, 해당 창호의 난간 높이는 다른 창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외관 및 관련 기준을 고려한 설계, 시공상의 차이로, 해당 창호의 설치 위치 및 난간 높이가 다른 창호와 상이한 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각 실에는 소방관진입창이 설치되며, 소방차 접안 위치 및 소방성능위주설계 등에 따라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위치가 타입별,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에 피난공간(하향식 피난구) 외 거실, 침실 등 호실 내 다른 공간에 소방관진입창이 설치될 수 있으며, 화재 등 비상시 소방관의 진입을 위하여 해당 창호를 개폐하거나 파쇄하여 진입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될 수 있으니, 계약 전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위치 및 형태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내용
호실설계	가구 및 마감재	• 붙박이 가구(신발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등)는 본 공사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실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는 본 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마감재 기준은 타입별로 구성의 차이가 있으니 분양사업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업장에 설치되지 않은 타입의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위실 내 설치되는 자재 및 제품(제작품, 마루, 타일 등)은 분양사업장과 동일한 제품으로 설치되는 것이 원칙이나, 자재 특성상 또는 제조사 및 제조시기 등의 차이로 실제 시공 시 분양사업장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일부 분양사업장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시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는 성능 향상 및 시공성 개선을 위해 일부 마감디테일 및 수납공간의 구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도어에 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휨 방지 부속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분양 사업장과 상이하게 가구 배면에 추가 부속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내 목문, PVC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 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도어스토퍼의 형태, 사양, 설치 여부 및 위치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가구 및 수납가구는 과도한 하중 적재 시 처짐 또는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공사 시 단위실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분양사업장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아트월 부위에 벽걸이TV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거실 우물천장은 설비 환기배관 및 스프링클러 배관 설치로 인해 크기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은 오픈줄눈으로 시공됩니다. • 아트월 타일과 바닥재 사이에는 온도 팽창 등으로 인한 바닥재 신축으로 틈새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부위는 코킹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아트월 타일과 천장 몰딩 사이에는 틈새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부위는 코킹처리될 수 있습니다. • 바닥 마감재는 분양사업장과 폭과 색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우물천장과 걸레받이는 본공사 시 하자발생 방지를 위해 PVC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내 천정몰딩은 하자예방 및 시공성향상을 위해 설치되며 분양사업장과 디자인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타입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조석의 경우, 재료의 접합 연결부가 분양사업장과 일부 상이할 수 있고,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관 디딤석 엔지니어드스톤은 공사 여건에 따라 분절라인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시공시기의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의 다른 자재(타사자재 포함)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라이프업 수납– 현관수납특화 및 드레스룸 특화, 라이프업 키친-주방특화 선택 시 설치되는 가구의 조명선반 및 가구조명의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점검구의 디테일 및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내 설치되는 액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실에 적용된 가구 하드웨어는 본 공사시 동등 이상의 제품(제조사, 사양, 규격 등) 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안방 포함) 가구는 침실 Size 및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설치 바랍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마루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습니다. • 강마루의 특성상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인조석(현관디딤판, 욕실비누턱, 세면대상판, 주방상판, 재료분리대 등)은 무늬와 색상, 줄눈나누기 간격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스크래치가 발생할

구분		내용
		수 있습니다. • 주방 상판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판 크기와 형태에 따라 나누어 제작/설치되는 관계로 본 시공 시 연결부위가 발생(단위실별로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되며, 제품 특성상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우물천장과 걸레받이는 본 공사 시 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PVC 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분양사업장의 시공 자재와는 상이할 수 있음) • 냉장고장의 규격은 타입별 상이하며,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상이하게 설치되오니 계약 전 확인하시길 바라며, 옵션 미선택 시 냉장고가 (입주자 직접 설치 가전) 제품 사양에 따라 일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단, 일부 중국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KS기준 시험성적서가 없거나 제품 생산기준이 KS기준과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타일 나누기(현관, 욕실 등 타일이 시공된 부위)는 분양사업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외부 창호 디자인(색상 포함), 프레임사이즈,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은 현장여건, 풍동실험 및 안전성에 따라 본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창호 계획에 있어 공간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위치 및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분양사업장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상의 향상을 위해 위치 및 크기, 개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상판은 별도의 물턱이 없으므로 사용 시 물튀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본공사 시 단위실 내 목문, ABS문의 힌지 및 손잡이, 손끼임이 발생하는 코너부위에 손끼임방지장치가 설치될 수 있으며 시공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미설치 시 해당 없습니다.) • 욕실 및 발코니2(다용도실) 도어의 표면재는 도어의 물성 상 목창호 도어/문선과 패턴, 색상, 엠보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타입형(해당타입) 주방가구에 설치된 조리기구 행거, 선반 등은 본 공사 시 위치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미설치 시 해당 없습니다.) • 단위실 내 일반 가구 선반의 배치는 좌우 단위실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장식장 내부에서 전열기구 사용 시 가구변형 및 화재위험이 있으므로 내부에서 전열 가전제품 사용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위실 내 일반가구, 주방가구 및 시스템가구에 설치되는 조명기구(조명선반 등)의 유지보수를 위해 점검구가 설치되며 점검구의 디테일 및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라이프업 키친-주방특화 선택 시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 하부 조명은 본공사 시 제조사, 형태, 색상, 규격, 가림판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방가구 수납장 상부에 조명의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점검구 및 스위치의 디테일 및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해당타입/미설치 시 해당 없습니다.) • 현관바닥, 아트월 등의 타일은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발생이 생길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아트월타일 모서리 부위에 재료분리대가 분양사업장과 상이하게 추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장식성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도어가 아니며, 유리슬라이딩도어는 향후 입찰 결과에 따라 창호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창고에 설치되는 폴딩도어는 기능성 도어가 아니므로 차음, 차폐, 차광 기능이 없습니다. • 세라믹타일은 재료의 특성 상 이음매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 인조대리석, 세라믹타일 등의 마감재는 가공 및 생산방식에 따라 분양사업장과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포켓도어의 프레임, 손잡이, 하드웨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의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변형) 발생이 생길 수 있으며, 타일나누기 및 줄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정고 및 실규격은 시공허용 범위 내 다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내 거실 아트월,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에는 걸레받이가 미시공 됩니다. • 단위실 내 거실 아트월 설치 및 복도 등에 벽지 외의 두께가 있는 마감으로 인하여 안목 길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욕실 출입문(부부, 가족)은 본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되며, 침실 문짝 모서리 상·하부는 별도의 마감이 없을 수 있습니다. 부부욕실 및 공용욕실은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 실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 욕실거울, 수전류,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창호, 시트 패널 등의 고정을 위해 본공사시 Staple Tacker가 사용되며, 시공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욕실장, 샤워부스, 시스템선반의 형태,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실 내 적용되는 마감 표면재(벽지, 시트, LPM 등)는 제품 생산 시 미세한 색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실 내 적용되는 석재류(인조석재 포함)는 자재 특성 상 색상, 무늬, 패턴 등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본 공사 시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실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 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으며, 분양사업장에 적용된 제품과 동급 이상의 자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실 내 적용되는 타일은 시공 시 인접 타일과 줄눈 두께 상이 혹은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본 공사 시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형 타일의 재료적 특성 상 각 장 별 색상 및 패턴의 차이(멀티 패턴 타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현관 및 욕실, 주방 등에 시공되는 바닥타일의 경우 사선방향 균열 및 파손 하자를 예방하기 위해 분절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실 내 창호 상부의 커튼박스는 천장 속 단열마감을 위하여 커튼박스의 폭, 깊이, 길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루의 특성상 색상, 무늬, 패턴 차이와 옹이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하자가 아닙니다. • 욕실 내 샤워부스 및 욕조하부에는 바닥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 천정에 점검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정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벽, 바닥 타일의 줄눈 위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줄눈 및 타일 사이즈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므로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욕실화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단위실 내 욕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 거울의 경우 자재특성(은 성분)상 산성, 알칼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욕실 환기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천장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각 실별 코킹 시공부 부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스마트욕실(욕실1)의 건식 세면대 하부장은 시공성 개선을 위해 일부 마감디테일 및 수납공간의 구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라이프업 바스-욕실 특화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외산·국산 타일 규격이 상이하며, 타일 나누기 및 줄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호실설계	전기기계설비	• 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관은 발코니에 노출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샤워부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옵션 시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실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 시 욕실문에 의한 욕실화의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환기 디퓨져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사업장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분양사업장 소화 시설물로서 본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및 드레스룸 및 팬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 3구 인덕션 기본 적용 제공되고 있으며, 가스 쿡탑 설치가 불가합니다. • 호실 내 도시가스는 공급되지 않습니다. • 주방에 설치되는 자동식 소화기는 사용 열원에 맞는 종류로 설치됩니다. • 분양사업장 내 설치된 비데 리모콘 설치위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설치 위치는 향후 변경 될 수 있으며, 입주시에는 리모콘을 미부착후 기본 제공하여 드리오니 입주자의 사용 편의성 및 선호위치에 부착하여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 본 오피스텔은 지역난방 열원을 사용한 중앙 공급 방식이 적용되며, 여름철 지역난방을 이용한 흡수식냉동기를 가동하여 중앙 냉방이 제공됩니다. 팬코일유니트 제어를 위한 무선 리모콘이 제공됩니다. • 주거생활(조리 및 빨래 등)으로 인한 실내습도 상승시 여름철 팬코일 장비 및 냉수배관 주변으로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개인 물품인 제습기 또는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습도관리에 유의 해야합니다. • 본 오피스텔은 여름철 중앙냉방방식을 사용하여, 각 실내에서 냉방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냉동기 및 냉각탑이 가동되어 기본 요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방 하부장에는 온수 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장 하부의 디자인이나 수납 용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싱크 하부장에는 분배기 가림막이 설치될 수 있으며, 빌트인 정수기 옵션 유무에 따라 상이하거나 설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욕실 배수배관은 층하 배관으로 인접 실의 점검 및 보수를 위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실 내 급수급탕 분배기의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열교환기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구 위치나 개소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독립형 후드 설치 시 측면 또는 전면에 타공되어 자동식소화기 조작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독립형 후드 측면에 자동식소화기 설치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 타입별 전열교환기가 설치되는 발코니 위치는 상이하며, 전열교환기는 노출되어 설치될 예정입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냉방용 팬코일유니트가 설치되며, 배관 및 밸브 점검을 위해 팬코일유니트 측면에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발코니 천장에 호실별 환기, 주방배기, 화장실 배기용 닥트 및 각종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0조제2항 등에 의거, 오피스텔 실 면적 120㎡를 초과하는 실 내에는 업무구역(10㎡) 당 광섬유케이블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분양 사업장	분양사업장	• 분양광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분양사업장 및 사업지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및 각종 인쇄물, 분양사업장 등에 적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및 각종 인쇄물, 분양사업장 등에 적용된 모든 마감자재는 시공 시기,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및 각종 인쇄물, 분양사업장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업장에는 105OB, 105OD, 121OA, 136OB 타입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타입은 홈페이지 CG 및 안내자료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수납공간, 실면적 등 분양사업장에 전시된 타입과 다른 사항(마감자재, 제공품목 및 가구 디자인 등)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업장에 설치된 모형, CG등에 적용된 실명칭은 실사용 용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내 설치된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분양사업장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분양사업장의 연출용 시공 부분 또는 공급안내, 기타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조감도, 사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사업주체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인허가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분양사업장 내 건립 유니트 및 전시모형을 포함한 각종 홍보물의 가구 소품, 디스플레이,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분양사업장에 건립된 단위실 타입은 평면 및 마감재의 유상옵션이 적용된 형태로 건립되어 있으므로, 기본형 마감재 / 가구형태 / 가전 / 평면형태 등에 대해서 반드시 별도 분양안내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업장에 시공되지 않은 타입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분양 상담을 통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마감재 및 오피스텔 내 시설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업장 내에는 기본품목, 선택옵션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입니다. 별도계약 품목(설치사항, 규격), 선택옵션품목, 분양사업장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분양사업장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업장에 설치된 가전, 가구와 다르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구 등은 폭, 높이 등의

구분		내용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분양사업장에 설치된 가구 사이즈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업장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실 유니트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허가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 되지 않았고, 실제 시공 시 분양사업장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업장 및 홈페이지는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접근이 제한되거나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분양사업장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분양사업장에 설치된 오피스텔모형 및 각종 인쇄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공사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사업장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인허가 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나, 일부 내용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분양사업장 건립 타입 외 분양사업장 미건립 타입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옵션의 형태 등은 분양사업장 건립 타입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에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업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본 공사 및 하자보수 시 동질 또는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사업장 단위실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각종 소품 및 가구(커텐,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아트월 등 포함), 벽 장식패널 마감, 디스플레이 가전제품(냉장고, TV, 세탁기, 건조기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분양사업장에 시공된 외부창호, 유리슬라이딩 도어, 피난공간(하향식피난구) 도어, 현관 방화문, 가구, 마루 등은 본 공사 시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일부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분양사업장 건립 시 미관 및 성능향상 등을 위해 인허가 도서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된 사항은 추후 분양사업장기준으로 인허가 변경 처리할 예정임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분양사업장에 사용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 한 경우와 신제품의 개발시에 동질 및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사업장내에는 기본제공 마감재 이외의 플러스옵션 품목 또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양사업장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업장,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 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분양신청 및 계약체결 바랍니다. • 분양사업장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와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등은 분양사업장 자체의 소방시설로서 본 공사 시 위치와 사양 등이 변경되며, 분양사업장에 설치된 에어컨 역시 분양사업장 자체의 냉·난방 설비로서 본 공사 시 적용되는 품목이 아닙니다. • 분양사업장에 설치된 생활 가구류(침대, 책상, 책장, 소파 등), 생활 가전류(세탁기, 건조기, 밥솥, TV, 기타 주방 및 침실 소형가전 등), 침장 및 커튼류, 그림 액자, 인테리어 소품 등은 연출용이며,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분양사업장에 설치된 연출용 조명기구는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분양사업장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콘센트, 스위치, 대기전력차단장치, 온도 조절기, 일괄소등스위치, 디지털 도어록, 현관 도어폰, 단위실 분전반, 통신 단자함 등의 제품 사양은 동질 및 동급의 타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사업장에 설치된 각종 위생도기와 수전, 악세서리류, 바닥배수구, 각종 조절기와 조작버튼은 본 공사 시 설치 위치나 높이, 색상,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조명기구, 배선기구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분양사업장에 건립되지 않은 단위실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개수, 설치위치 등이 건립 단위실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전기 단위실 분전반, 통신단자함은 법규에 의거해 거실 또는 침실, 복도 등의 노출된 장소에 설치될 수 있으며 입주 후 개인의 사정에 따른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업장 내에는 기본제공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양사업장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업장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사업장의 온도조절기, 환기디퓨져, 스프링클러 헤드는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색상,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 분양사업장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통신 단자함, 오피스텔 실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색상,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사업장 내 설치된 CCTV는 분양사업장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분양사업장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분양사업장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분양사업장에 미건립된 타입의 경우 분양사업장에 설치된 유사 타입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시 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업장 미건립 타입 105OA, 105OC, 121OB, 136OA타입은 건립되어 있는 105OB, 105OD, 121OA, 136OB 타입의 마감자재에 준하여 시공됩니다. • 사이버 분양사업장의 외부영상, CG, VR의 외관, 조경, 주변계획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이버 분양사업장에 설치되는 아이템은 화각에 의한 왜곡 등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제와 달라보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업장 단위실 내 설치된 월패드 및 스마트스위치의 기능은 참고용으로 현장별로 기준이 상이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본 공사시 해당 기능은 구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각 단위실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은 관련 법규가 정한 기준에 맞추어 노출 설치되며 안방, 침실 내 도어 후면 등에 설치 될 수 있습니다.(타입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본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조명기구, 월패드,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스위치/콘센트류, 통신수구,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등의 설치 위치 및 설치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월패드, 전기/통신분전함, 스위치/콘센트류, 통신수구,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디지털도어락, 소방설비류 등은 기능 및 디자인은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사업장에 설치된 조명기구, 월패드, 콘센트/스위치류, 통신수구,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로 설치되었으며, 본 공사 시 설치위치, 설치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품목은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분양사업장에 설치된 조명기구류는 본 공사 시 조도개선 및 자재생산업체 부도, 생산중단 시 동등(자재단가)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사업장에 건립되지 않은 단위실의 조명기구, 콘센트/스위치류, 통신수구, 전자식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설치위치, 설치수량 등은 건립 단위실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됩니다.단위실 동체감지기는 1층, 2층 및 최상층에 적용됩니다.1층 필로티인 경우 2층 및 최상층 단위실 설치, 1~2층 필로티인 경우 최상층 단위실만 설치됩니다. • 단위실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에 따른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디자인, 사양, 설치위치, 설치수량, 종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전기분전반 내 전기차단기 설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시 해당 기능을 위한 전기차단기는 미설치됩니다. • 분양사업장에 설치된 조명특화 조명기구의 외관 디자인 및 Spec, 설치수량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기본조명으로 설치되오니 분양사업장 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 E/V 운행에 따른 소음이 발생 할 수 있고, 오피스텔 옥탑층 시설물(의장용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설치에 따른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으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발전기 배기구 근처에는 발전기 정기점검 및 비상시 가동으로 인한 매연이 인근 단위실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분양사업장에 설치 된 단위실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관련제품, 단위실 분전함,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홈네트워크 관련 제품의 경우, 본 시공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위실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내 설치되는 액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홈통,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분전반, 통신단자함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단위실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은 관련 법규가 정한 기준에 맞추어 노출 설치되며 안방, 침실 내 도어 후면 등에 설치 될 수 있음(타입별로 설치되

구분		내용
		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분양사업장에 설치된 조명기구, 조명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환기컨트롤러, 환기디퓨져, 수전류 등의 제품 사양, 위치, 개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사업장 내에 시공된 단위실 조명기구 공사 중 본 공사 시 조도개선 및 자재생산업체 부도, 생산중단 시 동등(자재단가)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사업장 개별호실 내 설치된 월패드 및 스마트스위치의 기능은 참고용으로 현장별로 기준이 상이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본 공사 시 해당 기능은 구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 중 일부 홈네트워크 제어 기능은 단지 내에 고정 IP 회선이 연결되어야 가능합니다. • 고정 IP는 3년간 무상서비스로 공급되며 그 이후에는 유상으로 전환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서비스는 무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이 필요하며, 입주지정기간 이후 3년간 무상서비스로 제공된 후 유상으로 전환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홈네트워크 연동기기(조명,난방,환기,인덕션열원차단 등) 외에 IoT 가전 연동제품(소비자가 별도구매)은 푸르지오 App에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및 가전사의 App 기능을 통해 구현 가능합니다.(연계되는 이동통신사나 가전사는 각 사의 정책에 따라 연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App으로 연동되는 홈넷 및 3rd Party 들의 하자보증기간은 각 기기별 관련 법규에 따릅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App과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혹은 가전사의 음성인식 스피커는 소비자가 별도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 푸르지오 App과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App 서비스 이용 조건은 사용자와 통신사와의 계약내용에 준하며,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사의 앱을 통해 IoT 가전 연동기능을 사용할 경우, 이동통신사의 정책 및 가전사의 정책변경에 따라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IoT 가전기기제어는 단위실 내에 무선인터넷 환경(Wifi)이 구축되어야 제어기능이 가능합니다.(소비자가 별도 구축) • IoT 가전은 이동통신사 별로 연동가능한 모델이 상이하니 통신사의 App을 통해 연동가능한 모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삼성전자의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IoT 기능이 있는 생활가전제품을 입주자가 별도 구매, 설치 후 이용 가능 하며, SmartThings 앱에 제품등록 및 푸르지오 스마트홈 어플리케이션 연동 등 사전 등록과정이 필요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앱을 통해 연동가능한 삼성전자 생활가전 제품은 9종 가전(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에어드레서, 건조기, 로봇청소기,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Smart TV)이며, 모델에 따라서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제공 기능도 당사 및 삼성전자의 운영 정책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한 삼성 SmartThings 앱 사용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6.0이상 iOS 10.0 이상부터 지원(아이폰의 경우 아이폰 6 이상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빅스비 사용시, 안드로이드 7.0 누가 이상 iOS 10.3 이상부터 지원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삼성전자 홈페이지(www.samsung.com/sec/apps/smartthings/), 빅스비 사용환경은 삼성홈페이지(www.samsung.com/sec/apps/bixby/)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삼성전자의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댁내에 와이파이 환경이 구축되어야 합니다.(소비자 별도 구축). 또한 삼성전자의 SmartThings 앱을 통한 단위실내의 각 종 홈넷 기기의 제어 서비스는 입주기간 종료 후부터 3년간 무상이나, 무상기간 이후 홈IoT 플랫폼 제공사 운영 정책에 따라 유상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상 전환 시 해당 플랫폼 제공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 LG전자의 스마트 가전과 푸르지오 스마트홈 App과의 연동은 당 사의 개발 일정이나 해당 사의 정책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옵션 선택과 무관하게 발코니 바닥은 실내 바닥과 50mm의 단차가 있으며, 분양사업장 내 발코니 공간은 디스플레이 품목 설치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시공 시에는 발코니 바닥 부분의 단차(실내 바닥에서-50mm)는 유지되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설계변경을 준비 중에 있으며, 분양사업장 및 분양홍보자료는 예정된 설계변경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계약자는「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설계변경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설계변경사항 이외의 설계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에서 허가권자 의견, 관계기관 협의 및 현장 여건등에 따라 일부 설계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계약 전 예정된 설계변경사항 및 분양사업장, 분양홍보자료등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 관계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본 오피스텔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오피스텔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합니다.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공급계약 체결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에 의거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 제3항에 의거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오피스텔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거소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시 현재 조건을 확인 후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실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사업계획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시행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급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시공사와 무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광고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본 분양광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분양광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분양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분양사업장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본 분양광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감리회사 및 금액**

구분	회사명	감리금액(단위: 원, VAT 포함)
건축 감리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13,498,540,000
소방 감리	금정엔지니어링(주)	2,836,675,900
전기 감리	㈜진일기술단	2,990,523,000
통신 감리	㈜이룸이앤씨	462,000,000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86-1번지(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M5BL) 청라 아크원 푸르지오 오피스텔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을 받은 오피스텔입니다.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22026-014-0000600호	**₩715,874,250,000 원**	**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분양신고필증 발급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 또는 해당사업장의 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해당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상복합주택】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주택과 함께 동일건축물에 건축되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주택 이외의 시설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하 "복리시설"이라 함) 및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보증서발급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분양광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분양광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분양광고】「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5조 및 제6조에 적법한 분양광고를 말합니다.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분양광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분양광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건축물분양법에 따라 분양광고에서 정한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 또는 오피스텔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5. 주채무자・공동건축주・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건축주・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건축주・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건축주·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전까지 잔금중 50퍼센트 이내에서 납부한 잔금

【보증채권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주택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 건축물분양법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제3조 (보증채권자 등의 협력의무)

①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조사의 협조 및 입주예정자 대표회의의 구성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②보증채권자는 공사가 선정한 승계사업자 또는 시공사의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③분양권양수자는 양도자가 이미 납부한 입주금 영수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함)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실행공정률 및 예정공정률은 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의 전부에 대한 공정률을 말합니다.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분양신고필증 발급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 또는 해당 사업장의 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오피스텔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오피스텔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세 내용은 보증회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 바랍니다. (1566-9009)

■ **사업주체 현황**

구분	사업주체(시행사)	시공사	자금관리대리사무사	분양대행사
상호	㈜청라스마트시티	㈜대우건설	신한자산신탁(주)	도담에셋(주)
법인등록번호	120111-1203025	110111-2137895	110111-3543801	120111-0780420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8층 9호 (송도동, 송도국제업무단지 C8-2블럭 업무복합시설)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에이동 (을지로4가, 을지트윈타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동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430, 15층 (역삼동, 아세아타워)

※ 본 사업은 시행자인 ㈜청라스마트시티가「주택법」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청라스마트시티, ㈜대우건설)으로 사업계획승인(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청라스마트시티입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서 및 보존등기 상의 사업주체는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청라스마트시티로 명기될 예정입니다.

※ 분양대금의 관리자와 분양사업자의 관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7호]

- 본 사업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서 분양사업자인 주식회사 청라스마트시티와 자금관리대리사무신탁회사인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자금관리신탁사")간의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자금관리신탁사에서 공급(분양)대금을 관리함.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및 표시사항**

- (부동산개발업자) (주)청라스마트시티(등록번호 : 인천240003) / 사업장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8층 9호(송도동)
- (인허가 사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2024-도시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2026.08.06.) (사업계획 변경 2차승인까지 완료하였으며,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2024.08.23 완료)
- (소유권에 관한 사항) 대지소유권 100% 확보, 잔금 완납시 소유권 이전 등기
- (분양대금관리자) 신한자산신탁(주)
- (공급대상물의 소재지, 지목, 용도, 규모)
  ①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86-1
  ② 지목: 대
  ③ 용도: 공동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④ 규모: 지하 5층 ~ 지상 49층

■ 분양사업장 위치 및 분양안내, 사이버 분양홍보관(홈페이지)



- 주소
  - 분양사업장 :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87-1
  - 현장 :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86-1번지 (M5BL)
- 홈페이지 : https://www.arkone-prugio.com
- 분양문의 : 1551-6881

※ 홈페이지 및 분양, 광고에 관한 문의사항은 상기 분양문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분양사업장 및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분양사업장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본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분양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분양사업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광고와 공급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